

이 논문은 2003년 노동부의 「근로복지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2003년도 근로복지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

2003. 12.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차례

요약	vii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 과제와 보고서 구성	2
II. 사회지표와 근로복지지표	3
1. 한국의 사회지표	3
2. OECD의 사회지표	12
3. ILO의 근로 관련 지표	16
4.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	18
5. 일본의 근로자생활지표	28
III. 근로복지지표 개발과 변천	32
1. 근로복지지표 개발	32
2. 1988년의 부분 수정	35
3. 1996년의 전면 개편	40
4. 김교성(2000)의 개선방안	47
IV. 현행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55
1.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55
2.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83
V.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의한 근로복지지표 산정 결과	92
1. 고용사정	93

2.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104
3. 임금 및 근로조건	115
4. 사생활	123
 VI. 결론	 136
1. 근로복지지표를 통해본 근로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136
2. 근로복지지표의 향후 고려사항	138
 부록	 143
1. 근로복지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 설문(1987년)	143
2. 주관적 지표에 관한 조사사항(1987년)	144
3. 새로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체계와 시계열 자료	146
4.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조사 설문(2003년도)	154

표 차례

<표 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근로복지수준 관련 부문	6
<표 2-2> OECD 사회지표 목록(1982년)	16
<표 2-3> ILO의 근로복지관련 지표	17
<표 2-4> 일본 근로자복지총합지표(1970년)	21
<표 2-5> 근로자복지총합지표 가중치 산정항목(1971년 12월)	23
<표 2-6> 노사관계 안정 관련 가중치 산정항목(1970년 12월)	24
<표 2-7> 근로자복지총합지표 가중치표(1971년도)	25
<표 2-8> 일본 근로자복지총합지표(1984년)	27
<표 2-9> 근로자생활지표 구성(1986년)	29
<표 2-10> 근로자생활지표 구성(2002년)	31
<표 3-1> 근로복지지표 체계(1987년)	33
<표 3-2>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변경(1988년)	38
<표 3-3> 기존 근로복지지표체계와 개선안의 주요관심사항 부문 비교(1996년)	42
<표 3-4> 고용사정 부문 세부측정항목 비교(1996년)	43
<표 3-5>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부문 세부측정항목 비교(1996년)	43
<표 3-6> 임금·근로조건 부문 세부측정항목 비교(1996년)	44
<표 3-7> 사생활 부문 비교(1996년)	45
<표 3-8> 변경된 근로복지지표 체계(1996년)	46
<표 3-9> 고용사정 부문 비교(2002년)	49
<표 3-10>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부문 비교(2000년)	50
<표 3-11> 임금 및 근로조건 부문 비교(2000년)	51
<표 3-12> 사생활 부문 비교(2000년)	52
<표 3-13> 개선된 근로복지지표 체계(2000년)	53

<표 4-1> 종합지표의 분해결과	59
<표 4-2>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분해 결과	61
<표 4-3>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소지표와 가중치	62
<표 4-4>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분해 결과	63
<표 4-5> 대지표 ‘사생활’을 구성하는 중지표들	65
<표 4-6> 대지표 ‘사생활’의 분해 결과	65
<표 4-7>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을 구성하는 소지표들	66
<표 4-8>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의 분해 결과	67
<표 4-9> 대지표 ‘고용사정’의 소지표 구성	70
<표 4-10> 대지표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의 구성	71
<표 4-11>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 구성	73
<표 4-12> 대지표 사생활의 구성	74
<표 4-13> 새로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세부항목	75
<표 4-14>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세부항목(2002년도)	84
<표 4-15> 새로운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세부항목	91
<표 5-1> 교육기회의 충족도	95
<표 5-2> 교육수준의 취업기여도	96
<표 5-3> 평생학습기회	96
<표 5-4> 취업의 용이성	99
<표 5-5> 구직정보의 충족도	100
<표 5-6> 이직 기회	101
<표 5-7> 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103
<표 5-8> 현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103
<표 5-9> 고용보험의 충족도	108
<표 5-10> 산재보험의 충족도	108
<표 5-11> 건강보험의 충족도	108
<표 5-12> 국민연금의 충족도	109
<표 5-13> 산재위험 정도	113
<표 5-14> 회사의 산재예방 노력	114

<표 5-15> 작업환경조건	114
<표 5-16> 임금 만족도	117
<표 5-17> 근로복지수준 만족도	118
<표 5-18> 근로시간 만족도	121
<표 5-19> 근로조건 만족도	121
<표 5-20> 직장분위기	122
<표 5-21> 고충처리 만족도	122
<표 5-22> 노사관계의 안정성 인식도	123
<표 5-23> 가구소득 만족도	125
<표 5-24> 주거 만족도	126
<표 5-25> 생활지역에 대한 만족도	127
<표 5-26> 통근시간에 대한 만족도	127
<표 5-27> 여가 활용도	129
<표 5-28> 여가 필요성 인식	130
<표 5-29> 건강 인식도	133
<표 5-30> 의료서비스 만족도	133
<표 5-31> 환경 만족도	134
<표 5-32> 치안 만족도	134
<표 5-33> 교통안전 만족도	135

그림 차례

[그림 4-1] 현행 근로복지지표의 추이	55
[그림 4-2] 대지표의 변화	58
[그림 4-3] ‘임금 및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지표들의 변화	60
[그림 4-4]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	64
[그림 4-5] 원래의 종합지표와 새로운 종합지표	76
[그림 4-6] 새로운 근로복지 종합지표	77
[그림 4-7] 대지표 고용사정의 비교	78
[그림 4-8] 대지표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의 비교	79
[그림 4-9]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비교	80
[그림 4-10] 대지표 ‘사생활’의 비교	81
[그림 4-11] 새로운 대지표 ‘사생활’	81
[그림 5-1]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93
[그림 5-2] 기업의 교육훈련 비중	94
[그림 5-3] 근로자 평균수학 연수	94
[그림 5-4] 장기실업자 비율	98
[그림 5-5] 취업비율	99
[그림 5-6] 임시일용근로자비율	102
[그림 5-7] 평균경력년수	102
[그림 5-8] 산재보험적용 근로자비율	105
[그림 5-9]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비율	105
[그림 5-10] 고용보험적용 가입자비율	106
[그림 5-11] 실업급여 수혜자비율	107
[그림 5-12] 정부의 근로복지예산비중	107
[그림 5-13] 산재도수율	110

[그림 5-14] 근로자건강진단수검률	111
[그림 5-15] 직업병발병 근로자비율	111
[그림 5-16] 재해강도율	112
[그림 5-17] 사망만인율	113
[그림 5-18] 실질임금	116
[그림 5-19] 임금분포의 평등성	116
[그림 5-20] 최저임금수준	117
[그림 5-21] 주당근로시간	119
[그림 5-22] 초과근로시간비율	119
[그림 5-23]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120
[그림 5-24] 노사관계	120
[그림 5-25] 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124
[그림 5-26]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124
[그림 5-27] 주택보급률	126
[그림 5-28] 가계소비지출중 교양오락비 비중	128
[그림 5-29] 근로자연간평균휴일수	129
[그림 5-30] 대기·수질 및 해상, 소음오염도	131
[그림 5-31] 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 발생건수	131
[그림 5-32] 1인당 도시공원면적	132
[그림 5-33]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32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근로복지지표란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1987년에 개발되었음.
- 이 지표는 국민총생산(GNP) 등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와 달리 노동력 판매를 통하여 임금 등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라는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근로자라는 제한된 집단에 대한 복지지표의 개발은 197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근로자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이에 부수된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생활의 질 등 근로자의 물질적·비물질적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음.
- 근로복지에 대한 욕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항목의 개정이 필요함.
- 특히 근로복지지표는 최근 1996년의 전면적 개정 이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의 수정에 그치고 있어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의 근로복지지표 변화가 보이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곧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였지만, 근로복지지표는 오히려 1997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근로자를 둘러싼 여러 조건의 변화를 근로복지지표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96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근로복지지표 산정에 필요한 항목의 수정을 통하여 새로운 근로복지지표체계를 수립하고 근로복지지표의 향후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목적임.
- 그리고 새롭게 설정된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기초하여 2002년도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함과 더불어 근로복지지표를 시계열로 나타내는 것 또한 부차적 목적이라 할 수 있음.

나. 연구 과제

- 본 연구는 먼저 근로복지지표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지표를 이해함으로써 근로복지지표의 산정 목적을 정리하고 근로복지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 이때 한국을 포함하여 ILO와 OECD의 사회지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근로복지지표에 해당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한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에 대하여 아울러 살펴볼 것임.
- 다음으로 1987년에 개발된 근로복지지표의 개념과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후의 부분적 수정과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임.
-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지표가 개정을 수 차례 거듭하는 가운데 근로복지지표 산정이 최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방향을 구상하기로 함.
- 세 번째 과제로서 근로복지지표의 근간을 이루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지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함.
- 이를 통하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게 될 것임.
-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하고, 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함.
- 마지막으로 새롭게 산정된 근로복지지표에 의거하여 근로복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함.

2. 사회지표와 근로복지지표

가.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사회지표를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지표의 작성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등을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사회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며, 사회구조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데 있음.
- 한국에서 사회지표는 1978년에 최초로 350개 지표에 기초하여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지표의 확대 작성이 이루어짐.
- 1995년에는 국민관심영역의 다양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2차로 지표체계를 확대 개편, 13개 부문의 총 553개 지표를 새롭게 체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에는 489개 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 2002년도 현재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의 1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가운데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근로복지수준과 관련된 부문은 노동 부문과 복지 부문임.

나. OECD의 사회지표

- OECD가 사회지표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경제 지표(economic indicators)가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proxies)로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한계

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OECD는 개인의 복지수준을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비금전적인 측면(non-monetary terms)에서 평가된 여러 사회적 상태와 추세를 측정하는 것을 사회지표 개발의 목적으로 하였음.

○ 이러한 목적에 따라 1973년에 작성된 것이 「대다수 OECD 국가에 공통된 사회적 관심사항 목록(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임.

- 이후 OECD는 이러한 관심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고안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OECD 사회지표 목록(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임.

○ OECD 사회지표 목록은 총 33개의 지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지표는 8개의 사회적 관심사항, 곧 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 안전에 각각 속하고 있음.

다. ILO의 근로 관련 지표

○ ILO는 ILO 조직의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로서 정치가, 정부 관리,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노동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과 정책 경향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World Labour Report*를 작성, 발표하고 있으므로 OECD와는 달리 특별히 사회지표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음.

-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노동 인권, 고용, 노사관계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근로조건 등임. 이 보고서의 부록에 사회-경제적 지표와 함께 노동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복지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임.
- 주요 내용은 기본적인 ILO 협약 비준, 노동력과 고용 추이, 고용과 노동력 구조, 실업 구조, 실질 임금·복리비·근로시간, 쟁의와 산업재해, 사회보장임.

라.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

- 한국의 근로복지지표와 유사한 지표를 개발한 국가로서는 일본이 유일하며, 사실상 1987년에 개발된 한국의 근로복지지표는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勤勞者福祉總合指標)”를 기초로 하고 있음.
- 근로자복지의 여러 측면을 ① 능력개발 기회와 고용 기회 등의 고용 환경, ② 직장내의 안전, 위생 수준, 근로시간 등의 근로 환경, ③ 소득, 자산 상황, ④ 주거, 통근 등 사적(私的) 생활 등으로 나누고, 이러한 측면의 개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근로자복지총합지표라 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이 지표를 통하여 각 상황에 대한 개선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근로복지관련 정책에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음.
- 일본 노동성이 처음으로 근로자복지총합지표 체계를 구상할 당시에는 주요 목표로서 근로자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체계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근로자 생활은 직장 생활과 사적 생활의 두 종류로 크게 내용을 구분하였음.
 - 먼저 직장 생활은 첫째 직장에 들어가기 이전의 조건 정비, 둘째 직장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의 구제 제도라는 세 종류로 구분하였음.
- 이러한 각각의 조건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고용환경, 근로환경, 소득·자산 그리고 사적 생활의 네 가지 대범주로 분류하였음.
 - 먼저 고용환경에는 능력개발, 고용기회 그리고 고용안정이 해당하고, 근로환경에는 안전보건, 노동의 양, 노동의 질, 노사관계 안정 그리고 소득의료보장이 해당하며, 소득·자산에는 소득과 자산이 해당하는 한편으로 사적 생활에는 주거, 건강, 안전, 여가가 해당함.
 - 여기에서 각 항목에 대한 지표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각 분야의 발전 수준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각각 나타내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조합하여 표현하고 있음.
- 1970년에 개발·산정되었던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를 기초로 하여 근로복지 수준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가지 대범주에 속하는 근로복지수준의 변화를 한 가지 지수로 나타내도록 1971년 각 범주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

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가중치는 일본 노동성의 「근로자생활의식조사」(1971년 12월)와 「근로자의식조사」(1970년 12월)의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 이후 1972년에 일본 노동성은 기존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체계에 기초하여 지역별 근로자복지지표를 산정, 발표하는 한편, 1984년에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별 지표에서 자료 제약 등의 사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시도하였음.
- 1970년에 개발된 근로자복지종합지표는 주로 『노동경제의 분석(労働經濟の分析)』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나 1986년도 『노동경제의 분석』에 근로자복지종합지표가 수록된 이후 근로자복지종합지표는 더 이상 산정, 발표되지 않고 있음.

마. 일본의 근로자생활지표

- 일본의 경우 근로자복지종합지표를 1986년 이후에 전혀 산정·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비슷한 시기에 산정·발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생활지표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음.
- 근로자생활지표는 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항목의 상황을 계수(計數)로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의 가계 생활을 “라이프사이클에 의하여 변화하는 생활”과 이의 “기초가 되는 생활”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음.
 - 먼저 “기초가 되는 생활”로서는 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소득 상황 ② 의식주 등 생활에 필요한 소비 상황 ③ 살아가기 위한 건강 생활 ④ 생활을 즐기기 위한 여가 상황으로 구성되며, “라이프사이클에 의하여 변화하는 생활”의 경우는 ⑤ 교육 상황 ⑥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곧 주거 상황 ⑦ 직업으로부터 은퇴한 뒤의 생활 곧 노후 생활 이 내용을 이루게 됨.
 - 이와 같은 내용이 소득, 소비, 건강, 여가, 교육, 주거, 노후라는 일곱 가지의 범주로 나뉘어짐.

- 근로자생활지표는 위에서 든 일곱 가지의 범주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생활환경”과 “사회 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생활환경”의 양면을 조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3. 근로복지지표 개발과 변천

가. 근로복지지표 개발

- 근로복지지표 개발은 배무기 외(1987)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음.
- 곧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을 노동활동과 노동외적활동(사적 생활)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으며, 근로복지수준에 대한 대범주에 해당하는 주요관심사항(major concerns)과 소범주에 해당하는 세부관심사항(subconcerns)의 내용이 대체로 유사함.
- 근로복지지표 체계에서먼저 주요관심사항을 보면, 근로활동과 관련된 근로복지로서 첫째, 고용사정, 둘째, 임금·근로조건, 셋째, 노사관계를 들고 있으며, 여기에 사생활을 추가하여 주요관심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됨.
- 세부관심사항의 경우, 고용사정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으로 구성되며, 임금·근로조건은 임금·부가급여, 노동시간, 산업안전, 사회보장으로 구성되는 한편으로 노사관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경영참가로 구성되며, 사생활의 경우는 자산·저축, 주거·통근·자녀교육, 여가로 구성됨.
- 그리고 세부관심사항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두 종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 근로복지지표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각 근로복지지표의 원계열(原系列)을 지수(指數)로 나타내되 이때 기준년도는 1980년으로 함.
- 여기에서 원계열의 저하가 근로복지수준의 개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역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하며, 이에 따라 지수치의 상승은 모두 근로복지수준의 개선을 의미하도록 함.
- 그리고 각 세부관심사항에 대응하는 근로복지지표의 지수치를 모두 기하평균하여 해당

세부관심사항의 통합근로복지지표를 구함.

- 다음으로 주요관심사항의 통합지표는 해당 세부관심사항의 가중평균을 구함으로써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이때 해당 세부관심사항 각각의 가중치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하여 몇몇 직업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가중치를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조사사항은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산재위험에 대한 평가, 노사협의회의 유효성 평가, 기업의 경영공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음.

나. 1988년의 부분 수정

- 근로복지지표는 이원덕 외(1988)에 의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짐.
- 근로복지지표가 개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세부관심사항을 구성하는 지표에 대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지표를 새로운 지표로 대체하고,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수정의 대체적인 내용임.

다. 1996년의 전면 개편

- 유길상 외(1996)는 상향식(bottom-up) 지표산정방식, 양적 지표 중심의 체계, 주관적 지표의 부재, 지표항목의 부문별 불균형 형태를 기존 지표 체계의 문제점으로서 지적하고, 80년대 말 이후 근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지표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따라 고용사정, 임금·근로조건, 노사관계, 사생활로 분류된 기존의 대범주에 대하여 고용사정,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임금·근로조건, 사생활의 대범주로 개편하고, 세부측정항목 일부도 개정하였음.

라. 김교성(2000)의 개선방안

- 김교성(2000)은 현행 근로복지지표 체계와는 무관하나 독자적으로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 개발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1987	1996	1998-2000	2001	2002
고용사정	교육(훈련)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	○	○	○	○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비중	-	○	○	○	○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	-	-	○	-
		국민평균교육연수	-	○	○	-	-
		교육기회의 충족도	-	○	-	-	-
		학생수에 대한 교원수 비율	-	○	-	-	-
		고교 진학률	○	-	-	-	-
		고등교육 진학률	○	-	-	-	-
		직업훈련 수료자수	○	-	-	-	-
		재훈련·전직훈련 수료자수	○	-	-	-	-
		근로자 평균 수학년수	○	-	-	-	-
		피훈련자 1인당 사내훈련시간	○	-	-	-	-
		기능률	○	-	-	-	-
	취업(기회)	취업률(성별, 기혼여성, 고령, 장애인)	-	-	-	-	○
		장기실업자 비율(1년이상)	-	-	-	-	○
		직업선택요인	-	-	-	○	-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비율	-	-	-	○	-
		비농가 실업률	○	○	○	○	-
		구인배율	○	○	○	-	-
		취업알선비율	○	○	○	-	-
		장기실업자비율	○	○	○	-	-
	고용(안정)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	-	-	○	○
		상시고용률	-	○	○	○	○
		평균 노동근속연수	○	○	○	○	○
		이동률(입·이직률)	-	-	-	-	○
		경영상이유의 해직자율	-	○	○	-	-
		평균 정년연령	○	-	-	-	-
		경영상이유에 의한 이직률	○	-	-	-	-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	-	-	-	-
공공근로 복지 및 산업안전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 복지서비스	실업급여 수혜자비율	-	-	-	○	○
		임금채권 채당금지급 비율	-	-	-	○	○
		정부의 근로복지예산비중	-	-	-	-	○
		법정복지제도가입비율(4대사회보험)	-	-	-	-	○*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	-	-	○	-
		고용보험적용 근로자 비율	-	-	-	○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비율	○	○	○	○	-
		정부의 근로복지예산비중	○	○	○	○	-
		의료보험 가입자비율	-	○	○*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비율	○	○	○	-	-
		고용보험 가입자비율	-	○	○	-	-
		의료보험 요양급여수준	○	-	-	-	-
		산재보험 급여수준	○	-	-	-	-
		국민복지연금 급여수준	○	-	-	-	-
	산업안전	산재도수율	○	○	○	○	○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	-	○	○	○	○
		직업병 발병 근로자비율	○	○	○	○	○
		재해강도율	-	-	○	-	○
		중대재해자수비율	-	○	-	-	-
		조기사망자비율	-	○	-	-	-
		산재만인율	○	-	-	-	-
		산재의 1인당 경제적 손실액	○	-	-	-	-
		산재의 위험에 대한 평가	○	-	-	-	-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1987	1996	1998-2000	2001	2002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및 부가급여	실질임금 변화율	△	○	○	○	○
		최저임금수준	-	-	-	-	○
		사내근로복지기금비율	-	-	-	-	○
		체불임금 발생비율	△	○	○	○	○
		직종·산업·학력·규모·성별 임금격차	△	○	○	○	○
		노동비용 중 복리후생비율	○	○	○	-	○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비율	○	○	○	○	-
		임금분포의 평등성	○	-	-	-	-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주당근로시간	○	○	○	○	○
		초과 근로시간비율	○	○	○	○	○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	○	○	○	○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	○	-	-	-
		노동조합조직률	○	-	-	-	-
		부당노동행위 발생건수	○	-	-	-	-
		단체협약 체결 기업체 비율	○	-	-	-	-
		노사분규건수	○	-	-	-	-
		종업원지주제 참여업체율	○	-	-	-	-
		노사협의회의 유효성 평가	○	-	-	-	-
		기업의 경영공개에 대한 만족도	○	-	-	-	-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	○	-	-	-	-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	-	-	-	-
사생활	가계수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	-	-	○
		근로자가구 항목별 지출비중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	-	-	-	○
		근로자가구당 가처분소득	-	○	○	○	○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	○	○	○	○
		근로자가구당 실질순금융자산잔고	○	-	-	-	-
		자가보유율	○	-	-	-	-
		근로자가계 저축률	○	-	-	-	-
	주거통근 (자녀교육)	인터넷가입자수	-	-	-	-	○
		주택보급률	○	○	○	-	○
		승용차 1대당 인구	-	-	○	-	-
		장시간 통근자비율	○	○	-	-	-
		1인당 주거공간	○	-	-	-	-
		상수도 보급률	○	-	-	-	-
		자녀의 대학 이상 기대교육 수준비율	○	-	-	-	-
		가계비중 교육비지출비율	○	-	-	-	-
	여가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중	○	○	○	○	○
		문화시설소유 가구비율	△	○	-	-	-
		평균 여행횟수 및 해외여행경험률	-	○	-	-	-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	-	-	-
		근로자 연간 평균 휴일수	○	-	-	-	-
		도서관 보급률	○	-	-	-	-
		평균 TV시청시간	○	-	-	-	-
		평균 교양서적 독서량	○	-	-	-	-
	보건환경	대기·수질 및 해상 오염도	-	○	○	-	○*
		식용식수에 대한 평가	-	-	-	-	-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발생건수	-	○	-	-	-

4. 현행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가.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 현행 지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지표는 꾸준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후부터 지표의 움직임은 큰 변동성을 보이며, 특히 2000년에 지표의 수준은 211.1로, 전년도인 131.5에 비해 무려 79.6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2001년에는 245.1로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지표의 급격한 움직임이 현실의 근로 복지 수준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회의적인데, 근로복지 수준이 2000년 들어 급격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객관적 지표에 과연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객관적 종합지표를 분해함으로써 급격하게 변한 원인을 계량화하여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화 하였음.
- 분석 결과
 - 첫째, 종합지표의 변화가 이들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나 종합지표에 나타나는 큰 움직임이 오직 소수에 불과한 소지표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도출됨.
 - 둘째, 종합지표의 움직임을 사실상 결정하는 변수가 근로자의 복지수준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정도가 크다면 근로복지수준을 왜곡할 수 있음.
- 고용사정
 - 먼저 교육훈련 지표에 ‘근로자 평균 수학년수’를 추가하고, ‘취업기회’에는 취약계층의 취업자비율을 제외하는 대신 생산가능인구 전체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이를 소지표에 추가하고자 함.
 - 장기실업자 비율은 시계열의 연속성에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의 비율을 지수화하여 사용하기로 함.
 - ‘고용안정’은 네 가지 소지표 중 피고용율을 제외하기로 함.
 - 평균근속년수를 평균경력년수로 대체함.
 - 아울러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을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의 하나로 추가하

기로 함.

○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 중지표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 복지 서비스’에서는 임금채권 채당금 지급액을 제외하기로 함.
- 중지표 ‘산업안전’에서는 사망만인율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함.

○ 임금 및 근로조건

-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는 체불임금 발생액을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비율과 임금총액 중 정책급여 비율 역시 중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함.
- 또한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변수를 지니계수로 대체하고자 함.
- 최저임금수준도 지수화하여 임금 및 부가급여 중지표에 포함시키기로 함.
- 소지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일단 ‘분규 참가자수’에다 ‘분규지속일수’를 곱하여 노사관계를 반영하는 변수로 파악하기로 함.

○ 사생활

- 중지표 ‘가계수지’ 가운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근로자가구 항목별 지출 비중을 소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함.
- 중지표 ‘주거통근’에서는 인터넷 가입자수를 제외하기로 함.
- ‘여가’에서 근로자 연간 평균 휴일 수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고자 함.
- ‘보건환경’에서는 인구 10만명 당 주요 범죄 발생 건수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을 지수화하여 새로운 변수로 추가함.

○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따른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한 결과, 원래의 지표에 비해 새로운 종합지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임.

나.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 근로복지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평가라는 의미에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기존의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나누어본다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과 근로자가 복지로서 인식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 본 연구는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음.

- 첫째,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지니는 한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나타내지 못하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를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근간이 되도록 함.
- 둘째,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많은 세부항목으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를 구성하기 보다 최소한 필요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임.
- 셋째, 가능한 한 일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세부항목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내용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함으로써 시기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사정

- 교육·훈련 수준의 양적·질적 변화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먼저 본인이 취득한 학교교육수준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교육기회의 충족도), 취득한 교육수준이 수료후 일자리를 얻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교육수준의 취업 기여도)를 세부항목에 포함하였음.
-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평생교육 기회)도 세부항목으로 설정함.
-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쉬운 편이였는지(취업의 용이성), 구직활동시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지(구직정보의 충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함.
- 현재의 일자리가 근로자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기회가 있는지(이직 기회)에 대한 세부항목을 포함함.
-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는지(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현재의 일자리가 안정적인지(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함.

○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

- 4대 사회보험이 각각 근로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사회보험의 충족도)를 세부항목에 포함하여 파악하고자 함.
- 개인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만큼 작업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산재위험 정도), 회사측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회사의 산재예방노력) 그리고 작업환경 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작업환경조건)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함.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및 부가급여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교육수준, 기술, 경력 등)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임금 만족도)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복지수준과 내용에 만족하는지(근로복지수준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만족하는지(근로시간 만족도), 소속된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근로조건 만족도), 직장분위기는 어떠한지(직장 분위기), 직장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고충처리 만족도) 그리고 최근 1년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었다고 보는지(노사관계의 안정성 인식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사생활

- 가계수지에서는 현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 소득 등)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지(가구소득 만족도)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주거통근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주거 만족도), 이와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생활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또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에 만족하는지(통근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 여가에서는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여가활용도)와 여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여가 필요성 인식)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 보건환경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건강 인식도),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의료서비스 만족도),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대기·수질 오염,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공해, 녹지 등의 주위환경훼손 등)에 대하여 어

느 정도 만족하는지(환경 만족도), 치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치안 만족도)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교통안전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5.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의한 근로복지지표 산정 결과

가. 고용사정

○ 교육훈련

-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은 대체로 낮은편(0.25% 미만)이고, 기업의 교육훈련비는 경기에 따라서 달라졌으며, 근로자의 평균 수학년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 또한 교육기회의 충족도는 비교적 높았고, 교육수준은 근로자의 취업에 상대적으로 기여한 바가 컸으며, 평생교육의 기회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기회

- 장기실업자 비율은 외환위기 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고, 취업 비율은 2002년도 현재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취업의 용이성을 보면 근로자 전체의 29.4%가 취업하기 어려웠던 반면, 24.1%는 취업하기 쉬운 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구직활동시 구직정보의 충족도를 보면 전체의 36.0%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19.2%는 충분히 얻었던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앞으로 현재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자 전체의 28.2%는 없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 이직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4.0%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안정

-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은 1990년대 이후 언제나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경력년수는 1993년 26.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33.1로 정점에 달하였으며,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여부를 보면 근로자의 17.8%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35.1%로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일자리의 안정

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8.6%의 근로자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29.6%는 안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함.

나.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서비스

-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산재보험의 적용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적용근로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었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근로자 중 32%만을 포괄하고 있었음. 또한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은 제도 시행 초년도부터 언제나 97%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정부의 근로복지 예산비중은 개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증가하였음.
- 4대 사회보험이 각각 근로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하다고 보는 정도가 높은 순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었음.

○ 산업안전

- 산재도수율은 1990년(6.70)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1998년도에 2.79로 최저를 기록한 후 다소 증가하였지만, 재해강도율은 1990년 2.15에서 2001년 2.12로 12년 동안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만인율 또한 재해강도율과 마찬가지로 지난 12년 동안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더 증가했던 시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을 보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85.5%에서 90.3% 사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마다 변동이 심하였고,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중 직업병 발병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1990년 0.22에서 매해 감소하고 있었음.
- 산재의 위험정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작업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29.7%가 위험을 느끼지 않는 반면 43.3%는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회사가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의 14.2%로 비교적 낮은 반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44.6%인 것으로 나타남. 작업환경조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17.3%인 반면, 양호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있음.

다.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및 부가급여

- 실질임금은 1990년에서 2001년까지 199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12년 동안 약 1.7배 성장하였고, 최저임금 수준은 1990년(16만 5천원)에서 2001년까지 약 1.5배 상승하였으며,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2002년에도 여전히 0.312로 나타나고 있었음.
- 임금 만족도를 보면, 자신의 능력(교육수준, 기술, 경력 등)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51.5%였고, 44.5%는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능력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았음. 또한 근로복지수준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을 보면,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복지수준과 내용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전체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18.3%이었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56.0%의 근로자는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음.

○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 주당 근로시간은 1990년 48.2시간에서 2001년 47.0시간으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고, 초과근로시간의 비율을 보면 1990년 28.1에서 2002년 20.3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보면 1992년 이후 다소의 등락은 있으나 1997년까지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지만 1998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사관계지표는 1995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었음. 또한 최근 1년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안정적이었다고 보는 근로자가 전체에서 40.9%를 차지한 반면, 불안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15.8%였음.

- 근로시간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62.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1%에 지나지 않는 반면, 긴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4.1%를 차지하였음. 근로조건 만족도에 관하여서는 불만족 상태인 근로자가 전체의 16.4%인 반면,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21.8%를 차지하였음. 또한 직장분위기는 대체로 좋다고 답하였으며,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고충처리가 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의 20.8%를 차지한 반면, 잘 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25.7%이었고, 어느 쪽도 아닌 경우가 53.5%였음.

라. 사생활

○ 가계수지

- 근로자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1990년 87만원에서 2001년 231만 9천원으로 증가하였고, 근로자가구 가계 흑자율은 1990년 25.3%에서 해마다 소폭 상승하여 1998년 31.5%로 정점을 이룬뒤 1999년 급속히 감소하여 25.1%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낮아진 흑자율은 2001년부터 다시 회복추세지만 아직까지 199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음. 가구 소득 만족도를 보면, 현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 소득 등)으로 생활 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편이라고 보는 근로자보다 부족한 편이라고 느끼는 근로자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주거통근

- 주택보급률을 보면 1990년 7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98.3%에 이르러서,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주택보급은 상당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주택가격상승과 전세난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주거만족도에 관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5.2%는 불만족인 반면, 만족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28.6%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음. 생활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불만족한다고 답한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1.0분인 반면, 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3.3분으로 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통근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근로자(23.5%)보다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41.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가

-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의 비중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 교양오락비의 비중은 급속히 하락을 보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0년 5.3%를 나타냈지만, 2001년부터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음.
- 근로자의 연간 평균 휴일 수를 보면 1993년까지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나타났지만, 1996년부터는 급속히 증가하여 1998년 77일로 최고를 기록하였고, 19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69일대로 감소한 이후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음. 여가 활용도를 보면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근로자가 많아서 근로자의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여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환경

- 대기·수질·해상 오염 및 소음에 대한 지표를 보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지만 2000년부터는 급속히 상승하고 있었고,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을 보면, 1991년 18.1에서 1998년 23.5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1998년 이후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1990년 560명에서 2001년 1169명으로 지난 11년 동안 약 2배 가량 증가하였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1990년 28.8명에서 2001년 16.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사이의 시기에는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근로자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건강을 염려하는 근로자는 15.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7.9%이고, 어느 쪽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46.8%를 차지하였음.
-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근로자가 58.8%이고 불만족한다고 답한 근로자가 30.5%로 나타났고, 환경 만족도를 보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하여 32.2%가 불만족한 편이라고 답한 반면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22.5%로 상대적으로 불만족의 비중이 높았음.
- 치안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치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한 근로자

의 비중이 과반수인 5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불만족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35.0%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고, 교통안전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통안전에 대하여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근로자의 비중이 42.5%로 높은 편이었음.

6. 결론

가. 근로복지지표를 통해본 근로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 고용서비스의 내실화와 한계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지원이 필요함.
 - 그간 상대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있지 못했던 여성, 중고령 근로자, 장기실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알선체계를 확립하고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교육훈련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함.
 - 이러한 고용전략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시장 경쟁력의 문제로 과소공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능력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근로자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의 제도전환,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함.
 - 또한 앞으로 주5일 근무제도의 실시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교육훈련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임.
-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 성원 누구나 당할 개연성이 있는 위험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집단보장 제도이므로 중소기업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은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산업안전정책은 향후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하며,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 산재빈발 사업

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의 확대 및 감독강화를 통해서 산재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나. 근로복지지표의 향후 고려사항

○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 통합 지표로부터 복수 지표로

- 근로복지지표가 통합지표로서 산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란 통합지표 산정에 필요한 가중치를 객관적이며 타당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이 변동하기 쉬운 속성을 지닌다는 단점이 존재함.
- 뿐만 아니라 사회지표와 관련하여 OECD 등의 국제기관과 각국의 경우,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복수의 관련 지표를 발표하고 있을 뿐 이들을 통합 지표의 형태로 재산정하여 발표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향후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도 통합 지표 산정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수집, 어떠한 지표들이 개선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다른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연결

-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관찰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보완성이 유지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와 관련된 설문 항목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한 한 현재의 복지 수준을 포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 설문 항목이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됨으로써 근로복지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냄으로써 근로복지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근로복지지표가 1987년 개발된 이래 지금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 지표는 국민총생산(GNP) 등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와 달리 노동력 판매를 통하여 임금 등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라는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라는 제한된 집단에 대한 복지지표의 개발은 197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근로자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이에 부수된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생활의 질 등 근로자의 물질적·비물질적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근로복지지표가 몇 차례의 개정을 거듭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의 경우와 유사하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맞추어 5년마다 물가지수 산정대상 품목을 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복지에 대한 욕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항목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근로복지지표는 최근 1996년의 전면적 개정 이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의 수정에 그치고 있어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의 근로복지지표 변화가 보이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곧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였지만, 근로복지지표는 오히려 1997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자를 둘러싼 여러 조건의 변화를 근로복지지표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96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근로복

지지도 산정에 필요한 항목의 수정을 통하여 새로운 근로복지지표체계를 수립하고 근로복지지표의 향후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롭게 설정된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기초하여 2002년도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함과 더불어 근로복지지표를 시계열로 나타내는 것 또한 부차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 과제와 보고서 구성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먼저 근로복지지표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지표를 이해함으로써 근로복지지표의 산정 목적을 정리하고 근로복지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이때 한국을 포함하여 ILO와 OECD의 사회지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아울러 근로복지지표에 해당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한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는 주로 제2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 사회지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987년에 개발된 근로복지지표의 개념과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물론 이후의 부분적 수정과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지표가 개정을 수 차례 거듭하는 가운데 근로복지지표 산정이 최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방향을 구상해본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과제로서 근로복지지표의 근간을 이루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지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개선 방향을 확정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제4장에서 근로복지지표의 나머지 한 축을 형성하는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하고, 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네 번째 과제에 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산정된 근로복지지표에 의거하여 근로복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는 제6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밖에 본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낮으나 연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자료 등은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Ⅱ. 사회지표와 근로복지지표

근로복지지표가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때, 사회지표는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인 만큼 사회지표가 근로복지지표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복지지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지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한국과 OECD 등 외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알아본 다음, 최초로 근로복지지표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지표를 개발한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에 대하여 아울러 알아보기로 한다.

1. 한국의 사회지표

가. 사회지표 정의와 기능

1) 사회지표 정의와 작성 목적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사회지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곧 사회지표란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지표의 작성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등을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사회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며, 사회구조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회지표의 정의와 작성 목적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첫째, 사회지표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복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둘째, 이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지표의 작성을 통하여 현

사회 상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유효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지표 산정에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지표의 기능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대체로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지표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수준을 측정하게 된다. 곧 사회지표는 국민생활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사회지표는 사회상태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사회지표를 통하여 사회 상태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나타내 줌으로써 미래의 사회 경향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여 갈 수 있도록 유도·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지표로부터 사회개발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며,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이며 간접적인 효과, 특히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disfunction)까지도 측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개발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나. 사회지표의 작성경위

한국에서 사회지표는 1978년에 최초로 350개 지표에 기초하여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는 1972년의 「사회 지표에 관한 UN 통계위원회의 권고(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on Social Indicators)」에 의거, UNFPA의 자금지원을 받아 1975년 10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인구통계 개선 : 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출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1979년에 128개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지표가 최초로 공표되었다. 이후 1980년 151개, 1981년 166개, 1982년 177개, 1983년 187개, 1984년 198개, 1985년 208개, 1986년 215개, 1987년 224개의 지표를 확대 작성하여 공표하는 한편, 1987년에는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지표 체계를 개선, 총 468개 지표를 체계화하였으며, 1988년에는 신체계에 따라 243개 지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 252개, 1990년에는 262개, 1991년에는 272개, 1992년에

는 275개, 1993년에는 285개, 1994년에는 291개, 1995년에는 290개 지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는 국민관심영역의 다양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2차로 지표체계를 확대 개편, 13개 부문의 총 553개 지표를 새롭게 체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에는 489개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다. 사회지표의 구성

2002년도 현재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의 1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근로복지수준과 관련된 부문은 노동 부문과 복지 부문이며, 이에 대한 관심영역과 관련 지표는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노동 부문의 경우, 관심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데 고용·인력개발, 근로조건, 안전보호, 차별대우, 노사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복지 부문의 경우, 복지증진,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네 가지 관심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심영역은 다시 최대 6종류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노동 부문에서 고용·인력개발의 세부관심영역은 취업, 여성 취업, 실업, 직업안정, 고용보험, 인력개발로 분류되고 있다. 근로조건의 세부관심영역은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이며, 안전보호의 세부관심영역은 산재예방과 재해발생이다. 그리고 차별대우와 노사관계 부문은 각각 성차별대우와 노동3권이 세부관심영역을 이루고 있다. 복지 부문의 경우, 복지증진에는 자원이, 사회보험에는 의료보험과 공적연금, 공적보조에는 자원과 생활보호가,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자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가 세부관심영역으로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관심영역에 대해서는 개별지표가 각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부문과 복지 부문 이외에도 근로자의 복지수준과 관련이 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부문으로서는 소득과 소비 부문, 교육 부문, 보건 부문, 주거와 교통 부문, 환경 부문, 문화와 여가 부문 그리고 안전 부문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복지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만을 골라 <표 2-1>에 아울러 정리하였다.

<표 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근로복지수준 관련 부문

가. 노동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고용·인력 개발	취업	경제활동참가율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
		임금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산업별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외국인 근로자수
		장기근속자 비율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비율
	여성취업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여성취업 장애요인
		산업별 남녀 대표자별 사업체 비율 *
	실업	실업률
		교육정도별 실업률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직업안정	입직률
		이직률
		구인배율
		취업률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수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지원사업건수
		산업별 실업급여 수혜자수
	인력개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수

주 : *는 2002년 신규지표를 뜻함.

자료 :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02.

<표 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근로복지수준 관련 부문(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근로조건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
	임금	노동생산성지수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평균 임금지수
		산업별 평균임금 격차
		직종별 임금수준
		직종별 평균임금 격차
	근로조건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직업선택요인
안전보호	산재예방	직업병 근로자 비율
	재해발생	산업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재해사망률
차별대우	성차별대우	성별 임금 격차
		성별 근속년수 격차
		성별 근로시간 격차
		성별 이직률비
노사관계	노동3권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표 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근로복지수준 관련 부문(계속)

나. 복지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복지증진	자원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예산
		GDP대비 사회보장예산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
사회보험	의료보장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인당 건강보험부담액
		1인당 건강보험급여액
	공적연금	공적연금 가입자
		공적연금 수혜자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공적부조	자원	정부예산대비 공적부조예산
		GDP대비 공적부조예산
		사회보장대비 공적부조예산
	생활보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
		의료급여대상자 비율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일반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
		최저생계비 *

다. 소득과 소비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득수준	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소비지출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
		흑자율
저축 및 투자	저축생활	순저축 보유액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분배상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
경제적 생활 안정	소득의 안정	소득만족도
	소비의 안정	소비생활만족도

<표 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근로복지수준 관련 부문(계속)

라. 교육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교육자원	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교육효과	교육의 인력양성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졸업생 취업률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마. 보건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상병	상병평가	유병률
보건의료이용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바. 주거와 교통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거상태	주택공급과 수요	주택보급률
	주거비용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주거이동	주택마련시기
		결혼후 내집 마련시까지 이사횟수
주거의 질	주거공간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위환경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교통시설	교통비용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비율
교통의 질	교통편의	교통문제

<표 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근로복지수준 관련 부문(계속)

사. 환경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환경압력	환경오염물질 배출	생활폐기물 발생량(1인 1일)
		지정폐기물 발생량
		폐수 발생량
		1인당 생활오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연자원의 이용	상수도 보급률
환경영향	환경의 질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해수오염도
		주요도시의 오존오염도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먹는 물의 수질현황
		환경오염정도에 대한 체감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환경관리	환경관리지출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GDP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표 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근로복지수준 관련 부문(계속)

아. 문화와 여가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지원 및 활용	전시장 입장률
		도서관수
		인구 만명당 도서관 열람석수
		인구 만명당 장서수
		연간도서관 이용자수
	문화생활용품 보급	CD 및 Tape 구입
		도서발행종수
		도서발행부수
		정기간행물(잡지) 건수
		독서인구 비율
	매스컴에 대한 접근 및 인식	신문구독인구 비율
		신문구독빈도
		신문의 관심부문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신문보도에 대한 불만이유
		TV기호 프로그램
		TV시청시간
		TV시청인구 비율
		TV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
		TV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이유
	문화활동기회 향유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불만이유
		비디오 시청률
		비디오 시청편수
여가활동	관광여행	1인당 국내관광여행횟수
		해외여행자 비율
	여가 및 체육활동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용비 지출률
		공공체육시설수 및 면적
		1인당 도시공원면적

<표 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근로복지수준 관련 부문(계속)

자. 안전부문

관 심 영 역	세부관심영역	개 별 지 표
안전에 대한 의식	사회의 안녕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전화폭력 경험여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범죄발생	형법범중 주요범죄 발생건수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범죄방지	경찰관 1인당 인구수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 안전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사상자수
		범행동기별 범죄자수

2. OECD의 사회지표

가. OECD 사회지표 목록의 탄생

OECD(1973)의 서문에 따르면, 1970년 5월 20~22일에 열린 OECD 회원국 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이며, “성장의 질적 측면과 증가하는 자원의 배분에 포함된 광범한 경제적·사회적 선택에 관한 정책 고안에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OECD는 사회지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때 OECD가 사회지표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경제 지표(economic indicators)가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proxies)로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OECD, 1982). 특히 OECD는 개인의 복지수준을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비금전적인 측면(non-monetary terms)에서 평가된 여러 사회적 상태와 추세를 측정하는 것을 사회지표 개발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의 선언에 따라 사회지표 프로그램(Social Indicators Program)은 모든 OECD 회원국가에 공통되는 사회지표 관련 자료(data)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10년간이나 현재의 사회적인 수요(demands), 희망(aspiration)과 여러 문제점을 사회경제적 계획 과정의 주요 관심사항(major concerns of socio-economic planning

process)으로 인식한다.

둘째, 이러한 관심사항의 상대적 중요성이 나타내는 변화를 측정하고 보고한다.

셋째, 공개적인 논의(public discussion)와 정부 정책 결정(government decision-making)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계발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1973년에 작성된 것이 「대다수 OECD 국가에 공통된 사회적 관심사항 목록(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이다. 이후 OECD는 이러한 관심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고안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OECD 사회지표 목록(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이다.

나. OECD 사회지표 목록 선정 기준과 목록 내용

1) OECD 사회지표 목록 선정 기준

OECD는 사회지표 선정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8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사회지표는 최종의 사회적 결과를 설명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투입 내용(inputs)이나 중간 결과(intermediate outcomes)에 대한 수량화는 사회지표가 아닌 다른 통계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지표는 정책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집단적 행동이나 공공정책을 통하여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지표는 상당수의 OECD 회원국가에서 장기에 걸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표의 실제치(actual values)가 시간에 걸쳐서나 아니면 전체 OECD 회원국가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지표는 개인의 복지 상황과도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다만 분리가 불가능한 공공재(indivisible public goods)는 대부분 제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섯째, 사회지표는 특정한 제도적 결합(institutional arrangements)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간 비교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회지표는 사회적 관심사항의 모든 영역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연결망(grid)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사회지표는 사회적 관심사항에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사회지표는 정의(definitions), 세부사항(specifications), 통계적 지침(statistical guidelines) 그리고 분해(disaggregations) 등의 통합적인 체계/framework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계는 다른 사회적·인구학적 통계와 양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회지표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통계 관련 기관의 능력을 넘어서는 정교한 통계 체계로부터 발전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용적 기준에서 발전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지표는 관심사항 목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상황과 정책 결정 분석에서 일련의 양적인 사회적 정보와 함께 사용하는 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지표는 단일한 방향을 나타내야(uni-directional) 하며, “다다익선(the more(or the less) the better)”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여가시간에 제한이 있듯이 몇몇 지표는 삶의 질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데 “적정 한도(optimal range)”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OECD(1982)는 사회지표 목록이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국가가 처한 사회 상황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공통성(commonality)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지표 목록을 유연하게 선정되도록 한 것은 OECD와 다른 국제기관 그리고 회원국가들이 개발한 양적인 수단(quantitative instruments)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지표 목록이 지각적(perceptual)이거나 주관적(subjective) 지표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각이라는 것이 사회 상황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이유로서 개인의 복지(well-being)에 대한 타당한 척도를 단순한 질문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우리가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할 때 근로복지지표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누어 함께 관찰하는 것은 이처럼 사회 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지니는 장·단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회지표는 궁극적으로 여러 차원의 사회 현상을 관찰하는 데 통합적인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OECD(1982)는 강조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접근법이 결여된 경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처가 불가능하게 된다.

2) OECD 사회지표 목록 내용

사회지표의 주요 목적이 사회구성원 개인과 관련된 상태의 측정인 만큼 OECD(1982)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국가적 평균치(national averages)를 나타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normative)이면서 분석적인(analytic) 목적을 위하여 세부 구성(division)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것 사이의 균형(balance)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때의 균형이란 바로 규범적인 고려 사항(normative considerations), 해명이 필요한 사항(explanatory requirements) 그리고 프로그램 관찰과 평가(program monitoring and evaluation)를 내포한다.

이와 같은 고려를 통하여 작성된 OECD 사회지표 목록은 총 33개의 지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지표는 8개의 사회적 관심사항, 곧 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 안전에 각각 속하고 있다. 참고로 OECD(1982)의 사회지표 목록은 <표 2-2>와 같다.

<표 2-2> OECD 사회지표 목록(1982년)

사회적	관심사항	지표
건강	수명	수명 출산 사망률
	건강성	단기 장애 장기 장애
교육과 학습	교육시설의 이용	정규교육년수 성인교육
	학습	문맹률
고용 · 근로생활의 질	가용노동력	실업률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실망실업자
	근로생활의 질	평균 근로시간 통근시간 유급연가 비전형적인 근로 근로소득 분포 중대 재해 불유쾌한 근로환경
시간과 여가	시간 이용	자유시간 자유시간 행동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소득	소득분배 저소득
물리적 환경	주거 조건	주거공간 외부환경 접근성 기본 편의시설
	서비스 접근성	선택된 서비스에 대한 근접성
	환경	대기오염 노출 소음 노출
사회적 환경	사회적 소속감	자살률
개인 안전	위험에 대한 노출	치명적 손상 중대 손상
	인지된 위협	개인 안전에 대한 공포

자료 : OECD (1982).

3. ILO의 근로 관련 지표

ILO는 ILO 조직의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로서 정치가, 정부 관리,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노동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과 정책 경향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World Labour Report*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¹⁾. 이러한 점에서 OECD와는 달리 특별히 사회지표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노동 인권, 고용, 노사관계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근로조건 등이다. 이 보고서의 부록에 사회-경제적 지표와 함께 노동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보고되고 있으며²⁾, 사회-경제적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복지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표 2-3>에서 정리하고 있다.

<표 2-3> ILO의 근로복지관련 지표

	내 용	
노동협약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농민조직
	강제노동	강제노동, 노예제 폐지
	차별	고용 및 직종차별, 임금차별
	아동노동(최저임금)	
	고용정책	
노동력과 고용추이	연간성장률(%)	인구, 노동력
	연간고용성장률(%)	농업전체부문, 비농업전체부문, 제조업
노동력과 고용구조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전체고용구조(%)	농업, 공업, 서비스
	임금고용 비중(%)	농업, 비농업
	비농업임금고용 중 여성의 비중(%)	
실업구조	전체 실업률	
	남성 실업률	
	여성 실업률	
	연령	청년(남녀), 성인(25세이상; 남녀)
	교육수준	국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실질임금, 시간당 노동비용, 근로시간	최저임금	
	제조업임금	
	제조업 시간당 노동비용	비임금비용에 대한 비중(1985=100, %)
	정규근로시간(제조업)	주당, 휴가, 공휴, 연간
파업과 산재	제조업 파업일수(근로자 100명 당)	
	산재사망만인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회보장	정부보조금 비율	
	GDP 대비 급여지출(%)	
	경활동력 대비 적용대상자 비율	노령, 질병, 출산
	1인당 실질 수혜액(US \$)	의료, 질병, 산재
	수혜자 1인당 노령연금(US \$)	

자료 : *World Labour Report*, ILO, 1992.

1) 1991년까지는 격년간 발행하였다.

2) 이 내용은 ILO의 「노동통계연보(*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에도 수록되어 있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ILO 협약 기준, 노동력과 고용 추이, 고용과 노동력 구조, 실업구조, 실질 임금·복리비·근로시간, 쟁의와 산업재해, 사회보장이 주요한 내용이다.

4.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

한국의 근로복지지표와 유사한 지표를 개발한 국가로서는 일본이 유일하다. 사실상 1987년에 개발된 한국의 근로복지지표는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勤勞者福祉総合指標)”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는 한국과 같이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곧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 수준이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격차가 급속하게 축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복지 수준의 측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언급한다면, 소득 수준의 개선은 소비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소비구조의 변화도 초래하였다. 곧 근로자세대의 앵겔계수가 지속적으로 저하하면서 주식(主食) 비중의 감소에 수반하여 육류 등 단백질과 과일 소비의 증가와 외식비 지출의 증가가 현저하였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 보급을 통한 주거비의 변화와 더불어 피복비와 교양오락비 등도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와 주택난 등 생활환경의 개선은 지연되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 생활에서도 근로시간과 산업재해 등의 면에서 후진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근로자의 관심이 이전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과 이에 따른 생활 개선에 있었다고 한다면,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의 평준화(平準化) 경향은 임금 이외의 측면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를 높이는 가운데 근로자의 욕구의 다양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당시의 일본 정부로서는 근로자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직장내의 여러 조건 그리고 직장 외의 생활 조건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모색이 바로 근로자복지종합지표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의 여러 측면을 ① 능력개발 기회와 고용 기회 등의 고용 환경, ② 직장내의 안전, 위생 수준, 근로시간 등의 근로 환경, ③ 소득, 자산 상황, ④ 주거, 통근 등 사적(私的) 생활 등으로 나누고, 이러한 측면의 개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근로자복지종합지표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지표를 통하여 각 상황에 대한 개선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근로복지관련 정책에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1970년 당시에 개발되었던 근로자복지종합지표에 대한 세부 사항과 이후의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체계 구상

1)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체계

일본 노동성이 처음으로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체계를 구상할 당시에는 주요 목표로서 근로자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체계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때 근로자 생활은 직장 생활과 사적 생활의 두 종류로 크게 내용을 구분하였다. 먼저 직장 생활은 첫째 직장에 들어가기 이전의 조건 정비, 둘째 직장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의 구제 제도라는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먼저 직장에 들어가기 이전의 조건 정비와 관련하여 고려된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취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능과 기능을 높이는 조건은 정비되어있는가(능력개발), 둘째, 취업 기회는 충분하게 주어져 있는가, 그리고 취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은 정비되어 있는가(고용 기회)라는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직장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경우에 첫째, 근로환경은 어떠한가(안전보건), 둘째, 제공하고 있는 노동의 양(量)은 어느 정도인가(노동의 양), 셋째, 제공하고 있는 노동의 질(質)은 어느 정도인가(노동의 질), 넷째, 제공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보수의 개선도는 어느 정도인가(소득), 다섯째, 노동의 보수는 대등하게 결정되는 상황인가 그리고 노사관계는 양호한가(노사관계 안정), 여섯째, 실업의 불안은 없는가(고용 안정)로 구성된다.

세 번째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의 구제 제도를 구성하는 내용은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의 구제 제도는 어떠한가(소득의료보장)이다.

한편 사적 생활의 경우에는 첫째, 노동 보수의 개선에 수반하는 자산(資産)의 개선은 어느 정도인가(자산), 둘째, 노동에 의한 피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노동에 대한 활력을 높이는 조건은 정비되어 있는가(주거, 건강, 안전, 여가)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조건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고용환경, 근로환경, 소득·자산 그리고 사적 생활의 네 가지 대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고용환경에는 능력개발, 고용기회 그

리고 고용안정이 해당하고, 근로환경에는 안전보건, 노동의 양, 노동의 질, 노사관계 안정 그리고 소득의료보장이 해당하며, 소득·자산에는 소득과 자산이 해당하는 한편으로 사적 생활에는 주거, 건강, 안전, 여가가 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 항목에 대한 지표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각 분야의 발전 수준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각각 나타내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조합하여 표현하고 있다. <표 2-4>는 1970년 당시에 개발된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2) 지표산정방식

각 소범주의 지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지수의 원계열(原系列)을 1960년 = 100으로 하여 지수로 변환한다. 이때 지표의 수치가 저하하는 것이 개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역수로 계산함으로써 지수가 되도록 한다. 이처럼 계산된 지수에 기초하여 각 소범주의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에 대한 기하평균을 구하고, 이 값을 각 소범주의 지수치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범주의 지수치는 각 소범주의 기하평균으로 한다.

<표 2-4> 일본 근로자복지종합지표(1970년)

대범주	소범주	양적 척도	질적 척도
고용환경	능력개발	고교진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직업훈련 수강률 각종학교 수강률	학생수·교원수 비율 학생수·대학전문대 교원수 비율 훈련생수·지도원수 비율 각종학교 학생수·교원수 비율
	고용기회	구인·구직배율	취직률
	고용 안정 (실업 불안)	경영상 사정에 따른 이직률	상용근로자 중 임시·일용 명의의 상 용근로자 비율
근로환경	안전보건	도수율 업무상 질병 발생률	사상자 1인 평균 근로손실일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망자의 비중
	노동의 양	근로시간(법정+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의 비중
	노사관계 안정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쟁의 발생률(참가율)	노동협약 적용율 쟁의손실일수(조합원 1인당)
	소득·의료보장	실업보험 적용률 노해보험 적용률 건강보험 적용률 후생연금 적용률	실업보험 급여수준 노해보험 급여수준 건강보험 급여수준 후생연금 급여수준
소득·자산	소득	임금수준(실질)	임금격차(규모별 표준근로자의 생 애임금 격차)
	자산	금융자산자고(실질) 자가소유 비율	금융자산대 평균월수입비중 자가 공간
사적생활	주거·통근	통근시간 1인당 주택공간	통근혼잡도 상·하수도 보급률
	건강안전	상병발생율(유병율)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수 (대인구비)	50세 이하 사망자수의 총사망수에 대 한 비율 교통사고 사상자중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
	여가	1인당 연간 여가시간	1인당 연간 여행회수 텔레비전보급율 1인당 서적발행부수

자료 : 『노동경제의 분석』, 일본 노동성(1971).

나. 1971년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산정

1970년에 개발·산정되었던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는 고용환경, 근로환경, 소득·자산 그리고 사적 생활의 네 가지 대범주 각각에 대하여 과거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달리 근로복지 수준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 대범주에 속하는 근로복지수준의 변화를 한 가지 지수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주의 지수를 단순평균으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가중평균으로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범주에 대한 가중치(weight)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가중치 부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본 노동성이 채택한 방법은 근로복지에 대한 욕구와 기대도 등의 근로자 의식으로부터 각 범주와 관련된 가중치를 얻고자 하였다. 일본 노동성의 「근로자생활의식조사」는 근로자가 직장 생활과 직장 외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바로 이 조사에 포함되고 있는 근로자의 희망 항목을 근로자복지종합지표의 소범주와 연계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1) 가중치의 산정 방법

1971년 12월에 조사된 「근로자생활의식조사」에는 “앞으로 일하는 가운데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과 “근로자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노동성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복지종합지표의 소범주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였다. 참고로 이 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 결과는 <표 2-5>와 같다.

이때 「근로자생활의식조사」에는 근로자복지종합지표의 소범주에 속하는 노사관계 안정과 관련된 질문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일본 총리부가 1970년 12월에 조사한 「근로자의식조사」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로부터 가중치를 구하였다. 이 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 결과는 <표 2-6>에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표 2-5>와 <표 2-6>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정된 근로자복지종합지표의 소범주에 대한 가중치는 <표 2-7>의 내용과 같다.

<표 2-5> 근로자복지종합지표 가중치 산정항목(1971년 12월)

의식조사항목		지표 범주
질문	회답수	
(질문) 귀하가 앞으로 일하는 가운데 가장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은 다음 가운데 어떠한 것입니까? 2가지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26,058(명)	
(1) 임금인상	16,593	C 8 소득
(2) 정년제 연장	2,456	C 3 고용 안정
(3) 주5일제(주휴2일제)와 노동시간 단축	10,341	C 5 노동의 양(노동시간)
(4) 능력, 성격에 적합한 취업기회의 확보	4,888	C 2 고용기회
(5) 생애에 걸친 지식, 기능 향상의 조건 정비	3,269	C 1 능력 개발
(6) 산재 박멸, 직장환경 정비	2,594	C 4 안전보건
(7) 재산형성, 자가소유 원조	5,034	C 9 자산
(8) 복리후생시설 충실	3,699	C 4 안전보건
(9) 기타	1,394	-
	(6,149)	C 6 노사관계 안정
(질문) 근로자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서 다음의 어느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주택문제 해결	11,941	C 10 주거·통근
(2) 상하수도과 공원 등 생활환경 정비	2,096	C 11 건강·안전
(3) 교통사정 개선	4,162	C 10 주거·통근
(4) 여가 증대	3,747	C 12 여가
(5) 공해 방지	3,936	C 11 건강·안전
(6) 사회보장 충실	14,916	C 7 사회보장
(7) 감세	9,631	-

자료 : 『노동경제의 분석』, 일본 노동성(1972).

<표 2-6> 노사관계 안정 관련 가중치 산정항목(1970년 12월)

총리부의식조사항목		노동성의식조사항목
질문	회답수 구성비	
(질문) 귀하는 회사 노동조합이 어떠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까?	%	
(1) 임금인상	61.2	임금인상
(2) 임금체계 개선		
(3) 근로시간 단축		
(4) 휴가휴일 증가	8.9	주5일제, 근로시간 단축
(5) 과중한 근로 완화		
(6) 지위와 신분 안정		
(7) 정년제 연장	1.3	정년제 연장
(8) 퇴직금 증액	1.2	재산형성, 자가소유 원조
(9) 작업환경(안전대책 포함) 정비	4.2	산업재해 박멸, 직장환경 정비
(10) 산재보상 개선		
(11) 복리후생시설 충실		
(12) 문화, 체육, 레크리에이션 활동	1.8	여가 증대
(13) 노후 보장 등 사회보장 충실	1.7	사회보장 충실
(14) 공해대책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제 요구를 위한 활동	1.9	주거·통근, 건강안전
(15) 평화운동 등의 정치활동	-	
(16) 기타	1.2	
(17) 잘 모름	7.3	

자료 : <표 2-5>와 동일.

<표 2-7> 근로자복지종합지표 가중치표(1971년도)

범주	종합(연령계)	20~24세	45~54세
고용환경	11.1	10.5	14.6
C 1 능력개발	3.4	3.9	2.7
C 2 고용기회	5.1	5.9	3.8
C 3 고용 안정	2.6	0.7	8.1
노동환경	39.4	41.4	38.6
C 4 안전보건	6.6	6.9	7.0
C 5 노동의 양	10.8	13.3	7.5
C 6 노사관계	6.4	6.4	6.5
C 7 소득의료보장	15.6	14.8	17.6
소득자산	22.6	19.8	23.9
C 8 소득	17.3	16.5	17.6
C 9 자산	5.3	3.3	6.3
사적 생활 환경	27.0	28.2	22.9
C10 주거·통근	16.8	16.5	14.7
C11 건강안전	6.3	6.5	5.6
C12 여가	3.9	5.2	2.6
종합	100.0	100.0	100.0

자료 : <표 2-5>와 동일.

다. 지역별 근로자복지지표의 산정

1972년에 일본 노동성은 기존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체계에 기초하여 지역별 근로자복지지표를 산정, 발표하였다. 지역별 근로자복지지표 체계는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체계를 따르되 지역별로 구할 수 없는 개별 지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대리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소범주의 지수화는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다만 지역블록을 11개로 구분하고, 지역블록별 지수치에 대해서는 1970년의 지역(都道府縣)별 취업자수(국세조사에 기초하여 계산)를 가중치로 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근로자복지지표를 산정, 비교함으로써 지역간에 근로복지의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떠한 근로복지수준의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지역별로 어떠한 근로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라. 1984년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의 수정

1970년에 근로자복지총합지표가 개발된 이래 10여 년이 지난 1984년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본 노동성은 근로자복지총합지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다만 이전의 분석과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본적인 지표 체계를 개정하기보다는 개별 지표에서 자료 제약 등의 사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표 2-8>에 나타내고 있다.

먼저 변경된 척도는 고용환경 부문(능력개발)의 고등교육 취학률과 사적 생활 부문(여가)의 1인당 서적발행부수이다. 고등교육취학률은 전문대·대학진학률로 변경되었으며, 1인당 서적발행부수는 1,000인당 서적발행부수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삭제된 척도는 고용환경 부문(능력개발)의 훈련생수·지도원수 비율과 사적 생활 부문(여가)의 1인당 연간 여행회수이다.

그리고 1984년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 산정에서는 각 지표의 원계열을 이전의 1960년 = 100에서 1980년 = 100으로 변경하여 지수화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표 2-8> 일본 근로자복지종합지표(1984년)

대범주	소범주	양적 척도	질적 척도
고용환경	능력개발	고교진학률 전문대·대학진학률 취업훈련 수강률 각종학교 수강률	학생수·교원수 비율 학생수·대학전문대 교원수 비율 훈련생수·지도원수 비율 각종학교 학생수·교원수 비율
	고용기회	구인·구직배율	취직률
	고용 안정 (실업 불안)	경영상 사정에 따른 이직률	상용근로자 중 임시·일용 명의의 상 용근로자 비율
근로환경	안전보건	도수율 업무상 질병 발생률	사상자 1인 평균 근로손실일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망자의 비중
	노동의 양	근로시간(법정+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의 비중
	노사관계 안정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쟁의 발생률(참가율)	노동협약 적용률 쟁의손실일수(조합원 1인당)
	소득·의료보장	실업보험 적용률 노재보험 적용률 건강보험 적용률 후생연금 적용률	실업보험 급여수준 노재보험 급여수준 건강보험 급여수준 후생연금 급여수준
소득·자산	소득	임금수준(실질)	임금격차(규모별 표준근로자의 생 애임금 격차)
	자산	금융자산자고(실질) 자가소유 비율	금융자산대 평균월수입비중 자가 공간
사적생활	주거(통근)	통근시간 1인당 주택공간	통근혼잡도 상·하수도 보급률
	건강안전	상병발생률(유병률) 교통사고 사상자수 (대인구비)	50세 이하 사망자수의 총사망수에 대 한 비율 교통사고 사상자중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
	여가	1인당 연간 여가시간	1인당 연간 여행회수 텔레비전보급률 1,000인당 서적발행부수

주 : 1970년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체계와 비교하여 변경이 있는 지표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다(고등교육
취학률→전문대·대학진학률; 1인당 서적발행부수→1,000인당 서적발행부수). 그리고 이탤릭체는 삭제된
항목을 나타낸다.

자료 : 『노동경제의 분석』, 일본 노동성(1985).

마. 근로자복지종합지표 산정 중단

1970년에 개발된 근로자복지종합지표는 주로 『노동경제의 분석(労働經濟の分析)』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1986년도 『노동경제의 분석』에 근로자복지종합지표가 수록된 이후 근로자복지종합지표는 더 이상 산정, 발표되지 않고 있다³⁾.

5. 일본의 근로자생활지표

일본의 경우 근로자복지종합지표를 1986년 이후에 전혀 산정·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비슷한 시기에 산정·발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생활지표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생활지표는 근로자복지종합지표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가. 근로자생활지표 체계 구상

1) 근로자생활지표 체계

근로자생활지표는 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항목의 상황을 계수(計數)로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때 근로자의 가계 생활을 “라이프 사이클에 응하여 변화하는 생활”과 이의 “기초가 되는 생활”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먼저 “기초가 되는 생활”로서는 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소득 상황 ② 의식주 등 생활에 필요한 소비 상황 ③ 살아가기 위한 건강 생활 ④ 생활을 즐기기 위한 여가 상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라이프사이클에 응하여 변화하는 생활”의 경우는 ⑤ 교육 상황 ⑥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곧 주거 상황 ⑦ 직업으로부터 은퇴한 뒤의 생활 곧 노후 생활이 내용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표 2-9>에서 소득, 소비, 건강, 여가, 교육, 주거, 노후라는 일곱 가지의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생활지표는 위에서 든 일곱 가지의 범주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과 가족을

3) 참고로 근로자복지종합지표가 더 이상 산정되지 않게 된 이유와 시기에 대하여 일본 후생노동성 근로자생활부 근로자생활과에 문의하였으나 담당자가 근로자복지종합지표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중심으로 하는 개인생활환경”과 “사회 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생활환경”의 양면을 조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라는 범주에서는 개인생활환경의 경우 임금이 대응하는 반면, 사회생활환경의 경우 소득보장과 안정고용이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생활환경과 사회생활환경에 대하여 각 범주를 구성하는 소범주와 실제의 지수에 대해서는 <표 2-9>에 나타내고 있다.

<표 2-9> 근로자생활지표 구성(1986년)

범주	개인생활환경	사회생활환경
소득	(임 금) 실질임금지수	(소득보장) 실업보험적용률 고용보험실질급여수준 (안정고용) 균형실업률 경영상 사정에 의한 이직률
소비	(소비지출) 소비수준지수	(물 가) 소비자물가상승률 (조세공과) 비소비지출/실수입비
건강	(잔여수명) 평균잔여수명 (질 병) 유병률 업무상 질병률	(의료보장) 건강보험적용률
여가	(여가지출) 실질교양오락비 (여가시간) 여가시간	(근로시간) 총실(總實)근로시간지수
교육	(교육지출) 실질교육관계비 교육비부담률	(진 학 륜) 전문대·대학 진학률
주거	(주거수준) 자가소유율 1인당 공간 (주택지출) 주택취득부담률	(주택취득) 주택취득능력 (통 근) 통근시간 혼잡도
노후	(노후자금) 저축연수(年收)비 자기부담에 의한 노후부담률 (은퇴연령) 정년연령	(소득보장) 후생연금보험적용률 후생연금보험실질급여수준

주 : 1인당 공간은 1인당 다다미(疊)수를 뜻한다.

자료 : 『노동경제의 분석』, 일본 노동성(1987).

2) 지표산출방법

먼저 개별지표의 원계열을 1970년 = 100으로 하여 지수로 변환한 뒤, 각 범주내에서 개인생활환경과 사회생활환경에 대하여 기하평균을 구하고 이 양 지수치의 기하평균을 다시 구하여 이 수치를 각 범주의 지수치로 하고 있다. 이때 원계열이 저하하는 것이 개선된 경

우라면, 보수(補數)나 역수를 취함으로써 지수치의 상승이 개선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3) 최근의 근로자생활지표

참고로 최근의 근로자생활지표가 수록된 『유스폴 노동통계 - 노동통계가공지표집 -』(일본노동연구기구, 2002)에 따르면, 1986년의 근로자생활지표 체계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표 2-10> 참조). 먼저 개인생활과 관련하여 건강(질병)에서 유병률과 업무상 질병률의 명칭이 수료율(受療率)과 산업재해율(도수율)로 바뀌었으며, 노후(은퇴연령)에서 정년연령이 근무연장·재고용(再雇用)제도 채용비율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회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소득(안정고용)에서 경영상 사정에 의한 이직률이 비자발적 이직 실업자로 바뀌는 한편, 주거(통근)에서 혼잡도가 제외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에서 후생연금보험적용률도 제외되었다.

그리고 지표산출방법에서 기준년도가 1970년에서 1995년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밖에 기하평균으로 근로자생활지표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표 2-10> 근로자생활지표 구성(2002년)

범주	개인생활환경	사회생활환경
소득	(임 금) 실질임금지수	(소득보장) 실업보험적용률 고용보험실질급여수준 (안정고용) 균형실업률 비자발적 이직 실업자
소비	(소비지출) 소비수준지수	(물 가) 소비자물가상승률 (조세공과) 비소비지출/실수입비
건강	(잔여수명) 평균잔여수명 (질 병) 수료률 산업재해율(도수율)	(의료보장) 건강보험적용률
여가	(여가지출) 실질교양오락비 (여가시간) 여가시간	(근로시간) 총실(總實)근로시간지수
교육	(교육지출) 실질교육관계비 교육비부담률	(진 학 륜) 전문대·대학 진학률
주거	(주거수준) 자가소유율 1인당 공간 (주택지출) 주택취득부담률	(주택취득) 주택취득능력 (통 근) 통근시간 혼잡도
노후	(노후자금) 저축연수(年收)비 자기부담에 의한 노후부담률 (은퇴연령) 재고용제도채용률	(소득보장) 후생연금보험적용률 후생연금보험실질급여수준

주 : 1) 1인당 공간은 1인당 다다미(畳)수를 뜻한다.

2) 1986년의 근로자생활지표 체계와 비교하여 변경이 있는 지표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으며, 삭제된 항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자료 : 『유스폴노동통계-노동통계가공지표집-』, 일본노동연구기구, 2002.

Ⅲ. 근로복지지표 개발과 변천

1. 근로복지지표 개발

근로복지지표 개발은 배무기 외(1987)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에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근로복지지표 체계는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와 상당히 유사하다.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을 노동활동과 노동외적활동(사적 생활)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으며, 근로복지수준에 대한 대범주에 해당하는 주요관심사항(major concerns)과 소범주에 해당하는 세부관심사항(subconcerns)의 내용도 대체로 유사하다.

가. 근로복지지표 체계

먼저 주요관심사항을 보면, 근로활동과 관련된 근로복지로서 첫째, 고용사정, 둘째, 임금·근로조건, 셋째, 노사관계를 들고 있으며, 여기에 사생활을 추가함으로써 주요관심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세부관심사항의 경우, 고용사정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으로 구성된다. 임금·근로조건은 임금·부가급여, 노동시간, 산업안전, 사회보장으로 구성되며, 노사관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경영참가로 구성된다. 그리고 사생활의 경우는 자산·저축, 주거·통근·자녀교육, 여가로 구성되고 있다.

세부관심사항은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두 종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에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표 3-1> 근로복지지표 체계(1987년)

주요관심사항	세부관심사항	근로복지지표	
		양적 지표	질적 지표
1. 고용사정	1-1 교육 훈련	고교진학률 고등교육진학률 직업훈련수료자수 재훈련 전직훈련수료 자 수	근로자평균 수확년수 피훈련자 1인당 사내 훈련시간 기능율
	1-2 취업 기회	비농림실업율 구인배율	장기간 실업자비율 취업알선비율
	1-3 고용 안정	평균근속연수 평균정년연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이직률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2. 임금 · 근로조건	2-1 임금 · 부가급여	실질임금지수 실질체불임금액	사무직 대 생산직 임금격차 임금중 정액급여 비율 노동비용중 복리비 비율
	2-2 노동시간	주당평균노동시간	노동시간중 초과노동 시간비율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2-3 산업안전	산재도수율 직업병유병근로자율	산재만인율 산재의 1인당 경제적 손실액 산재위험에 대한 평가
	2-4 사회 보장	의료보험가입 근로자율 산재보험적용근로자율 국민복지연금 적용근로자율	의료보험 요양급여 수준 산재보험 급여수준 국민복지연금 급여수준
3. 노사관계	3-1 단결권	노동조합 조직율	부당노동행위 발생건수
	3-2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단체협약 체결 기업체율 노사분규 건수	노사분규 손실일수
	3-3 경영참가	종업원지주제 참여 업체율	노사협의회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기업의 경영공개에 대한 만족도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

자료 : 배무기 외 (1987).

<표 3-1> 근로복지지표 체계(1987년 - 계속)

4. 사생활	4-1 자산·저축	근로자가구당 순금융자산잔고(실질) 자가보유률	근로자가계 저축률
	4-2 주거·통근 · 자녀교육	주택보급율 1인당 주거공간 장시간 통근자 비율	상수도 보급률 자녀(남)의 대학이상 기대 교육수준 비율 가계비중 교육비지출비율
	4-2 여가	연간평균 휴일수 도시가계 교양오락비 지출 비율 도서관 보급률	TV 보급률 평균 TV 시청시간 평균 교양서적 독서량

자료 : 배무기 외 (1987).

참고로 근로복지지표 산정과 관련하여 유념하였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사항의 시계열적인 차원에서 각 지표는 그 시점에서의 정태적 상태를 유의하게 반영하면서 동시에 동태적 변동의 크기도 설명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측정사항의 질적 양태나 주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비계량적 사항도 수량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지표는 근로복지 결정 인자의 상태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넷째, 각 지표들은 그 요소의 상대적인 비중이 고려된 가운데 몇 개의 통합지표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측정 결과의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섯째, 측정의 편의성과 경제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통합근로지표

개별근로복지지표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는 통합지표(composite indicator)는 다음과 같은 작성 방법을 따르고 있다. 먼저 각 근로복지지표의 원계열(原系列)을 지수(指數)로 나타내되 이때 기준년도는 1980년으로 한다. 여기에서 원계열의 저하가 근로복지수준의 개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역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한다. 이에 따라 지수치의 상승은 모두 근로복지수준의 개선을 의미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각 세부관심사항에 대응하는 근로복지지표의 지수치를 모두 기하평균하여 해당 세부관심사항의 통합근로복지지표를 구한다. 예를 들자면, 취업기회의 경우, 비농림실업률, 구인배율, 장기간 실업자비율 그리고 취업알선비율에 대한 기하평균이 취업기회의 통합근로복지지표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주요관심사항의 통합지표는 해당 세부관심사항의 가중평균을 구함으로써 작성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때 해당 세부관심사항 각각의 가중치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하여 몇몇 직업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가중치를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노동문제전문가(한국노동경제학회 회원 57명), 노동조합간부(금속노련 소속 노조간부 32명), 대전지역의 사무직·생산직 근로자(100명)를 대상으로 하여 우편 및 면접 조사를 통하여 부록(근로복지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 설문)의 내용을 질문, 회수된 유효응답자 122명(교수 26명, 노조간부 19명, 근로자 77명)의 조사결과로부터 가중치를 산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근로자의식 관련 조사를 통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하여는 조사사항으로서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산재위험에 대한 평가, 노사협의회의 유효성 평가, 기업의 경영공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주관적 지표에 관한 조사 사항)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배무기 외(1987)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1988년의 부분 수정

1987년에 개발, 산정된 근로복지지표는 이원덕 외(1988)에 의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근로복지지표가 개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세부관심사항을 구성하는 지표에 대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지표를 새로운 지표로 대체하고,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수정의 내용이다(<표 3-2> 참조).

가. 지표의 대체

1) 고용사정

먼저 고용사정에서 교육훈련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이용되었던 고등교육 진학률을 고등

교육 입학률로 대체되었다. 이는 진학률로 표시하는 경우, 재수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곧 진학률의 경우, 당해 연도 졸업자수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자수의 비중인 반면, 입학률의 경우, 당해 연도 졸업자수에서 재수생을 포함한 상급학교 입학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게 된다.

둘째, 취업기회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비농가실업률이 포함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연보』(경제기획원)의 조사대상 하한 연령이 1987년에 14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고 있다.

셋째, 고용안정의 한 지표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이직률은 시계열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77년 이후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보고서』의 상반기 자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2) 임금·근로조건

먼저 임금·부가급여의 경우, 첫째, 생산직·사무직 임금격차를 임금총액기준, 곧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특별급여’의 1개월치로 조정하고, 둘째, 임금총액 가운데 정액급여비율을 시계열비교가 용이하도록 1972년 이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자료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체불근로자당 실질체불임금을 추가하되 이는 『노동통계요람』(노동부)에 발표된 발생액 기준으로 하였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 지표에 해당하는 산재만인율은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 지표가 1970~73년의 경우 신체장애자수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사회보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적용근로자비율의 경우, 대상 근로자를 비농가피용자수로 한정하고, 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의 연령조정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재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 실질급여액의 경우, 1인당 급여액에서 1건당 급여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가 동일 연도에 1인에 대하여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3) 노사관계

먼저 노동조합조직률은 조직대상 근로자를 비농가상시고용으로 한정하는 한편, 경제활동

인구 조사대상의 연령조정에 따라 재조정하였으며, 종업원지주제의 참여업체비율은 100인 이상 사업체수를 대리변수로 채택하고 있다. 이 통계는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를 이용하여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 사생활

사생활과 관련하여 개정 내용을 보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서 자산저축의 지표에 대한 개정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근로자가구당 실질순금융자산잔고는 조사가 가능한 1980년 자료를 추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계 저축률은 1982년 1월 이후의 비용분류 체계 확대 개정에 따른 방식을 이용, 시계열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거·통근·자녀교육에서는 가계소비지출중 교육비 비율의 경우, 개정된 방식에 따라 소비지출액을 개선하여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여가지표에 해당하는 가계소비지출중 교양오락비 비율도 개정된 방식에 따르되 교양오락비의 내역 개편에 따라 재조정하고 있다. 네 번째로 TV 보급률의 경우 컬러 TV 보급률만이 발표되도록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1986년 이후 시계열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표 3-2>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변경(1988년)

주요관심사항	세부관심사항	근로복지지표	
		변경후	변경전
1. 고용사정	1-1 교육 훈련	고교입학률 고등교육입학률 직업훈련수료자수 재훈련 전직훈련수료 근로자평균 수학년수 피훈련자 1인당 사내 훈련시간 기술자격 검정 합격자수	고교진학률 고등교육진학률
	1-2 취업 기회	비농가실업률 구인배율 장기간 실업자비율 취업알선비율	비농림실업률
	1-3 고용 안정	근속년수 정년 경영상이유에 의한 이직률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이직률
2. 임 금 · 근로 조건	2-1 임금·부가 급여	실질임금 체불근로자당 실질체불임금 사무직 대 생산직 임금격차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 비율 노동비용중 복리비 비율	실질체불임금액 임금격차 임금 중 정액급여 비율
	2-2 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 총 노동시간중 초과노동시간 비율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2-3 산업안전	산재도수율 직업병유병근로자율 산재만인율 산재의 1인당 실질 경제적 손실액 산재위험에 대한 평가	산재의 1인당 경제적 손실액

<표 3-2>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변경(1988년 - 계속)

주요관심사항	세부관심사항	근로복지지표	
		변경후	변경전
2. 임금·근로조건	2-4 사회보장	의료보험가입 근로자비율 산재보험적용근로자비율 국민복지연금 적용근로자비율 의료보험 1건당 실질급여액 산재보험 1건당 실질급여액 국민복지연금 급여수준	
3. 노사관계	3-1 단결권	노동조합 조직률 부당노동행위 건수	노동조합 조직률
	3-2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단체협약 체결 기업체 비율 노사분규건수 노사분규 손실일수	
	3-3 경영참가	종업원지주제 참여업체비율 노사협의회의 유효성평가 기업의 경영공개에 대한 만족도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	종업원지주제 참여 업체율
4. 사생활	4-1 자산·저축	근로자가구당 실질순금융 자산잔고 자가보유율 근로자가계 저축율	근로자가구당 순금융 자산 잔고(실질) 근로자가계 저축율
	4-2 주거·통근 · 자녀교육	주택보급률 1인당 주거공간 장시간 통근자 비율 상수도 보급률 자녀(남)의 대학이상 기대 교육수준 비율 가계 소비지출중 교육비 지출비율	가계비중교육비지출비율
	4-3 여가	근로자연간평균 휴일수 가계 소비지출중 교양오락비 지출 비율 도서관 보급률 TV 보급률 주간시청시간 연간 교양서적 독서량	도시가계 교양오락비 지출 비율

나.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조사

배무기 외(1987)에서 제시된 주관적 근로복지 지표에 관한 조사사항에 따라 이원덕 외(1988)는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통계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30개 기업의 근로자 1,000여명이다. 다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원덕 외(1988)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원덕 외(1988)에서는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하고 있다. 근로복지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이란 때에 따라서 비논리적이며 일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관적 지표를 장기 시계열로 비교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3. 1996년의 전면 개편

근로복지지표 개발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1996년 근로복지지표는 체계 구성과 세부측정 항목에서 전면적인 개정이 있게 되었다. 이는 유길상 외(1996)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비록 체계 구성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가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 체계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한 것은 아니며, 다만 기존의 근로복지지표 체계가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표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기존의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개선 방향

1) 기존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문제점

유길상 외(1996)가 제시하고 있는 기존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지표 산정방식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존의 근로복지지표 산정은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는 통계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유사한 성격의 자료들을 집단별로 분류한 다음, 각 집단을 세부관심사항이라는 소범주로 종합하고, 세부관심사항을 다시 주요관심사항이라는 대범주로 종합하는 방식의 이른바 상향식(bottom-up) 산정방식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통계자료가 근로자의 복지수준 전체를 불완전하게 나타내는 경

우에 지표는 한계성을 노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양적 지표 중심의 체계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기존 통계 자료의 한계라고 할지라도 일부 항목에서는 충분히 기존 통계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데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 OECD 국가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주관적 지표로부터 파악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의 경우 주관적 지표가 조사되지 않고 있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결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지표항목에서 부문별로 불균형한 형태로 체계가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의 변화가 상당히 컸음에도 가중치가 20%라는 상당한 수준으로 설정됨으로써 복지지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근로복지지표의 신뢰도와 설득력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80년대 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여 이와 함께 근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만큼 이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지표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개선방향

유길상 외(1996)는 근로복지지표 체계 개선의 주안점으로서 양적 지표 위주의 기존 체계에 대한 개선과 지표 체계의 불균형 시정에 두고 있다. 그리고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상향식 산정방식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며, 주관적 지표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 지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

유길상 외(1996)가 제시하는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노사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각 지표를 종합한 통합근로복지지표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노사관계 부문을 임금·근로조건 부문에 통합한 것이 한 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사정, 임금·근로조건, 노사관계, 사생활로 분류된 기존의 대범주에 대하여 고용사정,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임금·근로조건, 사생활의 대범주로 개편하고 있다(<표 3-3>과 <표 3-8> 참조).

그리고 세부관심사항과 관련하여 상향식 산정방식에 따라 질적 척도를 최대한 포함하고, 기존 항목 대신 포괄성과 신뢰도가 높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항목으로 대체하며, 중복적 성격이 강한 항목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3-3> 기존 근로복지지표체계와 개선안의 주요관심사항 부문 비교(1996년)

기존체계	개선체계
고용사정 임금·근로조건 노사관계 사생활	고용사정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임금·근로조건 사생활

자료 : 유길상 외(1996).

1) 고용사정 부문

고용사정 부문에서 세부관심사항은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측정항목을 일부 개정하고 있다. 먼저 교육훈련의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항목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기존의 고교입학률과 고등교육 입학률 대신에 국민 평균교육년수로 대체하였으며, 교육기회 충족도와 학생수에 대한 교원수 비율을 질적 지표로서 추가하는 한편, 직업훈련수료자수와 기술자격검정합격자수를 정부의 직업훈련예산비중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기회 항목의 경우, 질적 지표로서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율을 추가하는 한편, 고용안정 항목의 경우, 고용안정률을 상시고용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이동률은 평균근속년수와 중복되는 만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3-4>에 정리하고 있다.

2)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부문

기존의 임금·근로조건 부문에서 산업안전과 사회보장이라는 두 항목을 독립시켜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부문으로 구성을 변경하되 세부관심사항으로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 부문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과 정부의 근로복지예산 비중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 항목에서는 산재천인율과 산재 1인당 실질손실액은 산재도수율과 중대재해자 비율로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있으며, 질적 지표로서 근로자건강진단수검률과 조기사망자비율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3-5>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3-4> 고용사정 부문 세부측정항목 비교(1996년)

기존 근로복지지표		개선된 근로복지지표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① 교육훈련	고교입학률 고등교육입학률 직업훈련 수료자수 기술자격검정 합격자수	① 교육훈련	국민의 학력 구성비(평균교육년수) 교육기회의 충족도 학생수에 대한 교원수 비율 공공직업훈련 투자비중
② 취업기회	비농가 실업률 구인배율 취업알선비율	② 취업기회	비농가 실업률 구인배율 취업알선비율
③ 고용안정	근속년수 경영상 이유의 해직자율 고용의 안정률 평균 정년연령 노동이동률	③ 고용안정	상시고용률 경영상 이유의 해직자율 평균 정년연령 평균 근속년수

자료 : <표 3-3>과 동일.

<표 3-5>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부문 세부측정항목 비교(1996년)

기존 근로복지지표		개선된 근로복지지표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① 사회보장	의료보험 가입근로자비율 산재보험 적용근로자비율 의료보험 1건당 실질급여액 산재보험 1건당 실질급여액	① 사회보장	의료보험 가입자 비율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비율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정부의 근로복지예산 비중
② 산업안전	산재도수율 직업병 유병률 산재천인율 산재 1인당 실질손실액 중대재해자수	② 산업안전	근로자건강진단 수검률 산재도수율 직업병 발병근로자 비율 중대재해자수 비율 조기사망자 비중

자료 : <표 3-3>과 동일.

3) 임금·근로조건 부문

임금·근로조건 부문에서는 기존의 근로시간 부문과 노사관계 부문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로 통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조건 부문의 세부관심사항은 임금 및 부가급여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표 3-6> 참조).

세부관심사항을 보면, 먼저 임금 및 부가급여 항목에서 직종간·산업간 임금격차를 추가하여 임금격차에 대한 질적 척도를 강화하고, 체불근로자당 실질체불임금은 체불임금발생비율로 대체하는 한편, 임금분포의 평등성(지니계수) 항목은 임금격차와 중복되며, 기존 통계자료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항목에서는 노사분규발생률과 노동손실일수 대신에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로 대체하고, 부당노동행위건수는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보류하였으며, 종업원지주제 참여업체 비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영참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신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 지표로서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3-6> 임금·근로조건 부문 세부측정항목 비교(1996년)

기존 근로복지지표		개선된 근로복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① 임금 및 부가 급여	실질임금 업무·학력·규모·성별 임금격차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비 비율 체불근로자당 실질체불임금 노동비용 중 복리비 비율 임금분포의 평등성-지니계수	① 임금 및 부가 급여	실질임금 변화율 직종·산업·학력·규모·성별 임금격차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비 비율 체불임금 발생비율 노동비용 중 복리후생비 비율 부가급여 가중평균	
	② 근로시간		②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주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비율
	노 사 관 계			
	① 단결권			노동조합조직률 부당노동행위건수
	② 단체교섭권 및 행동권			노사분규 발생률 노동손실일수
③ 경영참가	종업원지주제 참여업체 비율			

자료 : <표 3-3>과 동일.

4) 사생활 부문

먼저 자산 및 저축 항목을 가계수지로 대체하면서 기존의 가구당 저축잔고-부채잔고와 근로자 가계저축률, 자가보유율 대신에 근로자가구당 가처분소득과 근로자 가구가계수지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통근·자녀교육 항목에서는 가계소비지출중 교육비 비율을 제외함으로써 명칭도 주거·통근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수도보급률도 제외하는 한편으로 장시간통근자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여가 항목에서는 도서관 보급비율 대신에 문화시설소유가구비율과 평균 여행 및 해외여행 경험률을 추가하고 있으며, 보건·환경 항목에서는 기존의 항목을 모두 없애는 대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대기·수질 및 해수오염도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발생건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표 3-7> 사생활 부문 비교(1996년)

기존 근로복지지표		개선된 근로복지지표	
세부 관심사항	세부 측정항목	세부 관심사항	세부 측정항목
①자산 및 저축	가구당 저축잔고-부채잔고 근로자 가계저축률 자가보유율	①가계수지	근로자 가구당 가처분소득 변화율 근로자 가구가계 수지율
②주거·통근 및 자녀교육	주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가계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율	②주거·통근	주택보급률 장시간 통근자 비율
③여 가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비율 도서관 보급비율	③여 가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율 문화시설 소유가구 비율 평균여행 및 해외여행경험률
④보건 및 환경	공공복지시설수 영유아 사망률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④보건 및 환경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대기·수질 및 해수오염도 주요범죄 발생건수

자료 : <표 3-3>과 동일.

<표 3-8> 변경된 근로복지지표 체계(1996년)

주요 관심사항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사항
1.고용사정	①교육훈련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교육기회의 충족도 학생수에 대한 교원수 비율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②취업기회	비농가실업률 구인배율 취업알선비율 장기실업자 비율
	③고용안정	상시고용률 경영상 이유의 해직자율 평균 근속년수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2.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①사회보험 및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	의료보험 가입자 비율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비율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정부의 근로복지예산 비중
	②산업안전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 산재도수율 직업병 발병근로자 비율 중대재해자수 비율 조기사망자 비율
3.임금·근로조건	①임금 및 부가급여	실질임금 변화율 직종·산업·학력·규모·성별임금격차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비 비율 체불임금 발생비율 노동비용 중 복리후생비 비율
	②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주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비율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4.사생활	①가계수지	근로자가구당 가처분소득변화율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율
	②주거·통근	주택보급률 장시간통근자 비율
	③여 가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중 문화시설 소유가구 비율 평균여행횟수 및 해외여행 경험률
	④보건 및 환경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대기·수질 및 해수오염도 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발생건수

자료 : <표 3-3>과 동일.

4. 김교성(2000)의 개선방안

근로복지지표와 관련하여 김교성(2000)은 근로복지지표가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를 무조건적인 인용과 부분적인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동과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 지표를 추가, 보완하고자 하였다. 비록 김교성(2000)이 제시한 개선방안이 근로복지지표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김교성(2000)의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몇 가지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가. 기존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기존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문제점

김교성(2000)이 제시하는 기존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근로복지지표 체계가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여성근로자 그리고 노령인구의 확산에 근로형태와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지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고용불안, 임금하락, 복지혜택의 상대적 축소 등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보험의 양적 측면에 대한 측정만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에 따라 실질 수혜액과 실업급여 등에 대한 수혜자 비율, 정부보조금 비율 등의 질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기구의 사회지표에서 발표하고 있는 노동분야 지표와 연관성이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근로복지지표가 근로자의 바람직한 생활조건 창출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근로복지 구성이 국가에 의한 공공복지와 기업·노조·가계 등의 사적 복지로 구성된다고 볼 때, 최근 민간부문 특히 기업복지의 역할 증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지표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개발 원칙과 개선 방향

김교성(2000)은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 개발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복지를 위한 투입·과정·산출의 전체 체계의 측면에서 각 요소가 적절히 반영된 가운데 궁극적인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근로복지지표는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관심과 복지 수준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근로복지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의 개발과 평가에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것으로 근로복지지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근로복지지표는 근로복지수준에 대한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총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수정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가능한 한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여 지표의 산술과 집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지표 산정과정에서 경제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통계의 양적인 조작화에 따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관적 지표로 보완하되 주관적 지표가 가질 수 있는 객관성 부족과 편견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주관적 지표의 수를 최소화한다. 일곱째,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 현대 사회의 세계화와 정보화 흐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가하고 지표의 용어도 이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새로운 근로복지지표의 주요 내용

1) 고용사정 부문

김교성(2000)은 능력개발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서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세부관심사항을 인력개발 및 고용평등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국민 평균교육년수를 삭제하는 대신 취업자 구성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이때의 취업자 구성비는 기혼여성·고령자·장애인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므로 실제로는 취약계층 취업자 구성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기회 부문에서 장기실업자 비율의 경우, 6개월 이상을 장기실업자로 간주한 기존의 체계에 대하여 12개월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 부문에서는 상시고용률을 삭제하고, 이에 대신하여 정규직·일용직·임시근로자 비율을 포함함으로써 최근 고용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고자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표 3-9>에 정리하고 있다.

<표 3-9> 고용사정 부문 비교(2002년)

현행 지표체계		개선된 지표체계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교육훈련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삭제)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인력개발 및 고용평등 (조정)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취업자 구성비(신규)
취업기회	비농가 실업률 구인배율 취업알선 비율 장기실업자 비율	취업기회	비농가 실업률 구인배율 취업알선 비율 장기실업자 비율
고용안정	상시고용률(삭제) 경영상 이유의 해직자율 평균 근속연수	고용안정	정규직 · 일용직 · 임시직 비율(신규) 경영상 이유의 해직자율 평균근속연수

주 : 평균근속연수의 경우, 산정방식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경제활동인구에서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경제활동인구로 조정한 것임.

자료 : 김교성(2000).

2)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부문

먼저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의료보험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여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비율 대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비율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정방식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에서 총근로자로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하여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을 추가하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비율과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을 각각 국민연금 적용근로자 비율과 고용보험 적용근로자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자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 부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용어로서 산재도수율 대신에 재해도수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재해강도율과 통일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표 3-10>에서 정리하고 있다.

<표 3-10>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부문 비교(2000년)

현행 지표체계		개선된 지표체계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세부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 서비스	직장의료보험가입자비율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비율(조정)
	산재보험 적용근로자비율		산재보험 적용근로자비율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비율		국민연금 적용근로자비율(조정)
	고용보험 가입자비율		고용보험 적용근로자비율(조정)
	부의 근로복지 예산 비중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신규)
			정부의 근로복지예산비중
산업안전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	산업안전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
	산재도수율		재해도수율(조정)
	직업병 발병근로자 비율		직업병 발병 근로자 비율
	재해강도율		재해강도율

자료 : <표 3-9>와 동일.

3) 임금·근로조건 부문

임금·근로조건 부문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있다. 먼저 임금 및 부가급여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과 종업원 지주제 실시 비율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항목에서는 연평균 유급 휴가일수를 추가하고 있다(<표 3-11> 참조).

<표 3-11> 임금 및 근로조건 부문 비교(2000년)

현행 지표체계		개선된 지표체계	
세 부 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세 부 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임금 및 부 가급여	실질임금 변화율 직종, 산업, 학력, 규모, 성별 임금격차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 비율 체불임금 발생비율 노동비용 중 복리후생비 비율	임금 및 부 가급여	실질임금 변화율 직종, 산업, 학력, 규모, 성별 임금격차 임금총액중 정액급여비율 체불임금 발생비율 노동비용 중 복리후생비 비율 종업원지주제 실시 비율(신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신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주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비율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	근로조건 및 노사 관계	주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비율 연평균 유급휴가일수(신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자료 : <표 3-9>와 동일.

4) 사생활 부문

사생활 부문의 경우, 기존의 주거·통근 부문을 주거와 정보통신으로 변경하여 세부측정 항목에 인터넷가입률을 추가하는 한편, 승용차보급률은 제외하고 있다. 여가 부문에서는 여가와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반영하여 주관적 지표로서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하고, 보건 및 환경 부문에서 대기·수질 및 해수 오염도에 소음 오염도를 추가하고 있다.

<표 3-12> 사생활 부문 비교(2000년)

현행 지표체계		개선된 지표체계	
세 부 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세 부 관심사항	세부측정항목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변화율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변화율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주거통근	주택보급률 승용차보급률(삭제)	주거와 정보 통신(조정)	주택보급률 인터넷가입률(신규)
여 가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중	여 가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중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신규)
보건 및 환경	대기·수질 및 해수 오염도	보건 및 환경	대기·수질·해수 및 소음 오염도(조정)

자료 : <표 3-9>와 동일.

<표 3-13> 개선된 근로복지지표 체계(2000년)

주요 관심 사항	세부 관심 사항	세부측정항목	정의 및 산식	자료	비고
고 용 사 정	인력 개발 및 고용 평등	정부의 직업훈련예산 비중	직업훈련투자비(결산) / 중앙정부세출(결산) × 100	결산개요	
		노동비용 중 교육훈 련비 비중	교육훈련비총액 / 노동비용총액×100	기업체노동비용조 사보고서	
		취약계층 취업자 구 성비	(기혼여성취업자+고령취업자+장애인취업자) / 취업자수×100	노동통계 한국사회지표	신규
	취업 기회	비농가 실업률	비농가 실업자 / 비농가경제활동인구 ×100	노동통계연감	
		구인배율	구인수 / 구직자수×100	노동통계연감	
		취업알선 비율	취업알선자수 / 구직자수×100	한국사회지표	
	고용 안정	장기실업자 비율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100	한국사회지표	조정
		정규직 · 일용직 · 임 시직근로자비율	비고 주 ¹⁾	노동통계	신규
		경영상 이유의 해직 자율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직자수 / 총이직자수×100	노동력유동실태조 사보고서	
		평균근속년수	평균 근속년수	노동통계연감	
공 공 근 로 복 지 및 산 업 안 전	사회 보험 및 공공 근로 복지 서비 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비율	직장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수 / 총근로자수× 100	보건복지통계연보 사업체노동실태조 사보고서	조정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비율	산재보험적용자수 / 총근로자수×100	경제활동인구연보 노동통계연감	
		국민연금사업장 적용근로자 비율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수 / 총근로자수×100	보건복지통계연보 노동통계연감	조정
		고용보험적용 근로자 비율	고용보험적용자수 / 총근로자수×100	한국사회지표	조정
		실업급여 수혜자 비 율	실업급여수혜자수 / 총실업자수×100	한국노동연구원고 용보험동향	신규
		정부의 근로복지 예 산 비중	경상근로복지예산액 / 경상GNP×100	한국사회지표	
	산업 안전	근로자 건강진단 수 검률	건강진단수검근로자수 / 건강진단대상근로자× 100	한국사회지표	
		재해도수율	재해건수 / 총근로시간수100×	노동통계연감	조정
		직업병 발병 근로자 비율	직업병 유병근로자수 / 건강진단대상근로자× 100	노동통계연감	
		재해강도율	총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100	노동통계연감	

주: 1) 정규직근로자수 / 총근로자수, 일용직근로자수 / 총근로자수, 임시직근로자수 / 총근로자수×100.

2) 생산직임금 / 사무직임금 ; 제조업임금 / 전산업임금, 고졸 이하 임금 / 대졸 이상 임금, 300인 이하 임금 / 300인 이상 임금, 여성근로자 임금 / 남성근로자 임금 ×100.

3) 최하위란 업종별 최저임금 중 최하위 업종의 임금임.

자료 : <표 3-9>와 동일.

<표 3-13> 개선된 근로복지지표 체계(2000년 - 계속)

주요 관심 사항	세부관심 사항	세부측정항목	정의 및 산식	자료	비고
임금 및 근로 조건	임금 및 부가급여	실질임금 변화율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100	노동통계연감 한국사회지표	
		직종, 산업, 학력, 규모별, 성별 임금격차	비고 주 ²⁾	노동통계연감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비율	정액급여비 / 임금총액×100	노동통계연감	
		종업원지주제 참여업체율	참여업체수 / 100인이상 사업체 수×100	한국사회지표	신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최하위최저임금 / 전근로자 평균 임금×100 주 ³⁾	한국사회지표	신규
		체불임금발생비율	체불임금총액 / 총근로자수×100	노동통계연감	
		노동비용중 복리후생비비율	복리지출총액(=법정복리비+법정외복리비) / 노동비용총액×100	KLI노동통계	
	근로조건 및 노사 관계	주당 근로시간	월근로시간×7 / 30.4	KLI노동통계	
		초과근로시간비율	초과근로시간 / 총근로시간×100	KLI노동통계	
		연평균유급휴가일수	유급휴가총일수 / 총근로자수	한국사회지표	신규
		노사분규로인한 노동손실일수	노동손실일수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사 생 활	가계 수지	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변화율	소득 - 비소비지출	한국사회지표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흑자=(소득-가계지출) / 가처분소득×100	한국사회지표	
	주거와 정보통신	주택보급률	주택수 / 보통가구수×100	주택통계편람	
		인터넷 가입률	인터넷 가입회선 / 총전화회선×100	한국사회지표	신규
	여가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중	교양오락비 / 가계소비지출×100	한국사회지표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지표		신규
	보건 환경	대기·수질·해수·소음오염도	대기·수질·해수·소음오염도	한국사회지표	조정

주: 1) 정규직근로자수 / 총근로자수, 일용직근로자수 / 총근로자수, 임시직근로자수 / 총근로자수×100.

2) 생산직임금 / 사무직임금 ; 제조업임금 / 전산업임금, 고졸 이하 임금 / 대졸 이상 임금, 300인 이하 임금 / 300인 이상 임금, 여성근로자 임금 / 남성근로자 임금 ×100.

3) 최하위란 업종별 최저임금 중 최하위 업종의 임금임.

자료 : <표 3-9>와 동일.

IV. 현행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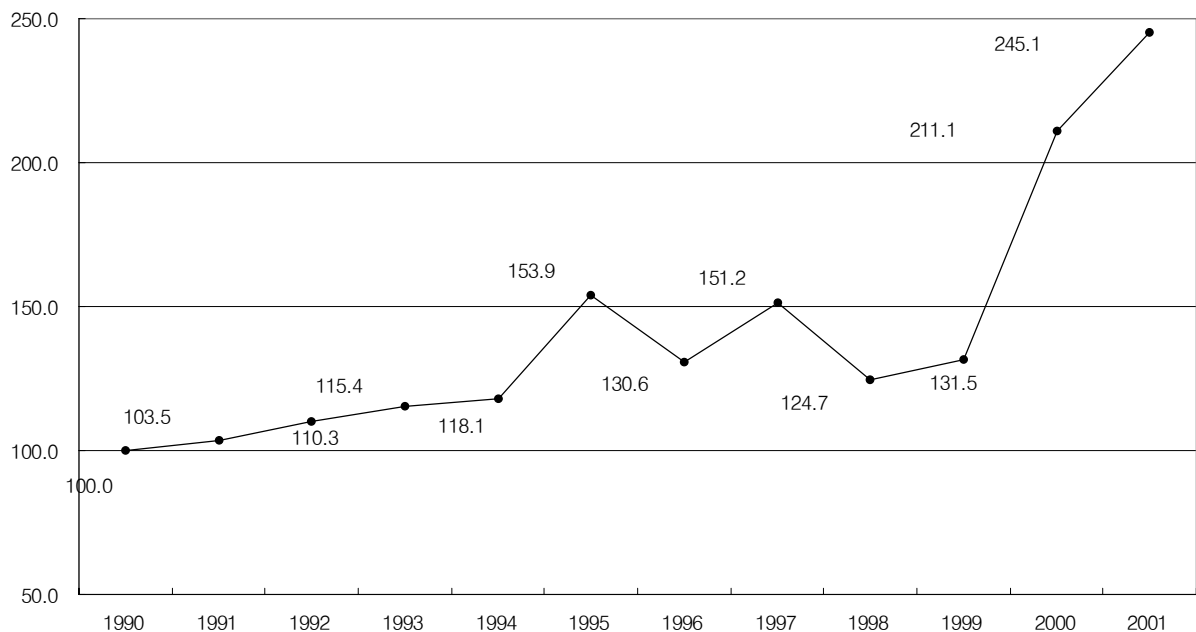
1.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가. 현행 지표의 문제점

1) 현행 지표의 추이

현재 작성되고 있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에 과연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먼저 현행 근로복지 종합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그림 4-1]은 이를 그린 것이다.

[그림 4-1] 현행 근로복지지표의 추이



그림에서 보듯이 근로복지지표의 움직임은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지표는 꾸준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후부터 지표의 움직임은 큰 변동성을

보인다. 특히 2000년에 지표의 수준은 211.1을 기록하여 전년도의 131.5에 비해 무려 79.6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2001년에는 245.1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표의 급격한 움직임이 과연 현실의 근로 복지 수준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근로복지 수준이 2000년 들어 급격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본 연구는 객관적 지표에 과연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근로복지 종합지표를 분해함으로써 급격하게 변한 원인을 계량화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2) 근로복지지표 변화의 분해

가) 분해 방법

근로복지 종합지표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표의 변화를 분해하기로 하자. 현행 근로복지지표(labor welfare indicator, LWI)는 대지표라고 불리는 지표들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어 있다.⁴⁾ 즉

$$(1) \quad LWI = \frac{1}{n} \sum_{i=1}^n A_i,$$

여기서 A_i 는 근로복지 종합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대지표를 나타내며 $i = 1, \dots, 4$ 이다. 즉 현재 근로복지 종합지표는 네 가지의 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웃하는 두 시점($t-1$, t) 간 지표 값의 변화를 Δ 로 나타내면, 근로복지지표의 변화 ΔLWI_t 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quad \Delta LWI_t = \frac{1}{n} \sum_{i=1}^n \Delta A_{it}$$

4)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복지지표를 종합지표라고 부른다.

결국 근로복지지표 값의 변화 ΔLWI_t 가운데 각 대지표 값들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변화의 정도는 다음의 식 (3)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3) \quad 1 = \sum_{i=1}^n \frac{\frac{1}{n} \Delta A_{it}}{\Delta LWI_t}$$

즉 식 (3)을 사용하면 종합지표의 변화가 각각의 대지표들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 즉 식 (3)을 사용한 분해방법은 대지표와 중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중지표를 B_j 라 하면 각 대지표들은 식 (4)와 같이 분해될 수 있다.

$$(4) \quad 1 = \sum_{j=1}^m \frac{\frac{1}{m} \Delta B_{jt}}{\Delta A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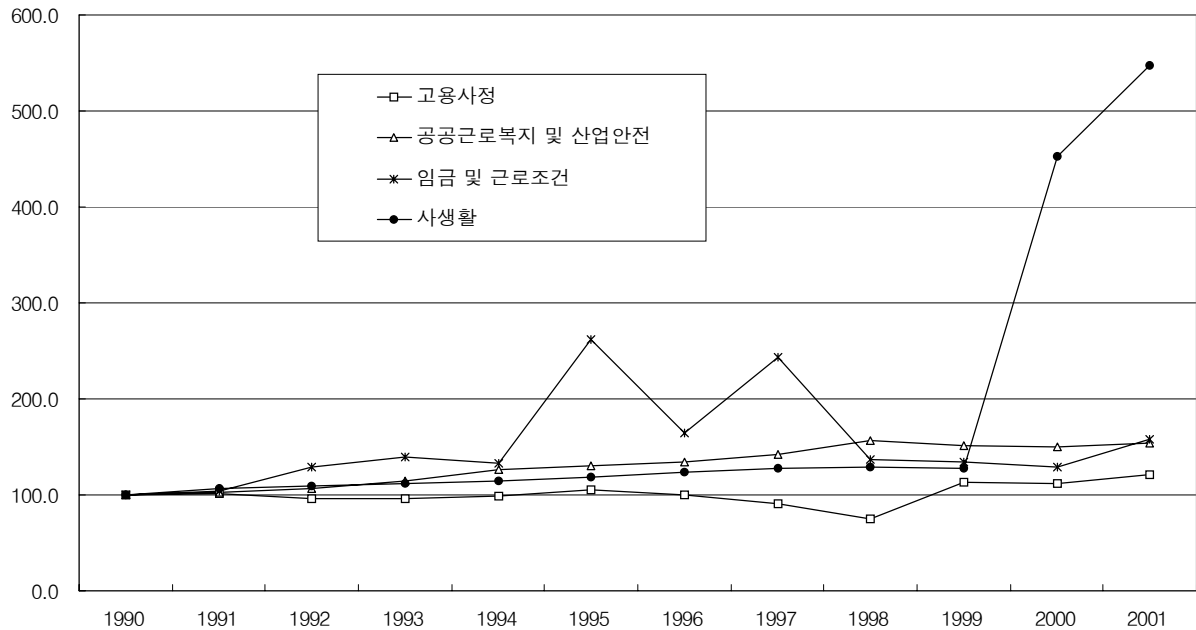
그리고 소지표를 C_k 라 하면 중지표는 식 (5)와 같이 분해될 수 있다. 식 (5)에서 w_k 는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종합지표나 대지표와 달리 중지표는 하위지표인 소지표들의 가중평균이기 때문이다.

$$(5) \quad 1 = \sum_{k=1}^l \frac{\Delta w_k C_{kt}}{\Delta B_t}$$

나) 분해 결과 1 : 종합지표의 분해

이제 위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종합지표를 분해하기로 한다. 분해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근로복지 종합지표를 구성하는 대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지표들은 ‘고용사정’,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임금 및 근로조건’, ‘사생활’이라는 네 가지이다.

[그림 4-2] 대지표의 변화



그림에서 보듯이 2000년의 종합지표 급등은 ‘사생활’ 지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듯하고 1995-99년의 등락은 ‘임금 및 근로조건’ 지표의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앞의 지표변화 분해 방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각 대지표들의 변화가 종합지표의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1>은 분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짐작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 종합지표 상승의 주원인은 ‘사생활’ 변수의 개선임을 표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표에서 2000년의 종합지표는 전년에 비해 79.6 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대지표인 ‘사생활’이 무려 325.4 포인트 개선되고 있다. 이 사생활 변수의 개선에 의해 초래된 종합지표의 변화는 무려 102.2%에 이른다. 이외의 다른 대지표들은 오히려 종합지표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995-98년의 종합지표 등락의 주원인은 ‘임금 및 근로조건’임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종합지표의 변화분은 절대값으로 20~36 포인트 정도인데 ‘임금 및 근로조건’을 나타내는 대지표의 변화가 동기간 동안 절대값으로 78~129로 높다. 구체적으로 종합지표의 변화 가운데 이 변수에 의해 초래된 변화의 정도는 90~105%에 이를 정도로 크다.

<표 4-1> 종합지표의 분해결과

(단위: %p, %)

	근로복지 종합지표	대지표			
		고용사정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임금 및 근로조건	사생활
1991	3.5 (100.0)	1.5 (10.6)	2.0 (14.2)	4.5 (31.9)	6.1 (43.3)
1992	6.7 (100.0)	-6.1 (-22.7)	4.9 (18.2)	24.6 (91.4)	3.5 (13.0)
1993	5.1 (100.0)	0.5 (2.4)	8.0 (39.0)	10.3 (50.2)	1.7 (8.3)
1994	2.7 (100.0)	3.0 (28.0)	11.4 (106.5)	-6.4 (-59.8)	2.7 (25.2)
1995	35.8 (100.0)	6.5 (4.5)	3.9 (2.7)	128.9 (90.0)	4.0 (2.8)
1996	-23.3 (100.0)	-4.9 (5.3)	3.5 (-3.8)	-97.0 (104.1)	5.2 (-5.6)
1997	20.6 (100.0)	-9.2 (-11.2)	8.4 (10.2)	78.7 (95.5)	4.5 (5.5)
1998	-26.5 (100.0)	-15.7 (14.8)	14.7 (-13.9)	-106.7 (100.8)	1.8 (-1.7)
1999	6.8 (100.0)	37.4 (138.0)	-5.1 (-18.8)	-3.3 (-12.2)	-1.9 (-7.0)
2000	79.6 (100.0)	-0.8 (-0.3)	-1.1 (-0.3)	-5.1 (-1.6)	325.4 (102.2)
2001	34.0 (100.0)	8.6 (6.3)	3.7 (2.7)	29.8 (21.9)	94.0 (69.1)

주 : () 안의 값은 각 대지표의 종합지표에 대한 기여도를 %로 나타낸 분해결과임.

다) 분해 결과 2 : 대지표들의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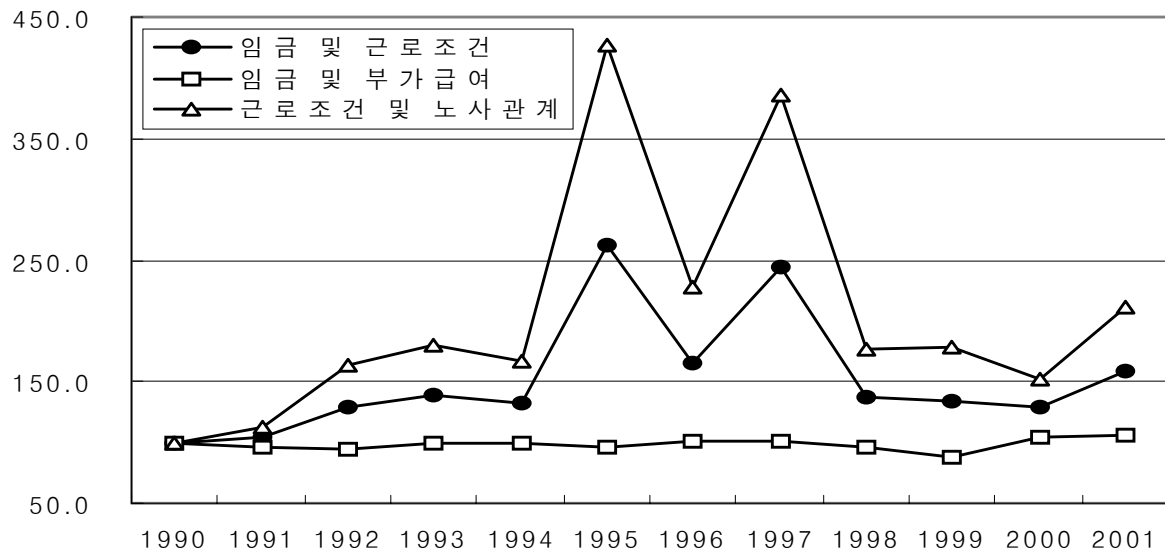
앞의 종합지표 분해결과는 종합지표의 급격한 변화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과 ‘사생활’이라는 두 대지표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들 두 대지표들의 변화를 다시 중지표들의 변화로 분해해 보아야 종합지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다.

먼저 ‘임금 및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지표들의 변화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 4-3]은 대변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두 중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움직임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라는 중지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움직임이 거의 없다. 즉 대지표 변화의 대부분은 ‘근로

조건 및 노사관계’에 의해 초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변화를 분해하기로 하자.

[그림 4-3] ‘임금 및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지표들의 변화



다음의 <표 4-2>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분해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그 변화는 대부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1995-98년의 대지표 변화는 절대값으로 78~129 정도이고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변화는 역시 절대값으로 157~26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변화 가운데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정도는 95~103% 정도로 높다.

<표 4-2>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분해 결과

(단위: %p, %)

구 분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1991	4.4 (100.0)	-4.2 (-47.2)	13.1 (147.2)
1992	24.7 (100.0)	-0.6 (-1.2)	49.9 (101.2)
1993	10.3 (100.0)	4.1 (19.9)	16.5 (80.1)
1994	-6.5 (100.0)	-0.6 (4.7)	-12.3 (95.3)
1995	129.0 (100.0)	-2.1 (-0.8)	260.0 (100.8)
1996	-97.1 (100.0)	4.9 (-2.5)	-199.0 (102.5)
1997	78.7 (100.0)	-0.2 (-0.1)	157.6 (100.1)
1998	-106.7 (100.0)	-4.4 (2.1)	-209.0 (97.9)
1999	-3.3 (100.0)	-8.4 (127.3)	1.8 (-27.3)
2000	-5.1 (100.0)	16.2 (-160.4)	-26.3 (260.4)
2001	29.8 (100.0)	1.2 (2.0)	58.4 (98.0)

그렇다면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는 또 다시 어떤 요인에 의해 주로 그 변화가 초래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궁극적인 문제점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소지표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 4-3>은 이러한 소지표들을 이들의 가중치들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지표’는 소지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소지표인 ‘주당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비율’의 움직임은 미약한 반면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의 변화는 매우 커서 중지표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1995-98년의 변화가 더욱 그렇다. 이 기간 동안 소지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300~1,150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다.

<표 4-3>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소지표와 가중치

구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지표	주당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비율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가중치의 합
		가중치	지수	가중치	지수	가중치	지수	
1990	100.0	34.91	100.0	33.96	100.0	31.13	100.0	100.00
1991	113.1	34.91	100.6	33.96	103.9	31.13	137.2	100.00
1992	163.0	34.91	101.5	33.96	106.4	31.13	293.7	100.00
1993	179.5	34.91	101.5	33.96	109.8	31.13	343.0	100.00
1994	167.2	34.91	101.7	33.96	110.7	31.13	302.3	100.00
1995	427.2	34.91	101.1	33.96	106.4	31.13	1143.0	100.00
1996	228.2	36.11	101.9	33.18	111.7	30.71	502.5	100.00
1997	385.8	36.11	103.2	33.18	116.5	30.71	1009.0	100.00
1998	176.8	36.11	105.0	33.18	132.7	30.71	309.0	100.00
1999	178.4	34.12	100.6	33.18	112.6	32.49	328.4	99.79
2000	152.3	34.12	101.5	33.18	122.7	32.49	236.9	99.79
2001	210.7	34.12	102.6	33.18	123.8	32.49	414.3	99.79

이제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변화를 분해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소지표들에 의해 초래된 변화의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해 보자. 아래의 <표 4-4>는 이러한 분해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해결과에 따르면 1995-98년 동안의 중지표 변동의 거의 대부분이 소지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표에서 1995-98년 동안 소지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700~+840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중지표 변화 -208~+260의 98~103%에 해당한다.

<표 4-4>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분해 결과

구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지표	주당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1991	13.1 (100.0)	0.6 (1.6)	3.9 (10.1)	37.2 (88.3)
1992	49.9 (100.0)	0.9 (0.6)	2.5 (1.7)	156.5 (97.7)
1993	16.5 (100.0)	0.0 (0.0)	3.4 (7.0)	49.3 (93.0)
1994	-12.3 (100.0)	0.2 (-0.6)	0.9 (-2.5)	-40.7 (103.1)
1995	260.0 (100.0)	-0.6 (-0.1)	-4.3 (-0.6)	840.7 (100.6)
1996	-199.1 (100.0)	0.8 (-0.8)	5.3 (-0.5)	-640.5 (101.2)
1997	157.6 (100.0)	1.3 (0.3)	4.8 (1.0)	506.5 (98.7)
1998	-208.9 (100.0)	1.8 (-0.3)	16.2 (-2.6)	-700.0 (102.9)
1999	1.5 (100.0)	-4.4 (-232.7)	-20.1 (-432.1)	19.4 (764.8)
2000	-26.1 (100.0)	0.9 (-1.2)	10.1 (-12.9)	-91.5 (114.0)
2001	58.4 (100.0)	1.1 (0.6)	1.1 (0.6)	177.4 (98.7)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종합지표에서 나타나는 1995-98년의 커다란 변동의 대부분은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에 의한 것이며 (2) 동기간 동안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 변동의 대부분은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고 (3) 이러한 중지표의 움직임은 소지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에 의한 것이다.

결국 종합지표에서 나타나는 1995-98년의 큰 움직임의 대부분이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라는 소지표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소변수에 의해 종합변수가 압도되고(dominated)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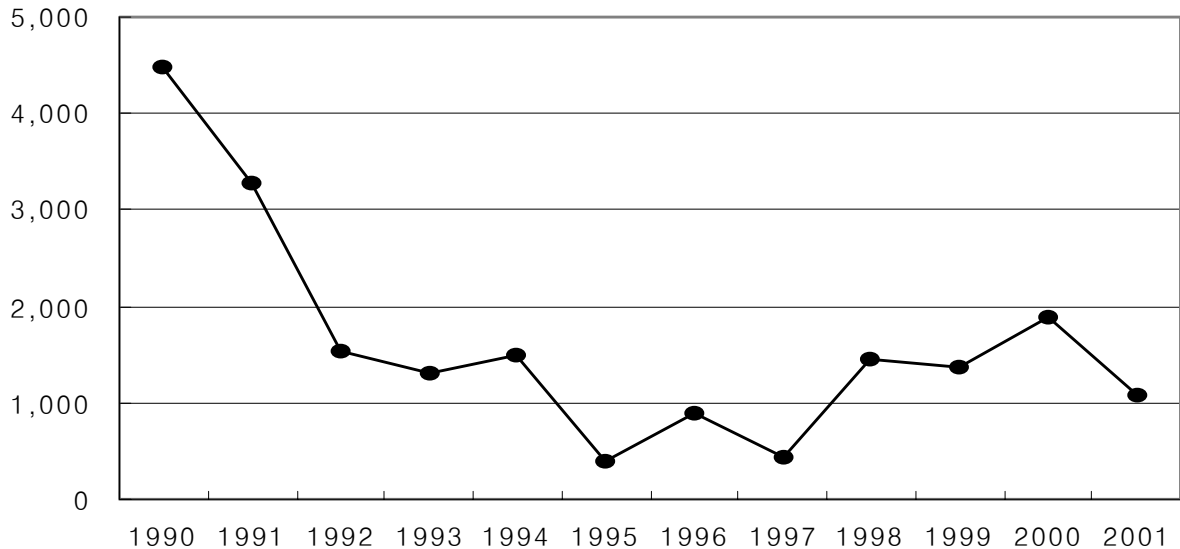
그렇다면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라는 소지표는 왜 변동성이 크며 그러한 변동은 근로복지를 잘 반영하는가? 이를 보기 위해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라는 지표가 근거하고 있는 원래 변수를 그림으로 그려 살펴보자. [그림 4-4]는 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변수는 1992년까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며 1995-98년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변수는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행정통계인데 정책방향이나 정책의지, 분규산정 기준의 변화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1990-92년에서 이 변수의 급격한 하락은 정부의 정책변화 및 정책의지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후의 변화는 경기변동과 분규산정 기준의 변화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노사분규 현장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분규로 산정되는 일수를, 의도적이든 아니든, 낮춘 것이라면 이

는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림 4-4]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

(단위: 천일)



이제 종합지표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대지표인 ‘사생활’을 살펴보자. 대지표 ‘사생활’의 급상승(2000년)은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표 4-5>에서 보듯이 사생활을 구성하는 다른 중지표들에 비해 ‘주거 및 인터넷’ 지표가 2000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지표 ‘사생활’을 분해하여 그 결과를 <표 4-6>에 제시하였다.

분해결과에 따르면 대지표 ‘사생활’의 2000년 급등은 대부분 ‘주거 및 인터넷’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2000년에 대지표의 325.4 포인트 상승의 95.9%가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에 의한 것이며 2001년의 94.0 포인트 상승 역시 대부분인 97.6%가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에 의한 것이다.

<표 4-5> 대지표 ‘사생활’을 구성하는 중지표들

구 분	사생활	가계수지	주거 및 인터넷	여가	환경
199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1	106.1	116.9	100.3	106.0	101.1
1992	109.6	127.0	100.8	110.5	100.0
1993	111.3	132.1	101.6	113.1	98.3
1994	114.0	144.7	102.9	119.3	89.0
1995	118.0	156.7	103.5	125.7	86.1
1996	123.2	167.2	112.2	113.0	100.4
1997	127.7	176.6	118.0	113.0	103.0
1998	129.5	170.7	120.0	97.8	129.5
1999	127.6	154.6	121.4	106.5	128.0
2000	453.0	227.9	1,368.8	115.2	100.0
2001	546.9	245.4	1,735.5	106.5	100.3

<표 4-6> 대지표 ‘사생활’의 분해 결과

구 분	사생활	가계수지	주거 및 인터넷	여가	환경
1991	6.1 (100.0)	16.9 (69.5)	0.3 (1.2)	6.0 (24.7)	1.1 (4.5)
1992	3.5 (100.0)	10.1 (72.1)	0.5 (3.6)	4.5 (32.1)	-1.1 (-7.9)
1993	1.7 (100.0)	5.1 (75.0)	0.8 (11.8)	2.6 (38.2)	-1.7 (-25.0)
1994	2.7 (100.0)	12.6 (116.7)	1.3 (12.0)	6.2 (57.4)	-9.3 (-86.1)
1995	4.0 (100.0)	12.0 (74.5)	0.6 (3.7)	6.4 (39.8)	-2.9 (-18.0)
1996	5.2 (100.0)	10.5 (50.5)	8.7 (41.8)	-12.7 (-61.1)	14.3 (68.8)
1997	4.5 (100.0)	9.4 (52.8)	5.8 (32.6)	0.0 (0.0)	2.6 (14.6)
1998	1.8 (100.0)	-5.9 (-79.7)	2.0 (27.0)	-15.2 (-205.4)	26.5 (358.1)
1999	-1.9 (100.0)	-16.1 (214.7)	1.4 (-18.7)	8.7 (-116.0)	-1.5 (20.0)
2000	325.4 (100.0)	73.3 (5.6)	1,247.4 (95.9)	8.7 (0.7)	-28.0 (-2.2)
2001	94.0 (100.0)	17.5 (4.7)	366.7 (97.6)	-8.7 (-2.3)	0.3 (0.1)

그렇다면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은 과연 어떤 소지표들의 움직임을 주로 반영하는가? 아래의 표는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을 구성하는 소지표들과 그 가중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은 <표 4-7>에서 보듯이 그 구성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였다. 30분 이상 통근자 비율이 처음부터 소변수로 도입되었으나 1996년부터 제외되고 대신 승용차보급율 지수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인터넷 이용자수 지수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00년부터 도입된 소지표 ‘인터넷 이용자’는 2000년 중지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을 구성하는 소지표들

구분	주거 및 인터넷 지표	주택보급률		30분 이상 통근자비율		승용차보급율		인터넷 이용자	
		가중치	지수	가중치	지수	가중치	지수	가중치	지수
1990	100.0	51.38	100.0	48.62	100.0				
1991	100.3	51.38	103.3	48.62	97.2				
1992	100.8	51.38	107.0	48.62	94.3				
1993	101.6	51.38	110.6	48.62	92.0				
1994	102.9	51.38	115.3	48.62	89.7				
1995	103.5	51.38	118.8	48.62	87.4				
1996	112.2	52.74	123.2			47.26	100.0		100.0
1997	118.0	52.74	127.1			47.26	107.9		223.5
1998	120.0	52.74	127.6			47.26	111.5		424.5
1999	121.4	51.72	128.9			48.28	113.3		1,485.6
2000	1,368.8	50.00	132.9					50.00	2,604.7
2001	1,735.5	50.00	135.8					50.00	3,335.2

실제로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을 분해해 보면 2000년 상승의 104.4%가 소지표 ‘인터넷 이용자’의 상승에 의한 것이며 2001년 상승의 99.6%도 소지표 ‘인터넷 이용자’의 상승에 의한 것임을 다음의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8> 중지표 '주거 및 인터넷'의 분해 결과

구분	주거 및 인터넷 지표	주택보급률	30분 이상 통근자비율	승용차보급율	인터넷이용자
1991	0.3 (100.0)	3.3 (507.4)	-2.8 (-407.4)	0.0 (0.0)	0.0 (0.0)
1992	0.5 (100.0)	3.7 (387.1)	-2.9 (-287.1)	0.0 (0.0)	0.0 (0.0)
1993	0.7 (100.0)	3.6 (252.9)	-2.3 (-152.9)	0.0 (0.0)	0.0 (0.0)
1994	1.3 (100.0)	4.7 (186.2)	-2.3 (-86.2)	0.0 (0.0)	0.0 (0.0)
1995	0.7 (100.0)	3.5 (264.4)	-2.3 (-164.4)	0.0 (0.0)	0.0 (0.0)
1996	8.7 (100.0)	4.4 (45.2)	-87.4 (-488.3)	100.0 (543.1)	0.0 (0.0)
1997	5.8 (100.0)	3.9 (35.5)	0.0 (0.0)	7.9 (64.5)	0.0 (0.0)
1998	2.0 (100.0)	0.5 (13.4)	0.0 (0.0)	3.6 (86.6)	0.0 (0.0)
1999	1.4 (100.0)	1.3 (-45.7)	0.0 (0.0)	1.8 (145.7)	0.0 (0.0)
2000	1247.4 (100.0)	4.0 (0.0)	0.0 (0.0)	-113.3 (-4.4)	2604.7 (104.4)
2001	366.7 (100.0)	2.9 (0.4)	0.0 (0.0)	0.0 (0.0)	730.5 (99.6)

3) 현행 지표의 문제점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종합지표의 변화가 이들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나 종합지표에 나타나는 큰 움직임이 오직 소수에 불과한 소지표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행 종합지표는 특정 소지표에 의해 그 움직임이 지배되고 (dominated) 있는 실정이다.

둘째, 종합지표의 움직임을 사실상 결정하는 변수가 근로자의 복지수준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정도가 크다면 이는 근로복지수준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나 인터넷 사용자수라는 변수들이 근로복지 외의 다른 요인들에 영향받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나. 개선 방향 및 세부항목 도출

1) 개선방향

시대상황이나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한 변수들이 존재하여 이 변수들에 의해 종합지표가 크게 등락한다. 따라서 시대나 경기상황에 지나치게 민감한 변수들은 제외하거나 스무딩(smoothing)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지표들을 구성하는 소지표의 수가 적은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특정 변수 하나의 변화만으로 인해 종합지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소지표에 들어가는 변수의 수가 적은 경우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소지표에 양과 질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골고루 지표로 추가하여 종합지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세부항목 도출

특정 소지표 변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급격하여 종합지표가 이들의 움직임에 압도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근로복지 지표의 가장 큰 문제점임을 보았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적절치 못한 변수들을 제외하는 대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추가하는 변화를 통해 현행 지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네 가지 대지표와 이들을 구성하는 중지표별로 나누어 소지표들을 제외하거나 더하기로 하자.

가) 고용사정

대지표 ‘고용사정’은 세 가지 중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고용과 관련한 근로자의 능력, 즉 고용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교육 훈련’과 관련된 중지표가 그 하나이다. 둘째, 실제 취업 가능성 및 취업의 기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영하는 ‘취업기회’이다. 셋째는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나타내는 ‘고용안정’이다.

이들 셋 가운데 중지표 ‘교육 훈련’은 표에서 보듯이 2002년에 두 가지 변수, 즉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과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변수는 모두 교육 훈련의 질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교육 훈련의 양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없으므로 소지표에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 ‘근로자 평균 수학연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수학연수가 엄밀하게 조사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 가운데 고졸이상자의 비율을 구한 뒤 이를 지수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면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사람들 가운데 교육정도가 고졸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중지표인 ‘취업기회’를 구성하는 소지표들을 살펴보자. 2002년에 사용되고 있는 소지표들은 취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율이다. 이 가운데 취업률은 성별과 여성의 혼인여부별 및 55세 이상여부별 취업자 비율로 산정된다. 즉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여성 취업자의 비율과 여성 취업자 가운데 기혼여성 취업자의 비율 및 전체 취업자 가운데 55세 이상 취업자의 비율, 기혼여성, 고령, 장애인들의 취업률과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이다. 이들 세 지표들의 평균을 구해 취업률이라는 소지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고용 비율과 장기실업자 비율을 지수화하여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 기혼, 고령 및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굳이 취약계층 근로자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이들 계층의 취업기회가 과연 근로자 전체의 취업기회를 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검증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계층의 취업자 비율을 지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산가능인구 전체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이를 소지표에 추가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의 취업자 비율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전체에 대비한 임금근로자 비율이 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보다 잘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소지표인 장기실업자 비율은 시계열의 연속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1998년까지의 지표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의 비율이나 1999년부터 구직기간 1년 이상 실업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장기실업자 비율이라는 지표는 1998년 99.3에서 1999년에 304.2로 급변한다. 이러한 변화로 볼 때 우리는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라는 자료가 계속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시계열의 연속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구직기간 1년 이상 실업자로 변화를 주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의 비율을 지수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년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실업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1년 이상만 사용할 경우 현실의 사정이 종합지표에 반영되는 시차가 너무 길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지표인 ‘고용안정’은 네 가지 소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용율과 평균근속년수 및 입·이직률이 그것이다. 먼저 피고용율에 대해 살펴보자. 피고용율은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율이다. 그런데 피고용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근로자의 고용이 더욱 안정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지표인 피고용율을 제외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평균근속년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도입 취지에는 본 연구 역시 공감한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다는 것이 고용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근속년수라는 변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고령화이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근속년수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길어지는 것이 고용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종류의 일에 종사하게 될 경우 경력은 새로이 시작하나 근속은 이어진다. 이미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근속이라기보다는 경력년수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균근속년수를 평균경력년수로 대체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을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의 하나로 추가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의 증가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므로 우리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을 구해 이의 보수를 구한 다음 이를 지수화하여 고용안정에 사용하기로 한다.

<표 4-9> 대지표 ‘고용사정’의 소지표 구성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2002	2003	비고
고용사정	교육훈련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	○	고등학교졸업이상자/임금근로자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비중	○	○	
		근로자 평균 수학연수	-	○	
	취업기회	취업률(성별, 기혼여성, 고령)	○	-	1998-2001: 1년이상 실업자 비율
		취업률(장애인)	○	-	
		장기실업자 비율(6개월이상)	○	○	
		취업비율	-	○	
	고용안정	임시 일용 근로자 비율	-	○	임시+일용근로자수/근로자수
		피고용률	○	-	
		평균 근속년수	○	-	
		이동률(입·이직률)	○	-	
		평균 경력년수	-	○	

나)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이제 두 번째 대지표인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에 대해 살펴보자. 이 지표는 두 가지 중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 복지 서비스’와 ‘산업안전’이 그것이다.

먼저 전자의 중지표에 대해 살펴보자. 전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과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 정부의 근로복지 예산 비중 및 임금채권 채당금 지급 비율 등 모두 7가지 소지표를 2002년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임금채권 채당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만으로 이 중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임금채권 채당금 지급액은 자료가 1999년부터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이 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중지표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 복지 서비스’가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 또는 과소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지표 ‘산업안전’에서는 산업안전의 질적인 측면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변수인 사망만인율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망만인율의 보수를 구해 이를 지수화하여 사용하기로 하자. 보수를 취한 이유는 역수를 취할 경우 생기는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표 4-10> 대지표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의 구성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2002	2003	비고
공공근로 복지 및 산업안전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 복지서비스	산재보험적용 근로자비율	○	○	직장의료보험가입자비율
		의료보험 가입자비율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비율	○	○	
		고용보험 가입자비율	○	○	
		실업급여 수혜자비율	○	○	
		정부의 근로복지예산비중	○	○	
		임금채권 채당금 지급액	○	-	
	산업안전	산재도수율	○	○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	○	○	
		직업병 발병 근로자비율	○	○	
		재해강도율	○	○	
		사망만인율	-	○	

다) 임금 및 근로조건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은 ‘임금 및 부가급여’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라는 두 중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중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는 다시 6개의 소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임금과 체불임금, 임금격차(성별, 교육정도별, 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사내복지기금 비율, 노동비용 중 복리후생비 비율,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비율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체불임금 발생액은 중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에 적절한 변수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임금액은 경기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나 근로감독의 정도나 근로자의 신고의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 변수의 움직임이 매우 급격하여 이로 인해 중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 역시 급격하게 변한다. 즉 중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를 나타내는 데에 소지표 체불임금 발생액은 지나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아울러 사내 근로복지기금비율과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 비율 역시 중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변수로 성별, 교육정도별, 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임금격차를 지수화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지니계수로 대체하고자 한다. 지니계수는 임금 또는 소득 불평등을 하나의 체계적인 지수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수이다. 본 연구는 지니계수의 보수를 지수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지니계수의 시계열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3 KLI 노동통계』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수준도 지수화하여 임금 및 부가급여 중지표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저임금수준을 소비자물가수준으로 디플레이트 하여 실질변수로 만든 뒤 지수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서 우리는 이미 소지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로 인해 종합지표에 지나친 민감성을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변수를 제외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무턱대고 이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분규 참가자수’에다 ‘분규지속일수’를 곱하여 노사관계를 반영하는 변수로 파악하기로 한다. 이 변수는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배무기 외(1987), 한국노동연구원(1988)). 이 변수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의 자연로그 값을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연로그 값의 역수를 취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사용하기로 하자.

<표 4-11>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구성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2002	2003	비고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및 부가급여	실질임금	○	○	실질임금지수(기준년 대비)
		체불임금	○	-	실질체불임금액(지수화)
		사내근로복지기금비율	○	-	
		직종·산업·학력·규모·성별 임금 금격차	○	-	사무직·생산직 임금격차
		노동비용 중 복리후생비율	○	○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비율	○	-	
		임금분포의 평등성	-	○	지니계수
		최저임금수준	-	○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주당근로시간	○	○	
		초과 근로시간비율	○	○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	○	
		노사관계	-	○	(분규참가자수×지속일수)의 자연 로그

라) 사생활

이제 마지막 대지표인 ‘사생활’에 대해 살펴보자. 이 대지표는 다시 ‘가계수지’와 ‘주거통근’, ‘여가’, ‘보건환경’이라는 네 가지 중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지표 ‘가계수지’는 다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근로자가구당 가처분소득, 근로자가구 흑자율, 근로자가구 항목별 지출비중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본 연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근로자가구 항목별 지출 비중을 소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들은 근로자 가구당 가처분소득이나 근로자 가구 흑자율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지표 ‘주거통근’에서는 인터넷 가입자수를 제외하기로 한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인터넷 가입자수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변수의 변화가 근로자의 주거통근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대신 통근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가 있다면 이를 추가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중지표 주거통근은 주택보급율 자료만 사용하여 주거를 반영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여가’에서 근로자 연간 평균 휴일 수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고자 한다. 이는 월평균 근

로일수를 연평균근로일수로 환산한 다음 365일에서 이를 제하여 구한 뒤 지수화하였다.

‘보건환경’에서는 대기 수질 및 해상 오염도 외에 인구 10만명 당 주요 범죄 발생 건수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을 지수화하여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였다.

<표 4-12> 대지표 사생활의 구성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2002	2003	비고
사생활	가계수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	소득-비소비지출 흑자=소득-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자가구당 가처분소득	○	○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	○	
		근로자가구 항목별 지출비중	○	-	
	주거통근	인터넷가입자수	○	-	
		주택보급률	○	○	
	여가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중	○	○	'365-연평균근로일수'로 계산
		근로자 연간 평균 휴일수	-	○	
	보건환경	대기·수질 및 해상 오염도	○	○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발생건수	-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	
		교통사고 사망자수	-	○	

이상에서 새로 만든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표 4-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에 추가된 소지표들은 부록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과 산식 및 출처를 시계열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표 4-13> 새로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세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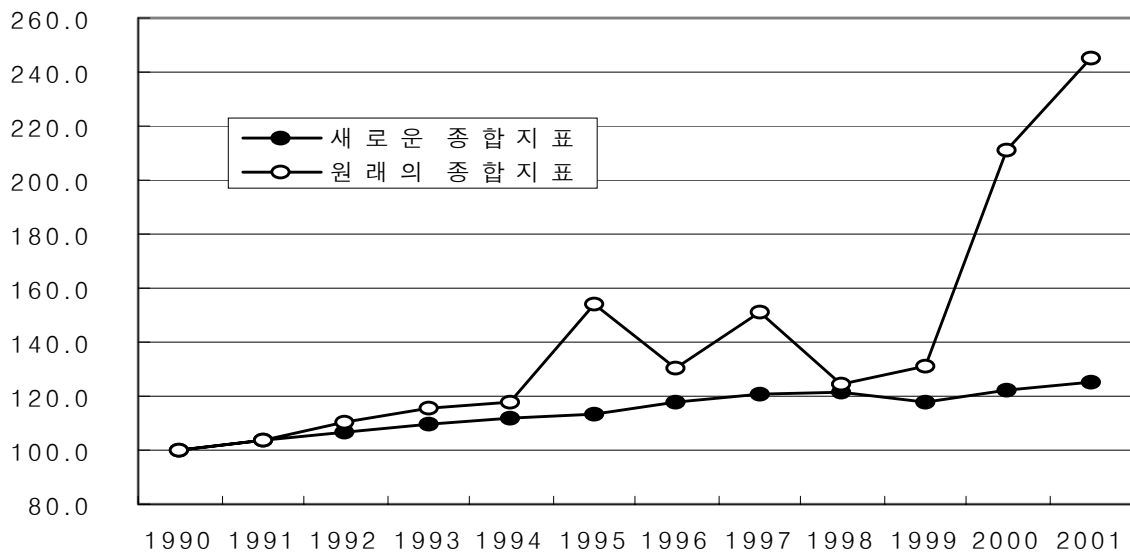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비고
고용사정	교육훈련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비중 근로자 평균 수속연수	고등학교졸업이상자/임금근로자
	취업기회	장기실업자 비율(6개월이상) 취업비율	1998-2001: 1년이상 실업자 비율 임금근로자수/생산가능인구
	고용안정	임시 일용 근로자 비율 평균 경력연수	임시+일용근로자수/근로자수
공공근로 복지 및 산업안전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 복지서비스	산재보험적용 근로자비율 의료보험 가입자비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비율 고용보험 가입자비율 실업급여 수혜자비율 정부의 근로복지예산비중	직장의료보험가입자비율
	산업안전	산재도수율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 직업병 발병 근로자비율 재해강도율 사망만인율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및 부가급여	실질임금 노동비용 중 복리후생비율 임금분포의 평등성 최저임금수준	실질임금지수(기준년 대비) 지니계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주당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비율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노사관계	 (분규참가자수×지속일수)의 자연로그
사생활	가계수지	근로자가구당 가처분소득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소득-비소비지출 흑자=소득-가계지출
	주거통근	주택보급률	
	여가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중 근로자 연간 평균 휴일수	 ‘365-연평균근로일수’로 계산
	보건환경	대기·수질 및 해상 오염도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발생건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교통사고 사망자수	

다.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따른 근로복지지표의 산정

1) 종합지표

이제 소지표들의 구성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지표를 작성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 4-5]는 원래의 근로복지 종합지표와 변수들을 추가하고 제외시킨 새로운 지표를 함께 그린 것이다. 단 새로운 지표는 소지표들에 가중치를 주지 않고 산술평균하여 종합지표를 도출하고 중지표들을 기하평균하여 대지표들을 구한 다음 다시 대지표들을 기하평균하여 얻은 것이다. 소지표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기존 지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중치들의 합이 1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중치로 사용할 만한 대안을 찾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지표와 종합지표를 구할 때 기하평균을 사용한 것은 기존의 지표에서 나타났던 지표의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림 4-5] 원래의 종합지표와 새로운 종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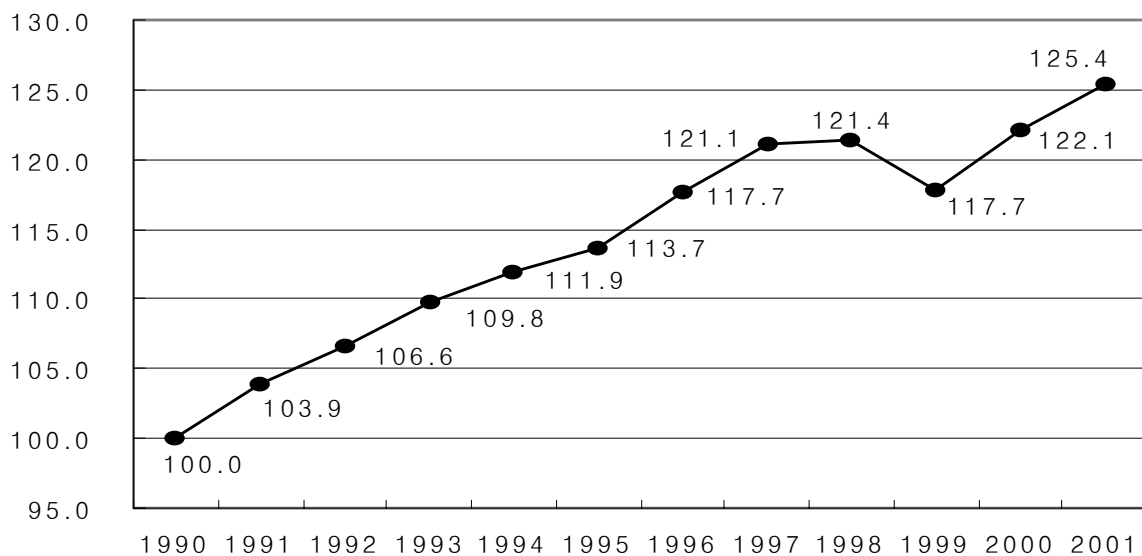


그림에서 보듯이 원래의 지표에 비해 새로운 종합지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원래의 지표에서 나타났던 2000년과 2001년의 급등 및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급등락의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지표는 원래의 지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해 새로운 종합지표만을 그린 그림을 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운 지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복지가 199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려준다. 2001년의 종합지표는 125.4를 보여 1990년에 비해 25.4%의 근로복지수준 향상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급속히 파급되어 나가던 1998년에도 근로자의 복지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1999년으로서 전체 기간에 걸쳐 유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근로자의 복지가 하락한 것이 1999년이며 19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근로복지 수준의 실직적인 하락이 없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98년의 당시 근로자들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이들이 자신의 근로복지 수준이 미약하나마 상승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림 4-6] 새로운 근로복지 종합지표



2) 대지표 ‘고용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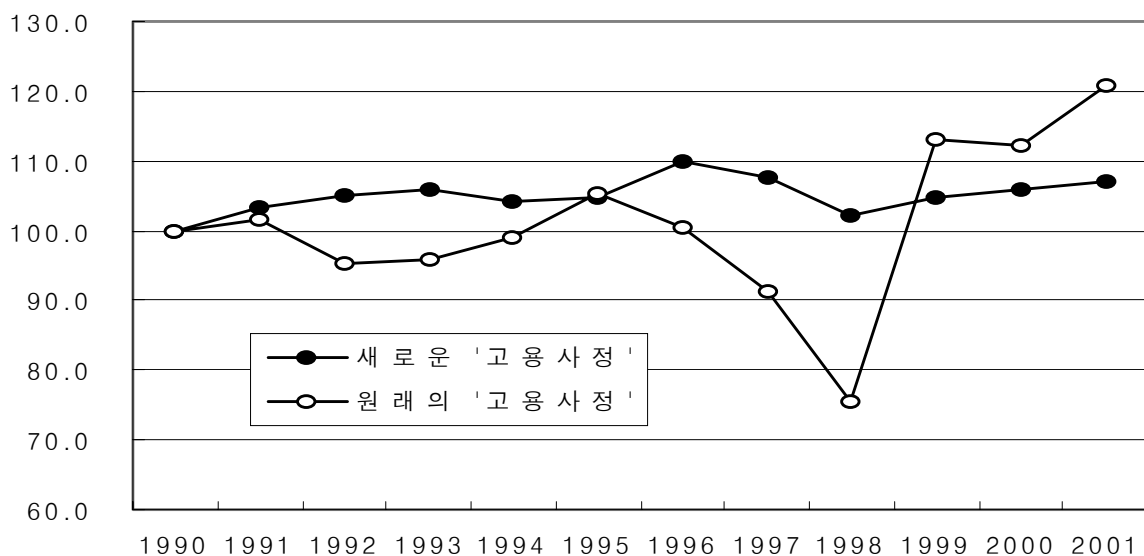
이제 종합지표를 구성하는 각 대지표들을 살펴보자. 먼저 대지표 ‘고용사정’을 보면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의 지표에 비해 새로운 지표가 매우 안정된 모습을 알 수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환위기가 급속히 파급되던 1998년의 고용사정이 원래의 지표에서는 80.0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지표에서는

지표의 하락 정도가 원래 지표에서처럼 급격하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발생 전인 1996년의 고용사정도 새로운 지표에서와 달리 원래의 지표에서는 악화되고 있으며 1997년의 지표 하락 정도는 10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크다. 게다가 1999년의 고용사정은 원래 지표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무려 37.4 포인트나 상승하여 지표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반면 새로운 지표에서 1999년의 고용사정은 전년도에 비해 미약한 정도로만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지표 고용사정에서 새로운 지표와 원래 지표의 움직임이 상반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두 지표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1990년대 전반에서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며 실제 상관계수도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표 작성에 포함되는 변수들과 이들을 지수화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큰 차이와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여러 변수들을 종합하여 중지표를 만들고 또 이들을 종합하여 대지표를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하며 의미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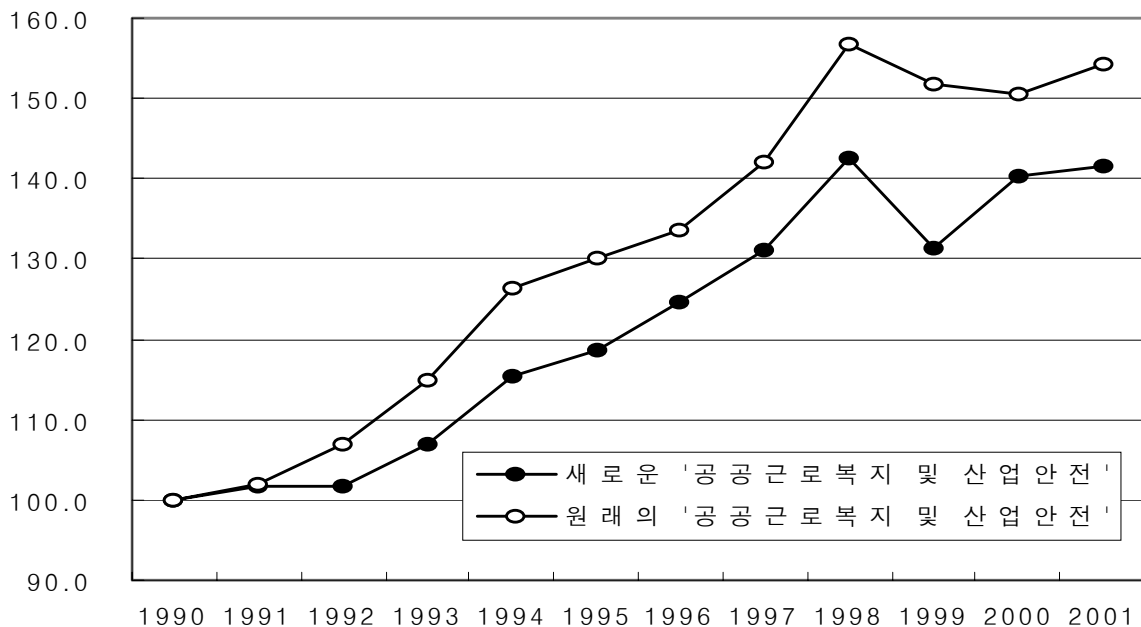
[그림 4-7] 대지표 고용사정의 비교



3) 대지표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공공근로복지와 산업안전을 나타내는 두 대지표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다만 새로운 지표가 원래 지표에 비해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1998년의 지표 상승 정도도 새 지표에서 더 적다. 반면 1999년의 지표 하락 정도와 2000년의 지표 상승정도는 새로운 지표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예외를 보인다. 이는 적어도 이 대지표에서는 원래의 지표가 새로운 지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8] 대지표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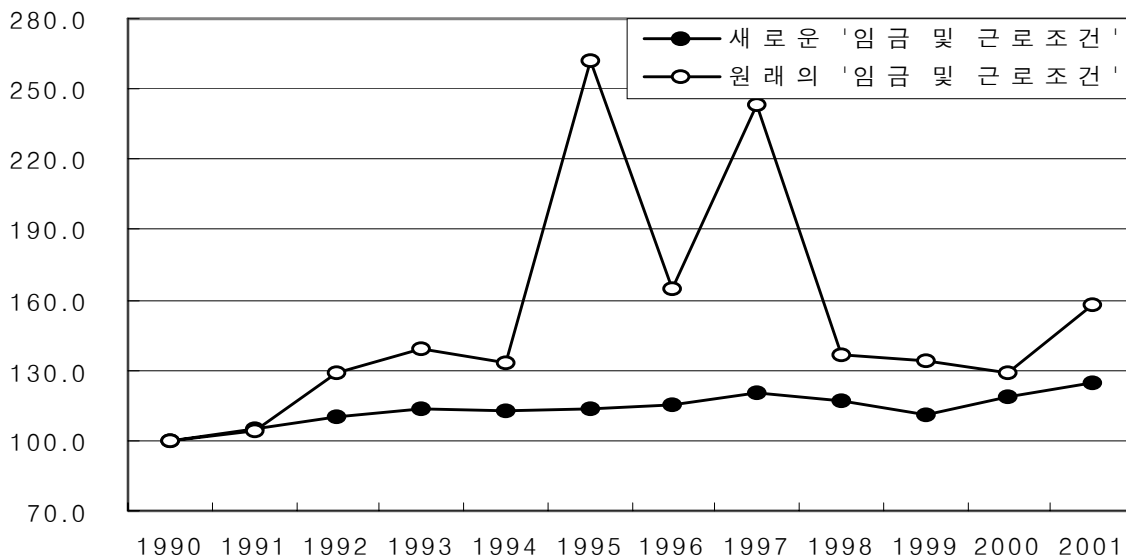


4)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

[그림 4-9]에서 보듯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새로운 대지표는 원래의 지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원래 지표에서 존재하던 1995-97년의 급격한 움직임이 새 지표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중지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그대로 지수화하여 사용하지 않고 ‘노사분규 참가자’에 ‘분규 지속일수’를 곱한 값의 자연로그를 지수화하여 사용함에 따른 결과이다.

원래의 지표에 비해 새로운 지표가 보여주는 안정적인 모습은 지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새로운 지표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총괄한 근로복지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림 4-9]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비교



5) 대지표 '사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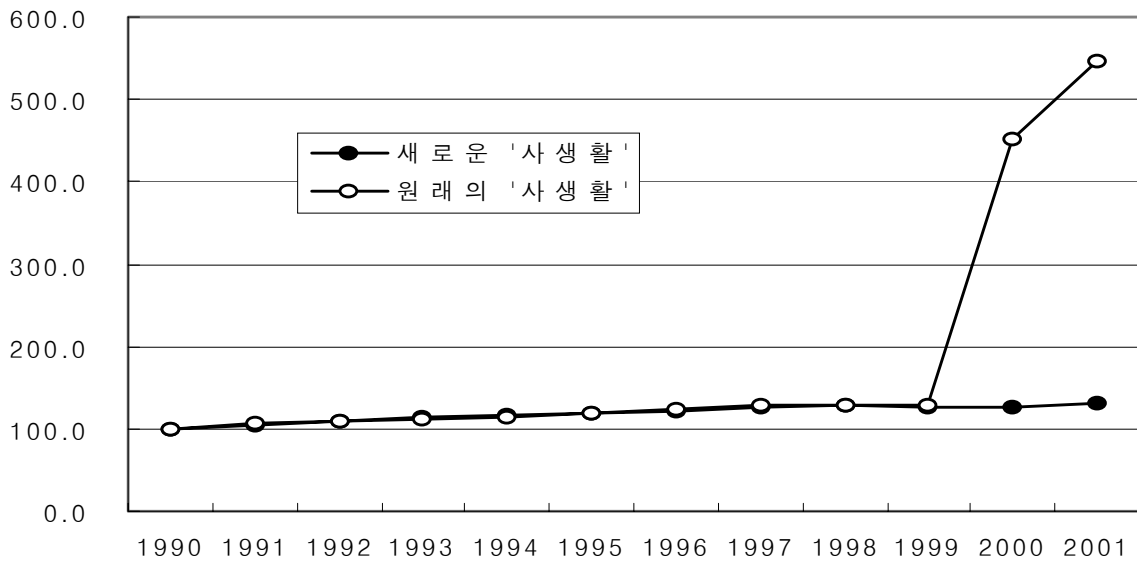
사생활을 나타내는 대지표의 움직임은 원래 지표와 새로운 지표에서 크게 다르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원래의 대지표 '사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인 인터넷 이용자수의 급증이 대지표 사생활 및 종합지표의 급증을 가져온 요인이다. 따라서 이 변수를 제외함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어 특히 2000년과 2001년에서 새로운 지표는 원래 지표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 두 연도를 제외한 기간에서는 새로운 변수 네 개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표와 원래 지표의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림 4-10]에서는 원래 지표의 최대값이 워낙 커서 지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시기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기 어렵다. [그림 4-11]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생활' 지표를 그림으로 그려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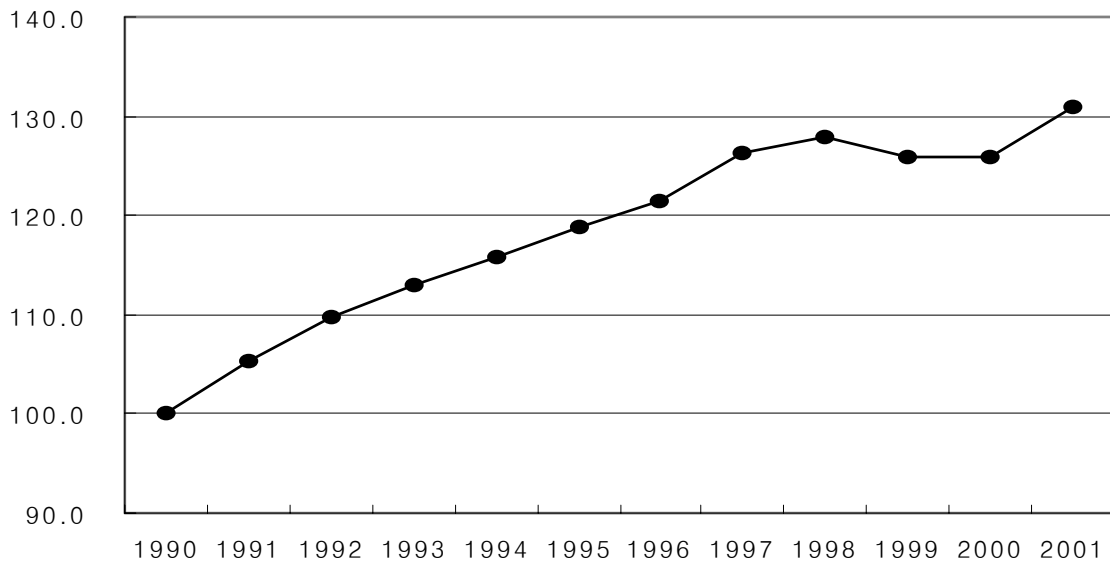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11]에서 보듯이 '사생활' 지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001년의 지표 값은 131.0으로서 1990년의 100에 비해 31% 상승하였다. 그리고 199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나 1999년에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대지표 '사생활'을 구성하는 '가계수지'의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

[그림 4-10] 대지표 '사생활'의 비교



[그림 4-11] 새로운 대지표 '사생활'



라. 소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지표를 분해하여 문제의 근본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치 못한 변수들을 소지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은 소지표에 추가시키는 한편 이들을 종합하는 과정에도 변화를 주어 새로운 근로복지지표를 도출하였다.

새로운 지표는 기존의 지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원래의 지표가 급등하고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데 비해 새로운 지표의 시계열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원래의 지표에 비해 신뢰할만한 움직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새로운 근로복지지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지표는 본 연구가 종합지표의 분해를 통해 문제의 근본을 분명히 한 것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성격이 상이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함에 따른 한계이다. 근로복지지표는 많은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변수들은 그 성격들이 서로 다르고 생산과정이 상이하여 함께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하면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어떤 변수들은 높은 대표성을 갖춘 반면 또 다른 변수들은 제한적인 대표성만을 가지고 있다. 어떤 변수들은 행정계통을 통해 모아진 자료인 반면 또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 근거 하에 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어떤 변수들은 시장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데에 비해 다른 변수들은 시장의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상이한 변수들을 종합함에 따른 문제는 결코 적지 않으며 종합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불분명할 수 있다.

둘째, 서로 다른 변수들을 지수화하고 또 종합하는 과정이 달라짐에 따라 산출되는 종합지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원래의 근로복지지표와 본 연구에서 마련한 새로운 지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살펴 본 바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변수 값의 하락이 근로복지수준의 향상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 변수의 역수를 취해 지수화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를 구해 지수화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지표로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이론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본 연구가 찾아낸 것만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가중치의 합이 1이 되지 않고

1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지표의 가감에 따라 시계열의 연속성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시점끼리 비교 평가하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종합지표나 대지표 및 중지표들을 작성하지 않으면 된다. 근로복지를 반영하는 변수(소지표)들을 모아 그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들을 종합하는 과정을 없애면 위에 제시한 문제점의 대부분은 해결된다. 이 경우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그 움직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근로복지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덜어 줄 수 있다.

2.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가. 개관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사회지표와 동일하게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만큼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간(국가간)·부문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므로 현재의 복지수준이 어떠한 상태로 진전되었는지 향후 어떠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복지를 수요하는 주체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근로복지에 대하여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의 근로복지를 원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만족의 정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균교육년수의 증가가 취업기회의 증가나 고용의 안정성과 상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가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통계 자료에 기초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취업기회나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물어보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여기에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산정의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근로복지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평가라는 의미에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객

관적 근로복지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산정을 위한 가중치 선정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의의는 부각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는 「근로자생활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선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근로복지지표도 개발 당시 이 체계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가 1987년 근로복지지표 개발 당시에 이미 간단한 형태로 개발이 되어, 당시 부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조사는 1988년에 실시되었다. 다만 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후 유길상 외(1996)에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필요성이 강조된 이래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발표되고 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이 2001년도에 조사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항목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세부항목(2002년도)

구분	설문내용
고용사정	직업
	업종
	종업원 규모
	현직장 근무년수
	직장내 고용형태(근로계약 유무,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방법
	근무시간 형태
	직장바꾼 횟수
	직장바꾼 이유
	해고에 대한 6개월전 비교
	해고 가능성
산업안전	산재위험정도
	산재예방노력
	1년간 재해경험 유무
	재해종류
	재해치료방법
	작업환경조건
	재해발생원인
	회사 건강진단 유무
	회사 건강진단 만족도
	건강진단기관 선정방법
	정기안전보건교육 만족도

자료 : 근로복지공단(2002).

<표 4-14>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세부항목(2002년도) - 계속

구분	설문내용
임금	월평균소득
	임금형태
	임금만족도
	임금수준
	임금결정시 고려사항
	임금계산방식
	임금인상요인
	임금결정
	연장근무 통한 높은 급여
근로조건	법정복지제도 유무(4대 사회보험)
	근로조건향상 주체
	일주일단위 근무형태
	근무시간
	주당 근로시간
	근무시간 만족도(적정 근무시간)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반영
	경영참여
	해결해야 될 노동 및 산업문제
	계층간의 격차
	격차가 심한 부분
	직업 만족도(만족 이유)
	좋은 직업요건
	능력 발휘 여부
	근무조건 만족도(불만스런 규정)
	직장분위기
	직장동료와의 관계
	상사평가
	상사에 대한 불만, 실망 이유
	상사조건
	대화정도
	대화내용(개인신상, 회사, 정치·사회, 여가 및 스포츠)
	대화대상
정보화	PC 소유
	PC 사용능력
	인터넷 이용정도
일반적 사항	주거형태(내집 마련기간)
	가족구성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여가만족도

자료 : 근로복지공단(2002).

나.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기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기존 체계의 문제점

기존의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나누어본다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과 근로자가 복지로서 인식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표 4-14>에서 보면, 전자의 경우, 현 직장 근무년수, 직장내 고용형태, 근로계약방법, 직장바깥 횡수, 산재위험정도, 1년간 재해경험유무, 법정복지제도 유무, 최종학력 등은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평균근속년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노동이동률, 산재발생률, 사회보험 적용률과 각각 대응하므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산정에서 기존의 통계자료로 파악 가능한 항목들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직업, 업종, 기업체 규모, 근무시간 형태, 최종학력은 근로자의 주관적 복지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항목들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화의 중요성이 김교성(2000)에서 강조되는 것과 같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모두 정보화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화 자체가 근로자의 복지수준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특히 최근 PC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이 포화상태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행된 만큼 지표로서의 의미는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표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 개선 방향

본 연구는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지니는 한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나타내지 못하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를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근간이 되도록 한다. 둘째,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많은 세부항목으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를 구성하기 보다 최소한 필요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인다. 셋째, 가능한 한 일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세부항목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내용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함으로써 시기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새로운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1) 고용사정

가) 교육훈련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그리고 근로자 평균 수학년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 수준의 양적·질적 변화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직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본인이 취득한 학교교육수준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교육기회의 충족도), 취득한 교육수준이 수료후 일자리를 얻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교육수준의 취업 기여도)를 세부항목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공교육 이후 직장연수나 교양 강좌 등 평생학습도 근로자의 향후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평생교육 기회)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나) 취업기회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취업비율과 장기실업자 비율을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직장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먼저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쉬운 편이었는지(취업의 용이성), 구직활동시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지(구직정보의 충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일자리가 근로자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기회가 있는지(이직 기회)에 대한 세부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다) 고용안정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임시·일용근로자 비율과 평균 경력년수를 세부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의 보완을 위하여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는지(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현재의 일자리가 안정적인지(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2)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가)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경우,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그리고 정부의 근로복지예산비중을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양적인 지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이들 4대 사회보험이 각각 근로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사회보험의 충족도)를 세부항목에 포함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산업안전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산재도수율, 재해강도율, 사망만인율,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 그리고 직업병 발병 근로자 비율을 세부항목으로서 포함하여 양적·질적 변화를 동시에 파악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만큼 작업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산재위험 정도), 회사측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회사의 산재예방노력) 그리고 작업환경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작업환경조건)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3)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금 및 부가급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실질임금, 노동비용 중 복리후생비비율, 임금분포의 평등성 그리고 최저임금수준을 세부항목으로 포함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임금 수준과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이다. 세부항목으로서 자신의 능력(교육수준, 기술, 경력 등)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임금 만족도)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복지수준과 내용에 만족하는지(근로복지수준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주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비율,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와 노사관계를 세부항목으로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먼저 근로시간에 대하여 만족하는지(근로시간 만족도), 소속된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근로조건 만족도), 직장분위기는 어떠한지(직장분위기), 직장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잘하고 있는지(고충처리 만족도) 그리고 최근 1년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었다고 보는지(노사관계의 안정성 인식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4) 사생활

가) 가계수지

가계수지에 대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근로자가구당 가처분소득과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을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어 가계수지에 대한 파악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 소득 등)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지(가구소득 만족도)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나) 주거통근

주거통근에서는 주택보급률을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보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주거 만족도), 이와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생활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에서는 통근에 대한 통계자료가 불완전하여 통근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만큼 보완적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통근소요시간)과 교육·주거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에 만족하는지(통근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이때 통근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좌우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근로자 자신이 교육·주거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다.

다) 여가

여가에 대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가계소비지출중 교양오락비 비중과 근로자 연간 평균 휴일수로서 여가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여가활용도)와 여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여가 필요성 인식)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라) 보건환경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는 대기·수질 및 소음 오염도,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발생건수,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로서 보건환경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건강 인식도),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의료서비스 만족도),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대기·수질 오염,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공해, 녹지 등의 주위환경훼손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환경 만족도), 치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치안 만족도)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교통안전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4-15> 새로운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세부항목

대지표	중지표	세부항목
고용사정	교육(훈련)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수준의 취업 기여도
		평생교육 기회
	취업(기회)	취업의 용이성
		구직정보의 충족도
		이직 기회
	고용(안정)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	사회보험의 충족도
	산업안전	산재위험정도
		회사의 산재예방노력
		작업환경조건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및 부가급여	임금 만족도
		근로복지수준 만족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근로시간 만족도
		근로조건 만족도
		직장분위기
		고충처리 만족도
		노사관계의 안정성 인식도
사생활	가계수지	가구소득 만족도
	주거 통근	주거 만족도
		생활지역에 대한 만족도
		통근소요시간
		통근시간에 대한 만족도
	여가	여가 활용도
		여가 필요성 인식
	보건환경	건강 인식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환경 만족도
		치안 만족도
		교통안전 만족도

V.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의한 근로복지지표 산정 결과

제Ⅳ장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로서 객관적 지표의 경우, 이전의 통합 지표 산정방식 대신 세부관심사항에 포함된 소지표들을 각각 기존의 통계자료로부터 수집, 작성하며, 주관적 지표의 경우, 객관적 지표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따라 이 장에서는 근로복지와 관련되는 관심사항별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어떠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는 만큼 간략히 근로자의 표본 추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모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1,011명을 추출, 조사하였다. 원칙으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부터 사업체 특성별(지역, 업종, 규모)로 비례할당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장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한 결과의 편의(bias)도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산정을 위한 조사 설문 내용과 조사 표본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부관심사항별로 먼저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산정 결과를 설명하고, 이어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조사·산정 결과를 추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고용사정의 교육훈련이라는 세부관심사항에서 먼저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에 해당하는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노동비용중 교육훈련비 비중 그리고 근로자 평균 수확년수를 설명하고, 이와 함께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에 속하는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 수준의 취업 기여도 그리고 평생교육기회를 아울러 설명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각 세부관심사항이 보이는 시계열적인 변화와 최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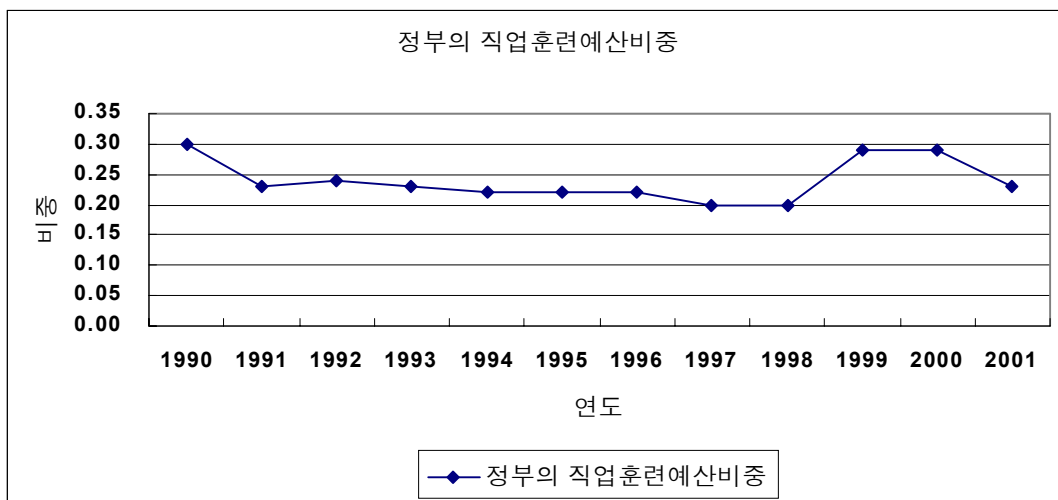
1. 고용사정

가. 교육훈련

1)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을 보면, 관찰을 시작한 1990년이 0.30%로 가장 높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0.25% 미만을 나타내며 특히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과 1998년에는 0.20%로 저점을 기록하였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예산비중이 0.29%로 다시 높아지지만, 2001년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1990년, 1999년, 2000년 3개년도를 제외한다면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은 언제나 0.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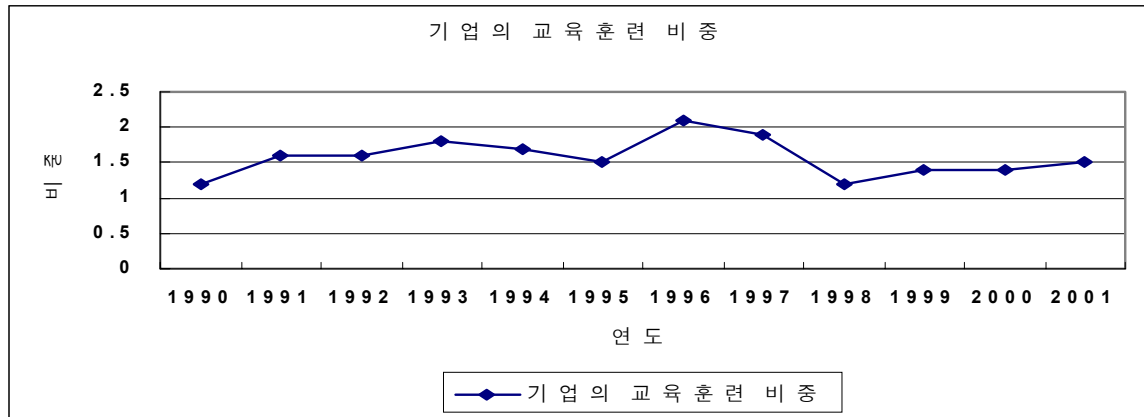
[그림 5-1]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



2)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기업의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의 비중은 199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96년(2.1%)과 1997년(1.9%)년에 높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과 1999년(1.4%), 2000년(1.4%)에는 교육훈련비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2001년(1.5%) 까지도 외환위기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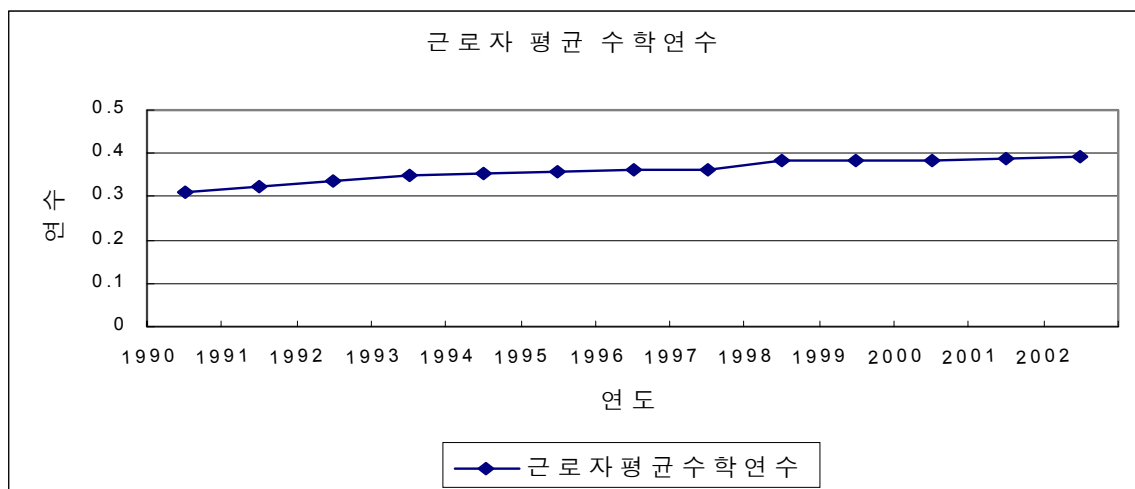
[그림 5-2] 기업의 교육훈련 비중



3) 근로자 평균 수학연수

근로자의 평균 수학연수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비율을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1990년 30.9%이던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의 경우, 39.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학력 상승은 양질의 노동인력이 더 많이 확보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질의 노동인력에게 만족할만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3] 근로자 평균수학 연수



4) 교육기회의 충족도

근로자가 스스로 취득한 학교교육수준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40.8%는 만족하고 있는 반면(그렇다 38.6%; 매우 그렇다 2.2%), 28.0%는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5%). 이 결과로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취득한 학교교육수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28.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학력이 여전히 사회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표 5-1> 교육기회의 충족도

	빈도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다	45	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8	23.5
보통	316	31.3
그렇다	390	38.6
매우 그렇다	22	2.2
합계	1,011	100.0

5) 교육수준의 취업 기여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교육수준이 수료후 일자리를 얻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5.5%에 이르는 반면(그렇다 30.6%; 매우 그렇다 4.9%),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 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1%). 이 결과로 볼 때, 교육수준이 근로자의 취업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보통”)이 전체의 43.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5-2> 교육수준의 취업기여도

	빈도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다	55	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3	15.1
보통	444	43.9
그렇다	309	30.6
매우 그렇다	50	4.9
합계	1,011	100.0

6) 평생교육 기회

공교육 이후 직장연수나 교양 강좌 등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자(유효 응답자) 전체의 54.0%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전혀 그렇지 않다 1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8.6%), 15.3%만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그렇다 14.7%; 매우 그렇다 0.6%). 그리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어느 쪽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의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평생학습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는 결과에서 볼 때 아직 평생학습기회가 근로자에게 충분하게 주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3> 평생학습기회

	빈도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다	156	1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90	38.6
보통	310	30.7
그렇다	149	14.7
매우 그렇다	6	0.6
합계	1,011	100.0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기반경제와 유연노동시장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주요 특성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과 숙련이 개인의 삶의 질, 기업의 생산성,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쟁의 심화는 불가피하게 유연 노동시장을 초래하게 되는 바, 이때 근로자가 변화하는 노동시장환경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할 수 있

도록 평생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 근로자의 평균 수학년수가 증가하여 고학력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교육기회의 충족도가 낮고 평생교육 기회가 주어진 경우가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전체 예산 중 직업훈련 관련 예산의 비중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기업의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의 비중은 기업의 경기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긴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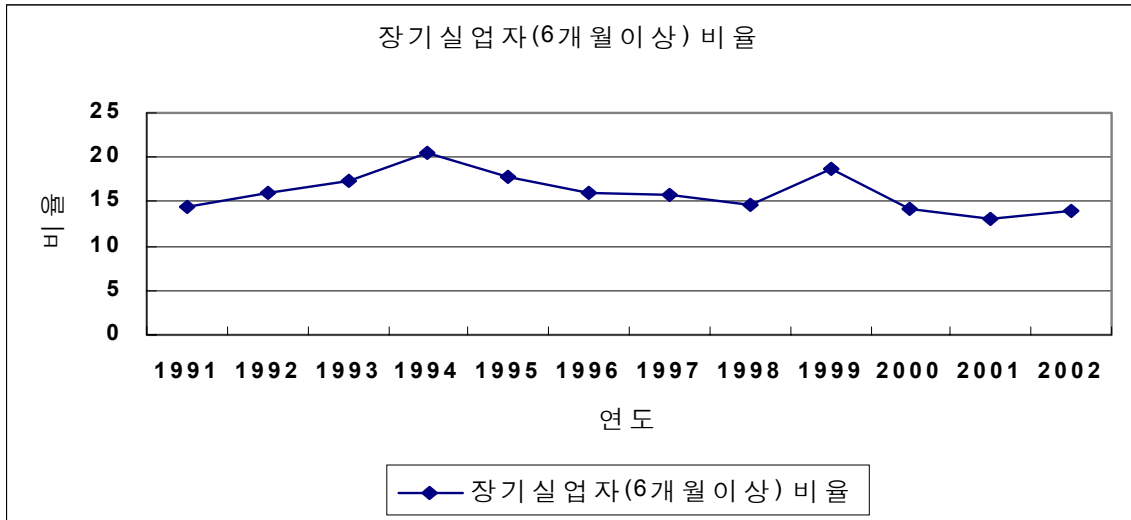
우선, 기업의 교육훈련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공급되는 푸시(push)형의 교육훈련이 동태적이고 다양한 산업수요에 따라 작업현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풀(pull)형의 교육훈련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지원제도를 개발하여, 근로생애에 걸친 계속학습과 평생학습기회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수강장려금의 확대 및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휴가 도입, 근로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자 자신의 교육훈련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훈련의 확대 등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취업기회

1) 장기실업자 비율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을 보면, 1991년 14.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20.6%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 18.6%로 다시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자 비율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1년 13%에서 2002년에는 14%로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어서 보다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체 실업자 중 적어도 13% 이상은 언제나 장기실업자로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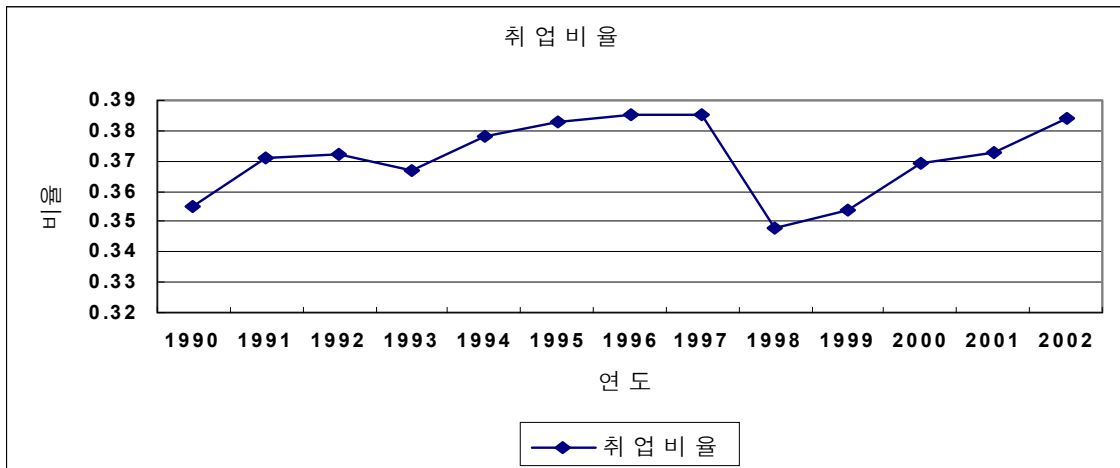
[그림 5-4] 장기실업자 비율



2) 취업비율

취업비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임금근로자 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취업비율을 보면 경기에 따른 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외환위기 직전 0.385까지 올라갔던 취업비율은 외환위기시 0.348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까지도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5] 취업비율



3) 취업의 용이성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쉬운 편이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자 전체의 29.4%가 취업하기 어려웠던 반면(전혀 그렇지 않다 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4%), 24.1%는 취업하기 쉬운 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 22.1%; 매우 그렇다 2.0%). 물론 어느 쪽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전체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의 조사 결과가 없는 만큼 과거와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의 상황을 위의 수치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5-4> 취업의 용이성

	빈도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다	40	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7	25.4
보통	471	46.6
그렇다	223	22.1
매우 그렇다	20	2.0
합계	1,011	100.0

4) 구직정보의 충족도

구직활동시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자 전체의 36.0%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전혀 그렇지 않다 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1%), 19.2%는 충분히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 18.5%; 매우 그렇다 0.7%). 이 결과에서 볼 때, 일자리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5> 구직정보의 충족도

	빈도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다	50	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4	31.1
보통	453	44.8
그렇다	187	18.5
매우 그렇다	7	0.7
합계	1,011	100.0

5) 이직 기회

앞으로 현재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자 전체의 28.2%는 기회가 없는 편인 반면(전혀 그렇지 않다 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3%), 이직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4.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37.8%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어느 쪽도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직 기회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이직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예상밖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이 결과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6> 이직 기회

	빈도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다	50	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	23.3
보통	382	37.8
그렇다	298	29.5
매우 그렇다	45	4.5
합계	1,011	100.0

취업기회와 관련한 지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기회와 관련된 지표를 보면 취업비율은 외환위기 때 극심하게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실업자의 비율 또한 적지 않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1/3 이상이 구직정보가 충분치 못하고 취업하기 또한 어려웠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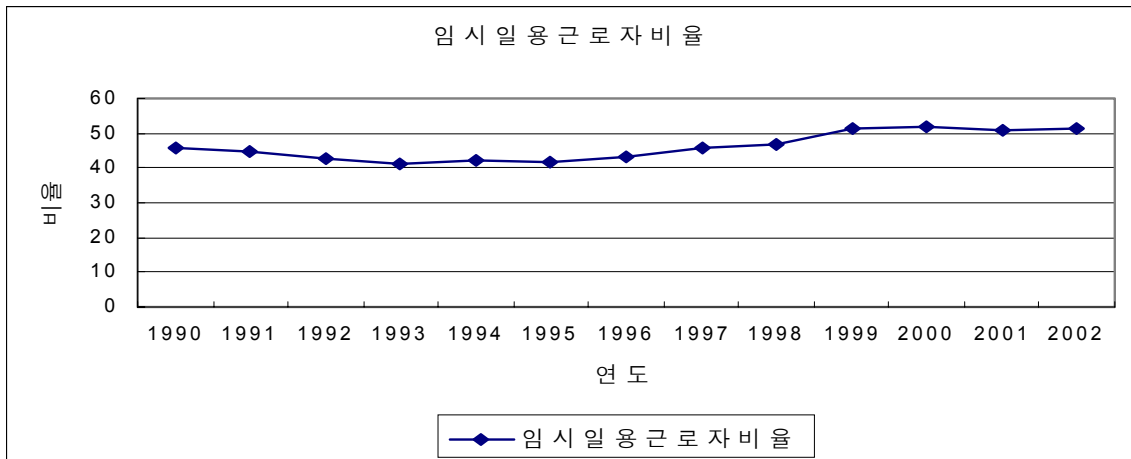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지임은 물론,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취업기회의 증대를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알선체계를 확립하고,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직업을 통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사회적으로 부양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일 것이다.

다. 고용안정

1) 임시일용근로자 비율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1990년대 들어 언제나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1990년 45.8%였던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이후 다소 감소하여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1~42%대에 머물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는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현재에도 51.6%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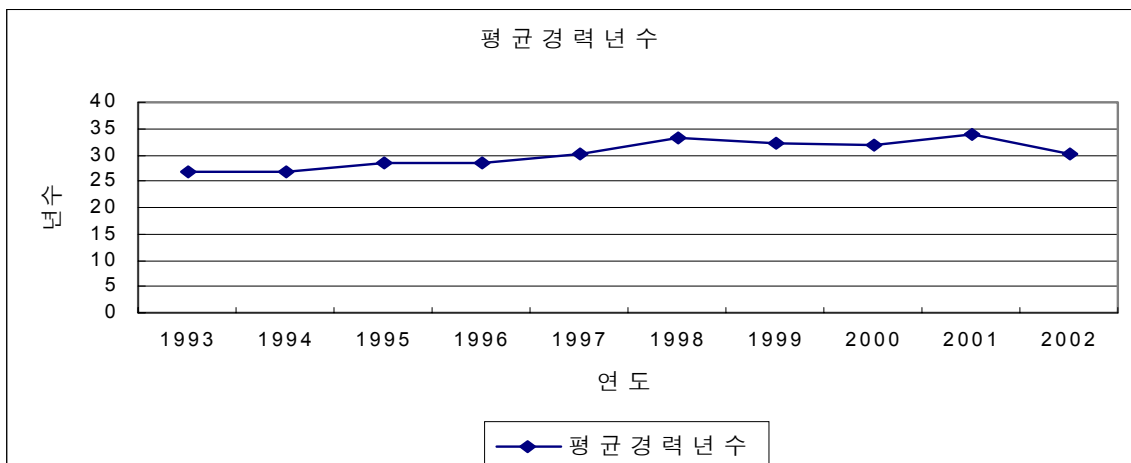
[그림 5-6] 임시일용근로자비율



2) 평균 경력년수

평균경력년수는 전체 근로자 중 10년 이상 경력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평균 경력년수를 보면 관찰시점인 1993년 26.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33.1로 정점에 달하였다. 아직은 좀 더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이후 평균 경력년수가 다소 감소한 것은 중고령 근로자의 퇴출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앞으로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7] 평균경력년수



3) 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의 17.8%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전혀 그렇지 않다 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9%),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35.1%(그렇다 32.6%; 매우 그렇다 2.5%)로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표 5-7> 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빈도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다	29	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1	14.9
보통	476	47.1
그렇다	330	32.6
매우 그렇다	25	2.5
합계	1,011	100.0

4)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현재의 일자리가 안정적인지에 대해서는 28.6%의 근로자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전혀 그렇지 않다 4.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4%), 29.6%는 안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그렇다 28.0%; 매우 그렇다 1.6%). 이 수치는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8> 현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빈도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다	42	4.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7	24.4
보통	423	41.8
그렇다	283	28.0
매우 그렇다	16	1.6
합계	1,011	100.0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이며 증가추세이고, 평균경력년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일자리가 안정적이며 이에 만족한다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근로자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자의 평균 경력년수가 증가 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그간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또 현재는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령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고용정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7%인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2019년이 되면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고령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부양비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부담을 늘이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고령 근로자가 연령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노사합의를 유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교(bridge) 고용, 사회적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자원봉사 등 중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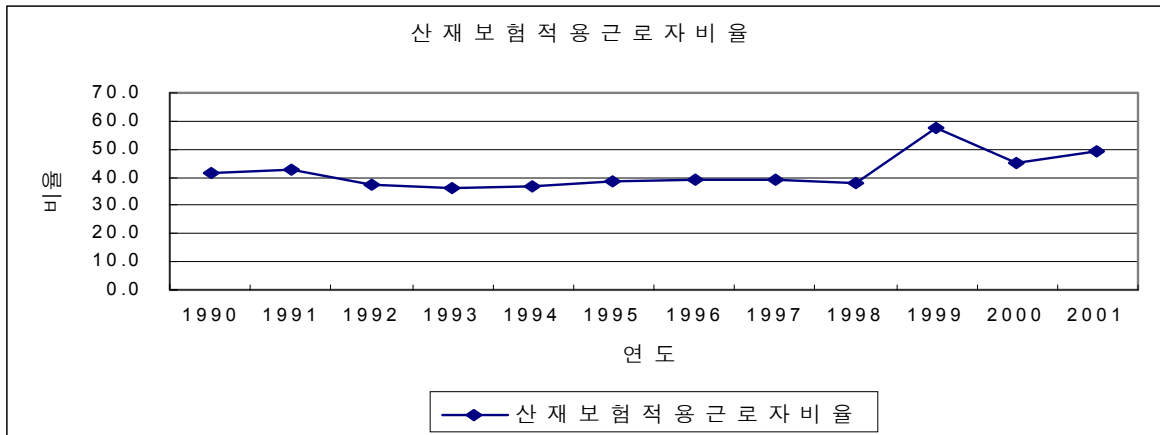
2.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가.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

1)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비율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1999년의 예외적인 통계를 제외하면, 2000년 산재보험의 적용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되기까지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비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적용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적용근로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임금근로자에 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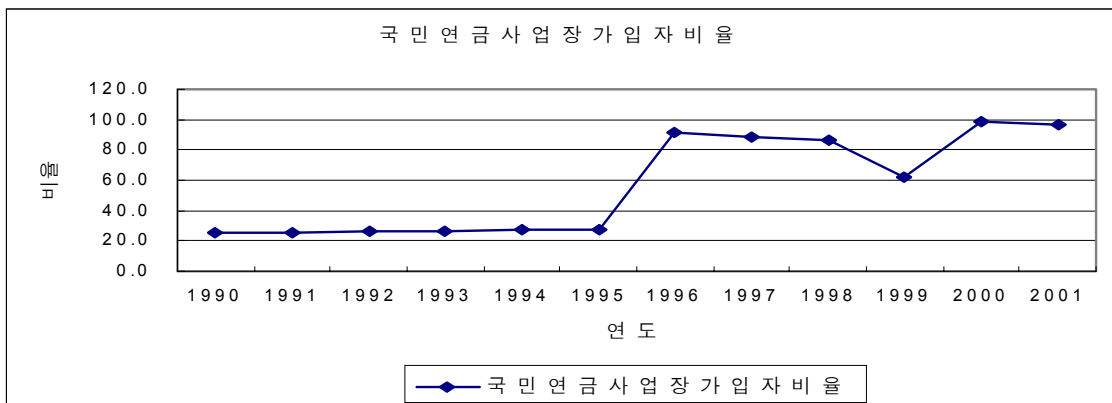
[그림 5-8] 산재보험적용 근로자비율



2)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비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비율을 보면, 1995년까지 20%대로 나타났으나 1996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80%에서 90% 사이를 등락하고 있다. 가입자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제도개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1999년 가입률이 20% 이상 하락했다가 다시 2000년에는 30%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자료 자체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기도 한다. 조금 더 신중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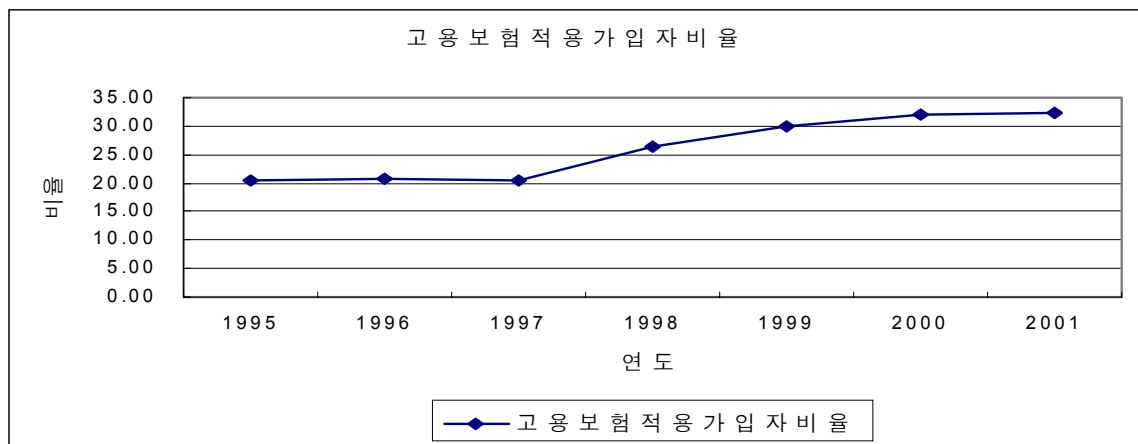
[그림 5-9]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비율



3)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을 보면 제도시행 초년도인 1995년 20.5%를 기록하였고 이 비율은 1997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급속히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가입자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01년에는 32.3%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비록 가입자 비율의 증가는 지속적이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근로자 중 32%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입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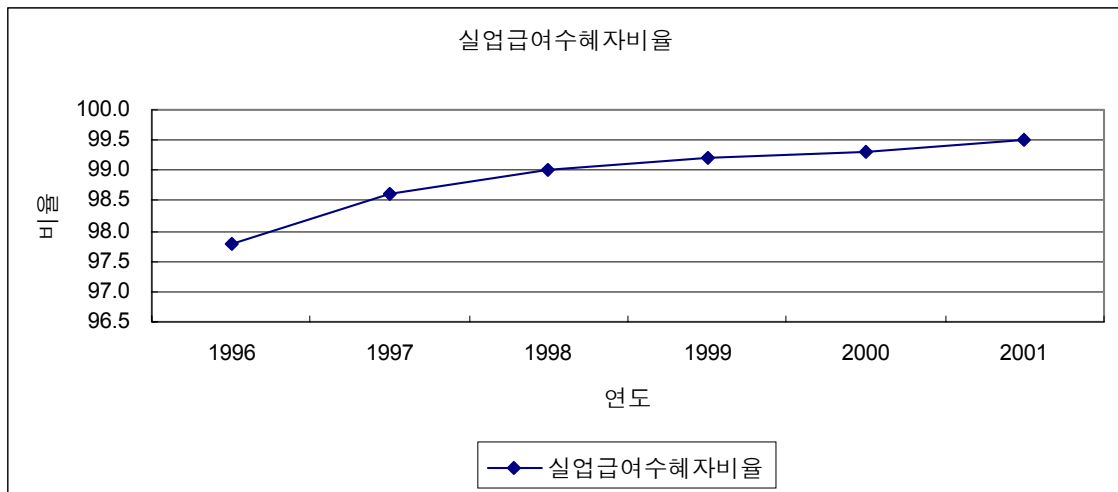
[그림 5-10] 고용보험적용 가입자비율



4)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을 보면 1996년 97.8%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99.5%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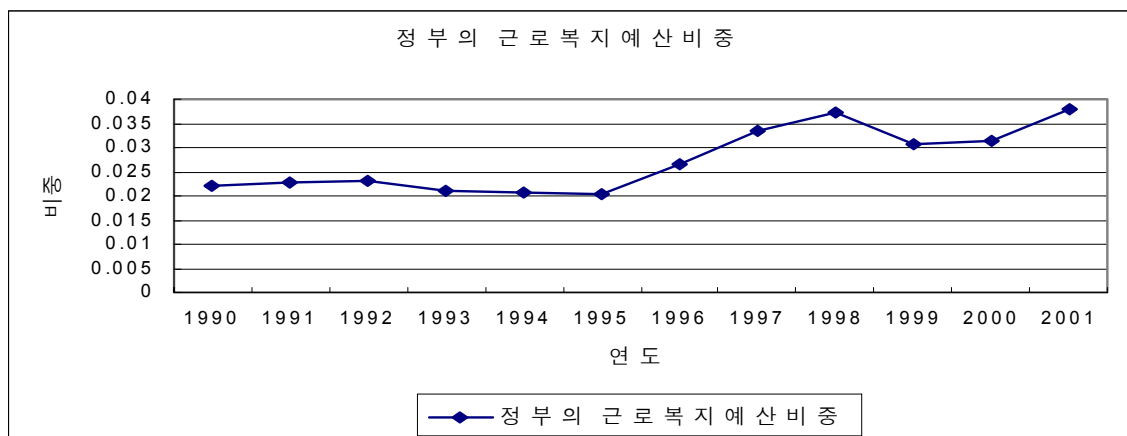
[그림 5-11] 실업급여 수혜자비율



5) 정부의 근로복지 예산 비중

정부의 근로복지 예산비중을 보면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0.02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었으나, 이후 1998년까지 증가하였고 1999년도부터는 다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12년을 개괄하여 보면 정부의 근로복지 예산은 1990년 0.22에서 2001년 0.37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2] 정부의 근로복지예산비중



6) 사회보험의 충족도

4대 사회보험이 각각 근로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하다고 보는 정도가 높은 순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다. 특히 건강보험은 불만족인 경우가 16.5%로 낮은 반면, 국민연금은 불만족인 경우가 50.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9> 고용보험의 충족도

	빈도수	비중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0	7.9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7	18.5
보통이다	390	38.6
도움이 되는 편이다	283	28.0
매우 도움이 된다	71	7.0
합계	1,011	100.0

<표 5-10> 산재보험의 충족도

	빈도수	비중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0	6.9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9	17.7
보통이다	388	38.4
도움이 되는 편이다	273	27.0
매우 도움이 된다	101	10.0
합계	1,011	100.0

<표 5-11> 건강보험의 충족도

	빈도수	비중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	4.1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5	12.4
보통이다	325	32.1
도움이 되는 편이다	379	37.5
매우 도움이 된다	141	13.9
합계	1,011	100.0

<표 5-12> 국민연금의 충족도

	빈도수	비중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3	24.0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65	26.2
보통이다	312	30.9
도움이 되는 편이다	145	14.3
매우 도움이 된다	46	4.5
합계	1,011	100.0

사회보험의 적용 근로자 비율을 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상당히 증가하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는 거의 96% 이상의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아직도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보험의 충족도를 보면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용기회가 상당히 있는 건강보험은 충족도가 높은 반면, 수급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연금의 경우는 충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적용 근로자 비율이 낮은 것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은 것이 한 원인인데, 근로감독행정의 강화를 통해서 가입률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적용근로자 비율이 낮은 또 하나의 원인은 현재 산재보험의 포괄범위가 임금근로자만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는 형태의 현 산재보험체계가 태생적으로 갖는 한계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약 40%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비임금근로자의 작업중 재해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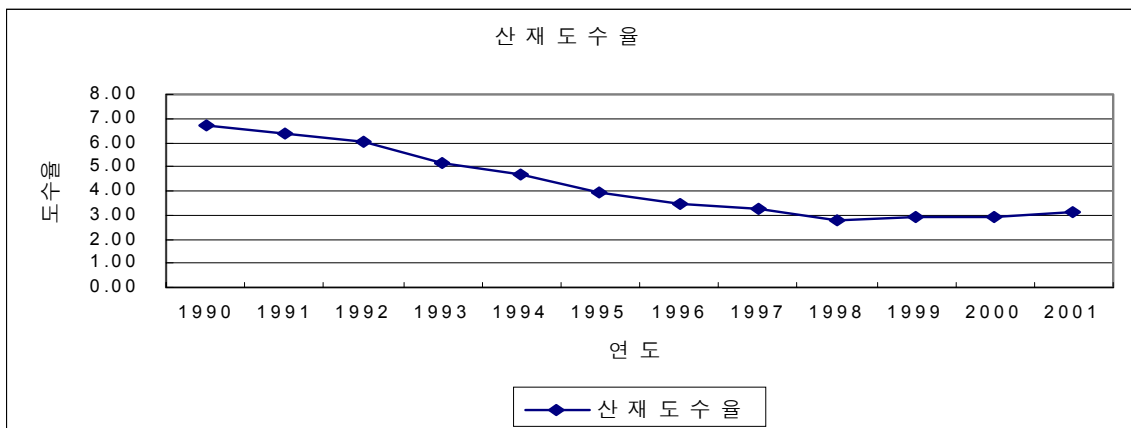
고용보험의 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은 임시일용 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입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리라 예상하지만, 이는 고용 및 임금기록의 작성 및 유지 등 고용관행 및 고용체계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다.

나. 산업안전

1) 산재도수율

산재도수율은 재해건수를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것이다. 산재도수율을 보면 1990년만 하더라도 6.70에 이르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1998년도에 2.79로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다소 늘어나는 추세로 2001년에는 3.13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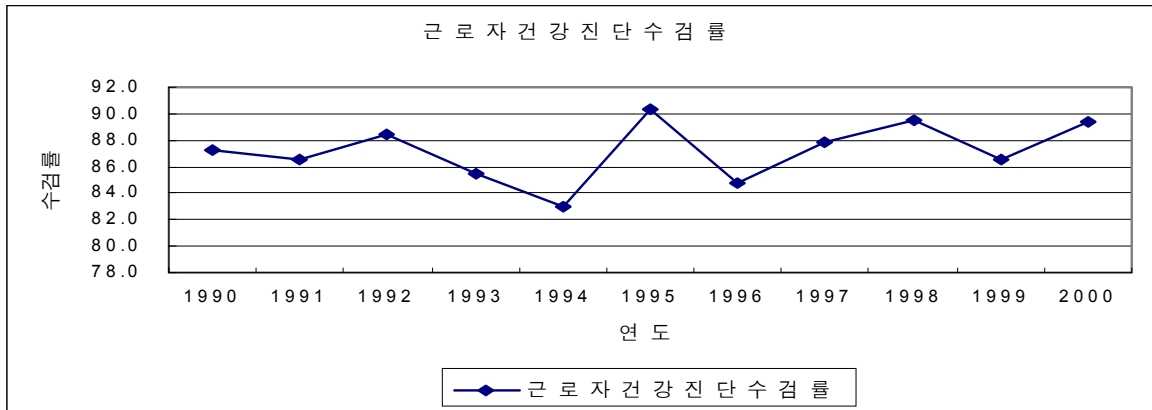
[그림 5-13] 산재도수율



2)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을 보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85.5%에서 90.3% 사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마다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근로감독 행정 지도를 통해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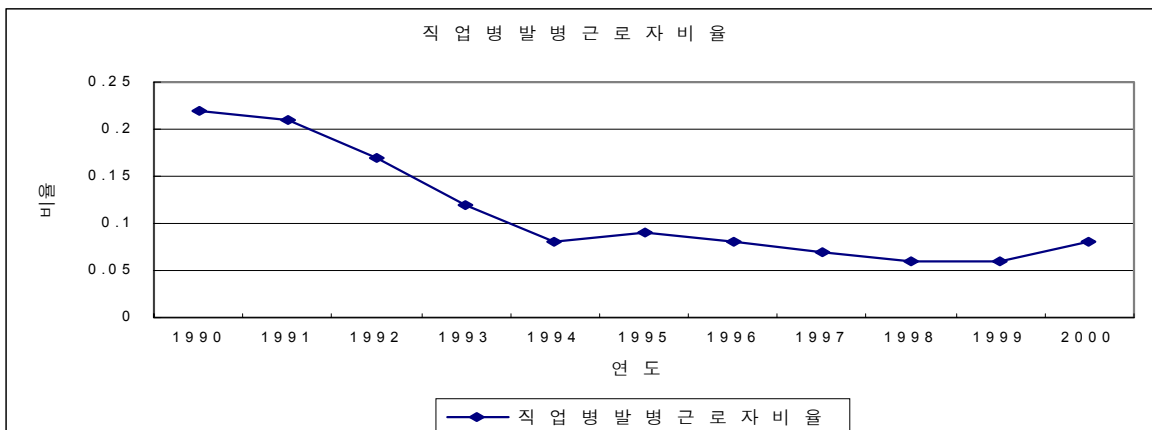
[그림 5-14] 근로자건강진단수검률



3) 직업병 발병 근로자 비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중 직업병 발병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1990년 0.22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0.06이었던 발병비율은 2000년 0.08로 다소 증가하는데, 이는 직업병 인정범위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5-15] 직업병발병 근로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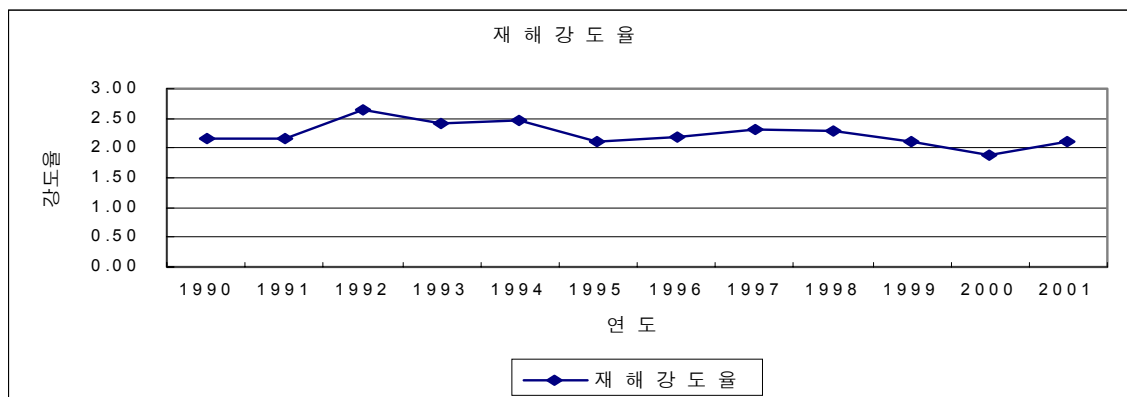


4) 재해강도율

재해강도율은 총근로손실일수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이다. 재해강도율을 보면 1990년 2.15에서 2001년 2.12로 12년 동안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산재 도수율은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재해강도율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산재의 발생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사망사고 등을 초래하는 중대재해의 발생은 줄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전체 산재사고 중 중대재해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산재사고는 어느 경우나 다 문제이지만,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를 낳는 중대재해는 근로자와 그 가족, 나아가 사회를 위해서 더욱 큰 손실이라 하겠다.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업안전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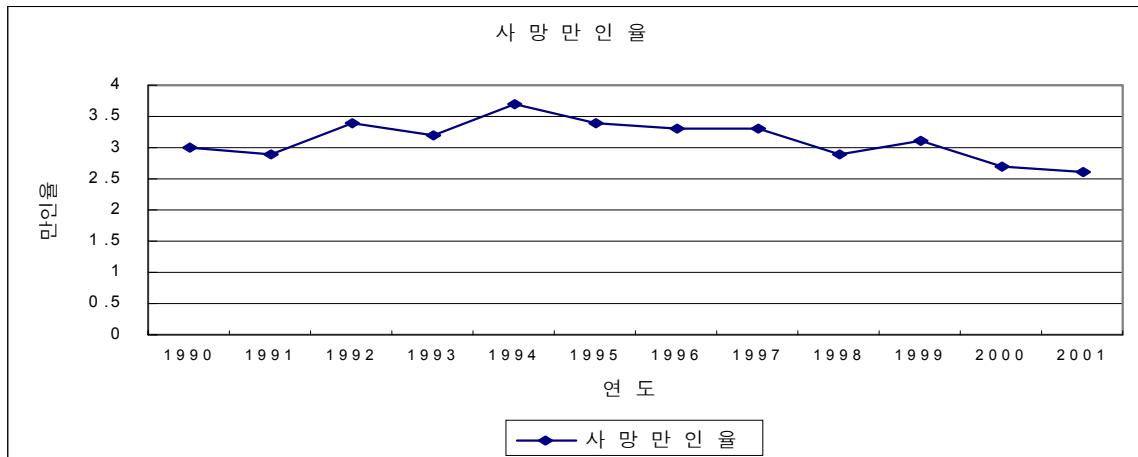
[그림 5-16] 재해강도율



5)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만명 당 사망자의 수를 나타낸다. 사망만인율을 보면 재해강도율과 마찬가지로 지난 12년 동안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더 증가했던 시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3이었던 사망만인율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단 한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3 이상을 기록하였고, 2001년 2.6으로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앞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재해강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재해 중 사망재해 비율의 증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대재해 발생 감소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그림 5-17] 사망만인율



6) 산재위험 정도

작업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29.7%가 위험을 느끼지 않는 반면(전혀 느끼지 못한다 4.5%; 거의 느끼지 못한다 25.2%), 43.3%는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가끔 느낀다 36.5%; 자주 느낀다 6.8%). 2002년도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각각 0.77과 2.46로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산재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직장 환경의 안전도 제고에 대한 정책이 근로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3> 산재위험 정도

	빈도수	비중
전혀 느끼지 못한다	46	4.5
거의 느끼지 못한다	255	25.2
보통이다	272	26.9
가끔 느낀다	369	36.5
자주 느낀다	69	6.8
합계	1,011	100.0

7) 회사의 산재예방노력

회사측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의 14.2%로 비교적 낮은 반면(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1.8%;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12.4%),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44.6%(노력하고 있는 편이다 37.5%; 매우 노력하고 있다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5-3>의 결과와는 약간 상반되는 결과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표 5-14> 회사의 산재예방 노력

	빈도수	비중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18	1.8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125	12.4
보통이다	417	41.2
노력하고 있는 편	379	37.5
매우 노력하고 있음	72	7.1
합계	1,011	100.0

8) 작업환경조건

작업환경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열악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17.3%(매우 열악하다 1.7%; 열악한 편이다 15.6%)인 반면, 양호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8.8%(깨끗한 편이다 34.4%; 매우 깨끗하다 4.4%)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5> 작업환경조건

	빈도수	비중
매우 열악하다	17	1.7
열악한 편이다	158	15.6
보통이다	444	43.9
깨끗한 편이다	348	34.4
매우 깨끗하다	44	4.4
합계	1,011	100.0

산업안전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산재도수율과 직업병 발병 근로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재해강도율과 사망만인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 43%

의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직장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마련과 시행이 절실하다.

근로자의 작업 중 재해는 피해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항구적·집중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재예방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보상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적·인력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산업안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 산재 빈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감독강화를 통해서 산재발생이 억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산업안전에 위한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여겨져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산업재해의 은폐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환경개선 및 안전수칙의 이행에 근로감독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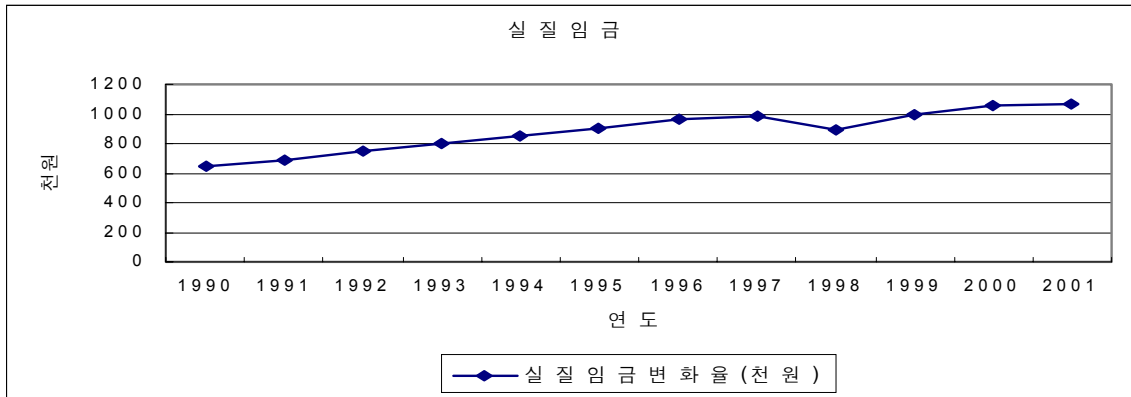
3.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금 및 부가급여

1) 실질임금

실질임금의 변화율을 보면 1990년 64만 2천원이던 임금은 2001년까지 199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2001년에는 106만 6천원을 기록하여 12년 동안 약 1.7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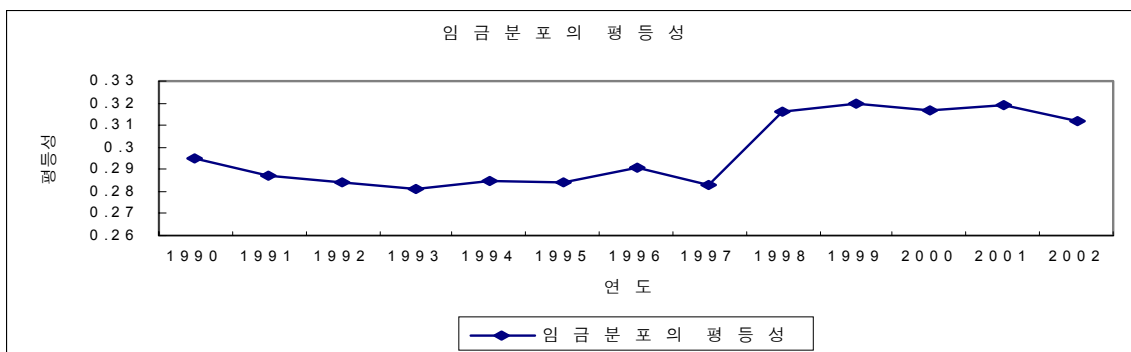
[그림 5-18] 실질임금



2) 임금분포의 평등성

임금분포의 평등성은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알 수 있다. 1990년 0.295이던 지니계수는 이후 1997년 0.291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지니계수는 0.316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임금분포의 불평등성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악화된 임금분포 평등성은 이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2002년에도 여전히 0.31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9] 임금분포의 평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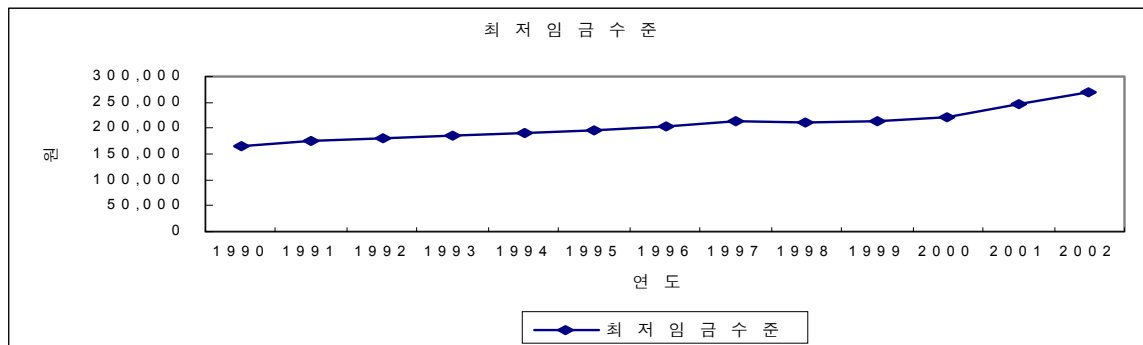


3)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16만 5천원이던 최저임금 수준은 2001년에는 24만 6천원으로 나타나서 약 1.5배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와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증가보다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0] 최저임금수준



4) 임금 만족도

자신의 능력(교육수준, 기술, 경력 등)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 가운데 44.5%는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능력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 4.9%; 능력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다 39.6%). 반면, 능력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는다(능력에 비하여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3.2%; 능력에 비하여 임금 수준이 매우 높다 0.4%). 그리고 능력과 임금 수준이 비슷한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51.5%에 이르고 있다.

<표 5-16> 임금 만족도

	빈도수	비중
능력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	50	4.9
능력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다	400	39.6
능력과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다	521	51.5
능력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다	32	3.2
능력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4	0.4
잘 모름	4	0.4
합계	1,011	100.0

5) 근로복지수준 만족도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복지수준과 내용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전체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5%;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21.3%),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18.3%(만족스러운 편이다 16.9%; 아주 만족한다 1.4%)로 상대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반수에 해당하는 56.0%의 근로자는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5-17> 근로복지수준 만족도

	빈도수	비중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5	4.5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215	21.3
보통이다	566	56.0
만족스러운 편이다	171	16.9
아주 만족한다	14	1.4
합계	1,011	100.0

임금 및 부가급여와 관련된 지표를 보면 실질임금과 최저임금의 경우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임금분포의 평등성은 외환위기 시 급격히 악화된 이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약 45%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복지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25.8%)이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1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증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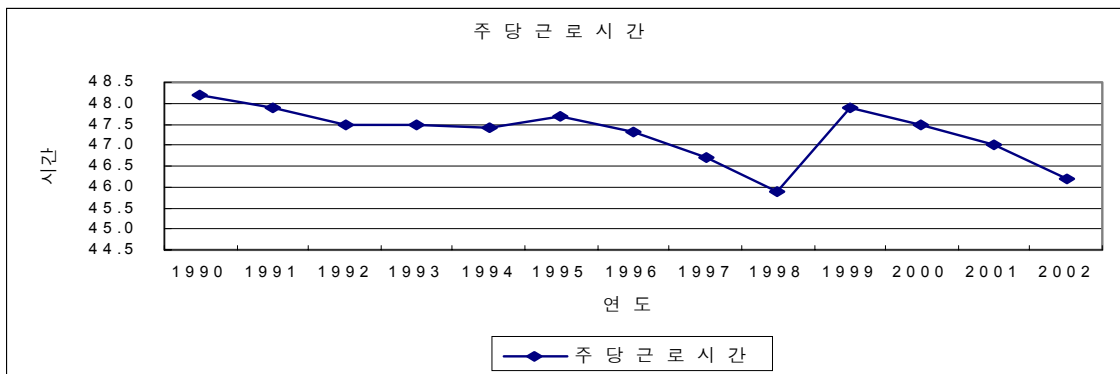
임금 및 부가급여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최저임금을 제외한다면 그 지급 수준과 내용이 전적으로 기업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불법적인 임금체불이나 차별이 행해지지 않도록 노동행정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기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기업복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이 근로자의 임금 및 부가급여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및 부가급여의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할 수 있고 적절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와 고용알선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1)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1990년 48.2시간에서 2001년 47.0시간으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의 등락을 보면 외환위기시인 1998년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주5일제가 시행되면 주당 근로시간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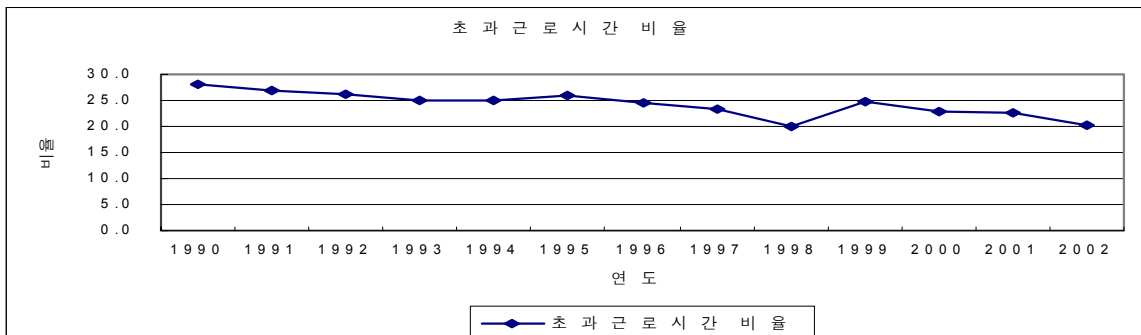
[그림 5-21] 주당근로시간



2) 초과 근로시간 비율

초과근로시간의 비율을 보면, 1990년 28.1에서 2002년 20.3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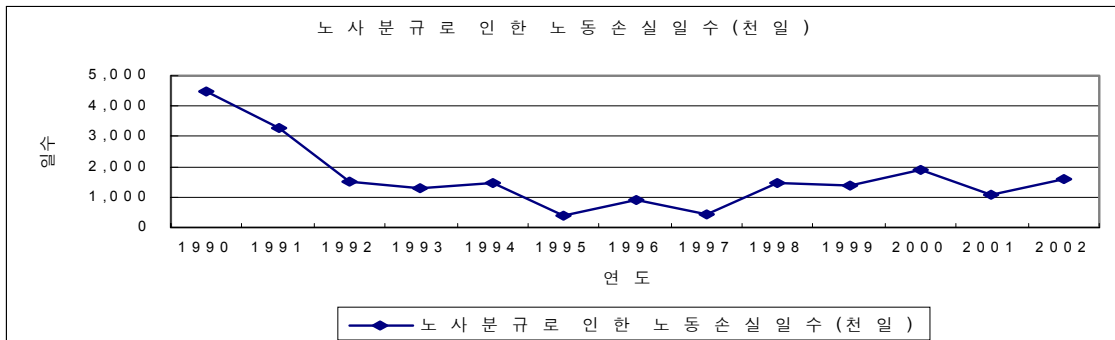
[그림 5-22] 초과근로시간비율



3)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보면 1992년 이후 다소의 등락은 있으나 1997년까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었지만, 1998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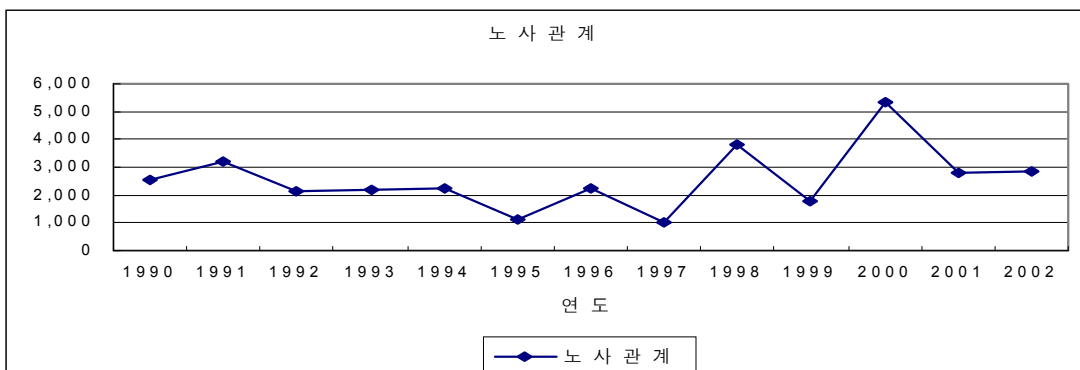
[그림 5-23]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4) 노사관계

노사관계는 ‘분규참가자수 × 지속일수’에 대해서 자연로그를 취해서 구하였다. 노사관계 지표를 보면 1995년 이후 매년 등락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에서 살펴본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후 노사관계 및 노사분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쟁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림 5-24] 노사관계



5) 근로시간 만족도

현재의 근로시간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62.9%의 근로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하여 특별히 불만족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짧은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1%에 지나지 않는 반면(짧은 편이다 3.0%; 매우 짧은 편이다 0.1%), 긴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4.1%(매우 길다 4.1%; 긴 편이다 30.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주5일제의 확산과 함께 이 결과의 변화가 어떻게 진전될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8> 근로시간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길다	41	4.1
긴 편이다	303	30.0
보통이다	636	62.9
짧은 편이다	30	3.0
매우 짧은 편이다	1	0.1
합계	1,011	100.0

6) 근로조건 만족도

소속된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불만족 상태인 근로자가 전체의 16.4%(매우 불만족 1.1%; 불만족 15.3%)인 반면,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21.8%(만족 20.8%; 매우 만족 1.0%)를 차지하여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9> 근로조건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	11	1.1
불만족	155	15.3
보통	625	61.8
만족	210	20.8
매우 만족	10	1.0
합계	1,011	100.0

7) 직장분위기

직장분위기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대체로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곧 근로자 전체의 52.1%가 좋은 편이라 응답하였으며(좋은 편이다 47.5%; 매우 좋다 4.6%), 보통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도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 나쁜 편이라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5.9% 수준(매우 나쁘다 1.0%; 나쁘다 4.9%)을 나타내고 있다.

<표 5-20> 직장분위기

	빈도수	비중
매우 나쁘다	10	1.0
나쁘다	50	4.9
보통	424	41.9
좋은 편이다	480	47.5
매우 좋다	47	4.6
합계	1,011	100.0

8) 고충처리 만족도

직장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충처리가 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의 20.8%(전혀 되지 않는다 2.0%; 되지 않는 편이다 18.8%)를 차지한 반면, 잘 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25.7%(잘 되는 편이다 23.9%; 매우 잘 된다 1.8%)를 차지하였다. 어느 쪽도 아닌 경우가 53.5%로 상대적으로 고충처리가 잘 되는 편이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대한 회사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21> 고충처리 만족도

	빈도수	비중
전혀되지 않는다	20	2.0
되지 않는 편이다	190	18.8
보통	541	53.5
잘 되는 편이다	242	23.9
매우 잘 된다	18	1.8
합계	1,011	100.0

9) 노사관계의 안정성 인식도

최근 1년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안정적이었다고 보는 근로자가 전체에서 40.9%를 차지하고 있다(안정적이었다 36.2%; 매우 안정적이었다 4.7%). 반면 불안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15.8%(매우 불안정적이었다 1.5%; 불안정적이었다 14.3%)에 해당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와 사회 분위기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5-22> 노사관계의 안정성 인식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안정적이었다	15	1.5
불안정적이었다	145	14.3
보통	433	42.8
안정적이었다	366	36.2
매우 안정적이었다	48	4.7
잘 모름	4	0.4
합계	1,0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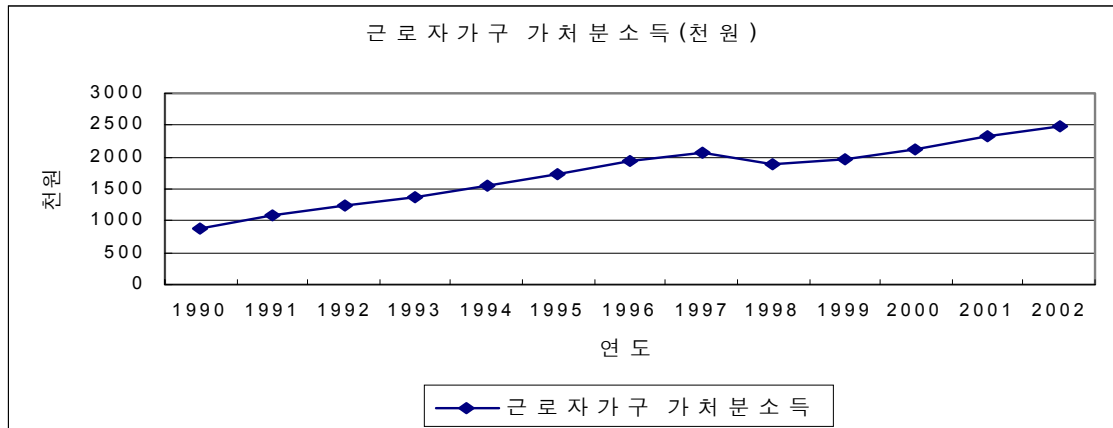
4. 사생활

가. 가계수지

1) 근로자가구당 가처분 소득

근로자 가구당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보면 1990년 87만원에서 2001년 231만 9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당 가처분 소득 또한 근로자 실질임금이나 최저임금수준과 마찬가지로 1998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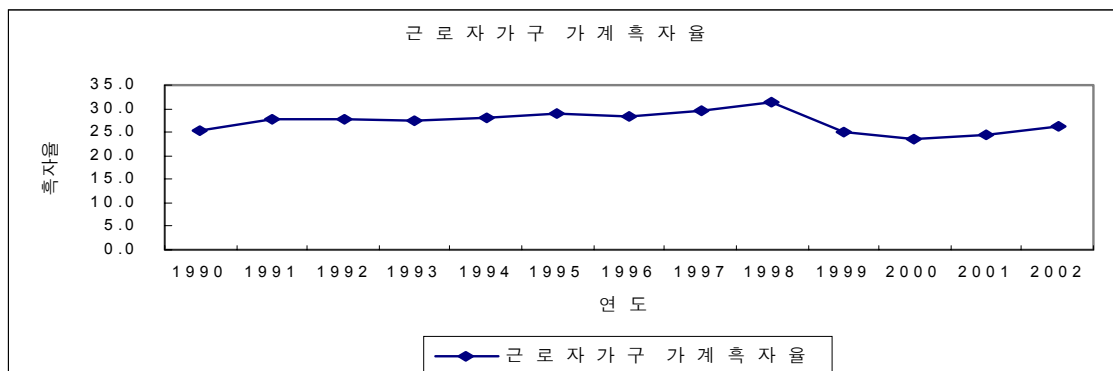
[그림 5-25] 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2)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을 보면 1990년 25.3%에서 해마다 소폭 상승하여 1998년 31.5%로 정점을 이룬 뒤 1999년 급속히 감소하여 25.1%를 기록하였고, 이후 낮아진 흑자율은 2001년부터 다시 조금씩 회복추세이지만 아직까지 199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26]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3) 가구소득 만족도

현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 소득 등)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편이라고 보는 근로자(충분한 편이다 7.2%; 매우 충분하다 0.1%)보다 부족한 편이라고 느끼는 근로자(매우 부족하다 7.7%; 부족한 편이다 45.5%)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과반수를 넘어서는 53.2%에 이르고 있어 가구소득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3> 가구소득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부족하다	78	7.7
부족한 편이다	460	45.5
보통이다	399	39.5
충분한 편이다	73	7.2
매우 충분하다	1	0.1
합계	1,011	100.0

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와 관련된 지표를 보면 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대체로 완만히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 흑자율은 1999년 급속히 하락한 이래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한 편이라고 느끼는 근로자(53.2%)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가계수지의 악화는 노동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고용서비스의 확충을 통해서 식구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갖게 하고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서 보다 고소득의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구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간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로 머물렀던 가정 내 여성이나 중고령 근로자, 장기실업자 등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고용서비스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가계수지의 악화로 인한 비상적인 자금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 중인 공공근로복지사업의 대부사업 및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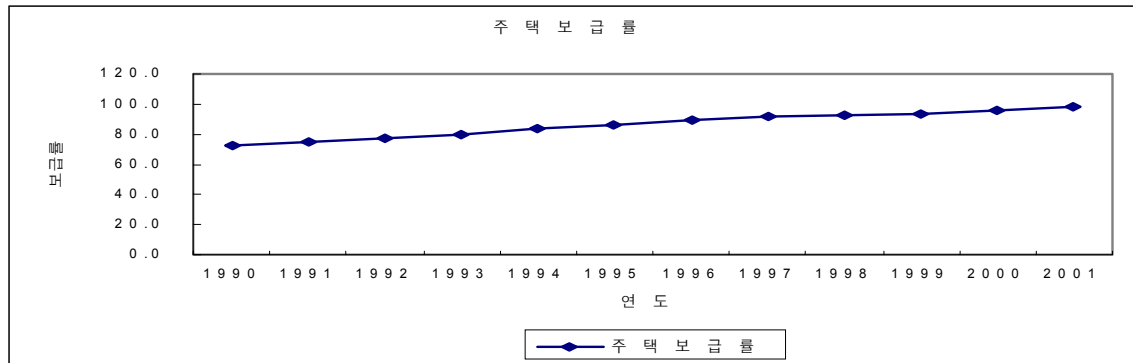
나. 주거통근

1)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은 1990년 7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98.3%에 이르러서,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주택보급은 상당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택가격상승과 전세난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만을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

인 주택정책의 차원에서 주거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27] 주택보급률



2) 주거 만족도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5.2%는 불만족인 반면(매우 불만족이다 2.9%; 불만족한 편이다 22.3%),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28.6%(만족한 편이다 26.3%; 매우 만족한다 2.3%)로 만족한 편이 약간 높으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표 5-24> 주거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이다	29	2.9
불만족한 편이다	225	22.3
보통이다	468	46.3
만족한 편이다	266	26.3
매우 만족한다	23	2.3
합계	1,011	100.0

3) 생활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곧 만족한 편에 속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36.3%(만족한 편이다 33.2%; 매우 만족한다 3.1%)를 차지하는 반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7.0%(매우 불만족이다 2.7%; 불만족한 편이다 14.3%)에 지나지 않는다.

<표 5-25> 생활지역에 대한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이다	27	2.7
불만족한 편이다	145	14.3
보통이다	472	46.7
만족한 편이다	336	33.2
매우 만족한다	31	3.1
합계	1,011	100.0

4) 통근소요시간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1.0분인 반면, 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3.3분으로 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30분, 40분 등 10분대로 응답한 경우가 많아 차이가 정확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5) 통근시간에 대한 만족도

교육·주거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보다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곧 불만족에 속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23.5%(매우 불만족이다 4.2%; 불만족한 편이다 19.3%)인 반면,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41.0%(만족한 편이다 32.7%; 매우 만족한다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5-26> 통근시간에 대한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이다	42	4.2
불만족한 편이다	195	19.3
보통이다	359	35.5
만족한 편이다	331	32.7
매우 만족한다	84	8.3
합계	1,011	100.0

주거통근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수치상으로는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주거만족도와 생활지역 만족도, 통근소요시간과 만족도 또한 대체적으로 만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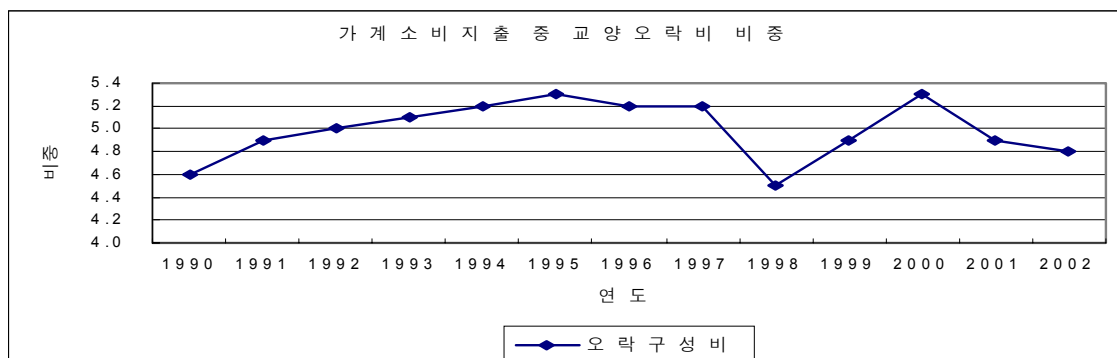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 여가

1)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중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의 비중을 보면 관찰이 시작된 시점인 1990년(4.6%)부터 1997년(5.2%)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교양오락비의 비중은 급속히 하락을 보여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0년 5.3%를 나타냈지만, 2001년부터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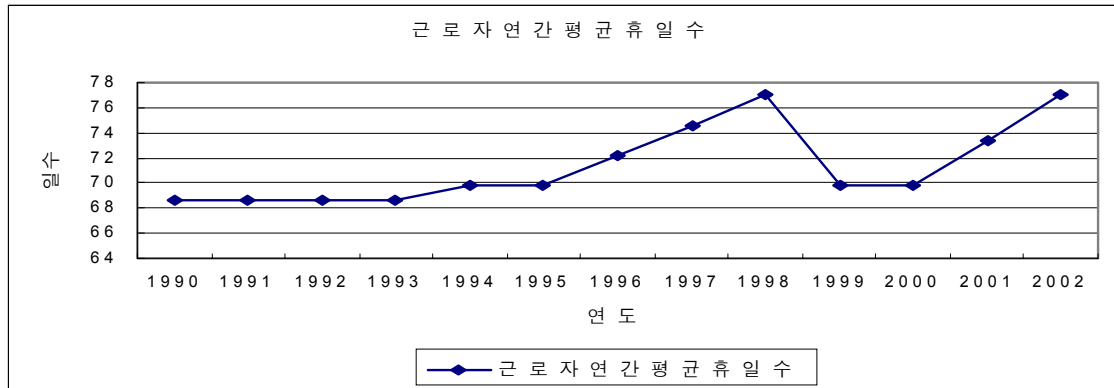
[그림 5-28] 가계소비지출중 교양오락비 비중



2) 근로자 연간 평균휴일 수

근로자의 연간 평균 휴일 수를 보면 1993년까지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나타났지만(지속적으로 68, 69일대), 1994년부터 소폭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6년부터는 급속히 증가하여 1998년 77일로 최고를 기록하였고, 19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69일대로 감소한 이후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 주5일제가 시행되면 근로자의 연간 휴일 수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이 경우 비록 노동부의 정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휴일 및 여가활용을 보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29] 근로자연간평균휴일수



3) 여가활용도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곧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의 57.7%(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9.5%; 활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48.2%)를 차지하는 반면, 활용하는 편에 속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19.3%(활용하는 편이다 17.6%; 잘 활용하고 있다 1.7%)에 이른다.

<표 5-27> 여가 활용도

	빈도수	비중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96	9.5
활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487	48.2
보통	233	23.0
활용하는 편이다	178	17.6
잘 활용하고 있다	17	1.7
합계	1,011	100.0

4) 여가 필요성 인식

여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가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자가 많은 만큼 여가를 더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많은 편이다. 여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71.7%(매우 필요하다 15.3%; 필요한 편이다 56.4%)인 반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근로자는 3.9%(별로 필요하지 않다 3.4%; 전혀 필요하지 않다 0.5%)에 지나지 않는다.

<표 5-28> 여가 필요성 인식

	빈도수	비중
매우 필요하다	155	15.3
필요한 편이다	570	56.4
보통	247	24.4
별로 필요하지 않다	34	3.4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0.5
합계	1,0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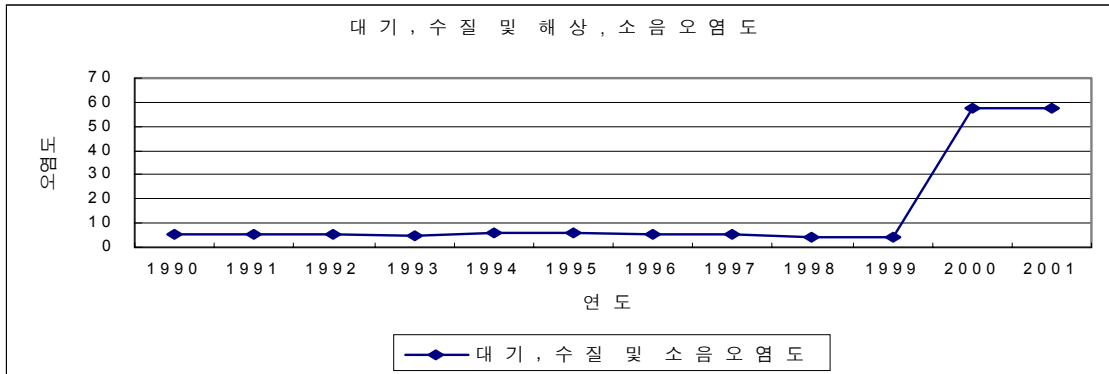
여가와 관련된 지표를 보면, 연간 평균 휴일수는 외환위기시 크게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계소비 지출 중 교양오락비의 비중은 회복되지 못하고 2000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 지출 중 교양오락비는 불요불급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가계수지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절대다수의 근로자(71.7%)가 여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57.7%) 또한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높은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면 여가시간 자체는 증가할 것이지만, 이에 부응하는 여가활용 계획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

라. 보건환경

1) 대기·수질 및 소음, 해상 오염도

대기·수질·해상 오염 및 소음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던 지표가 2000년부터 10배 이상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본 후, 지표를 급속히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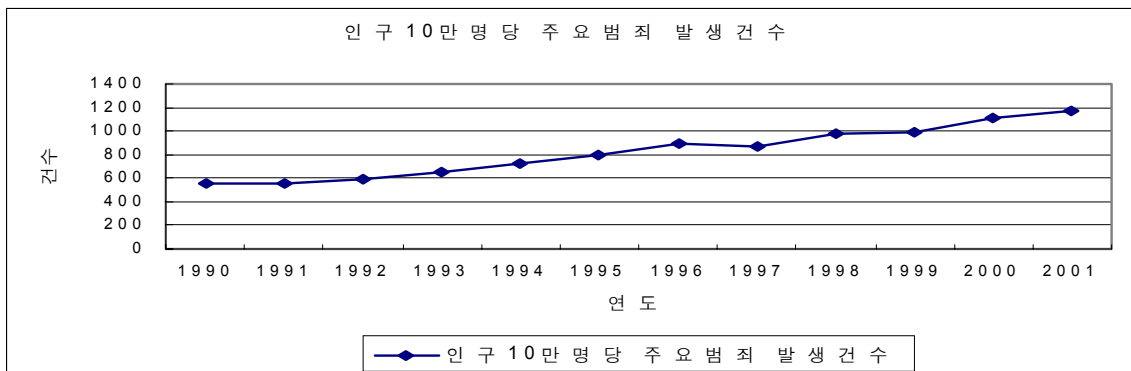
[그림 5-30] 대기·수질 및 해상, 소음오염도



2)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1990년 560명에서 2001년 1,169명으로 지난 11년 동안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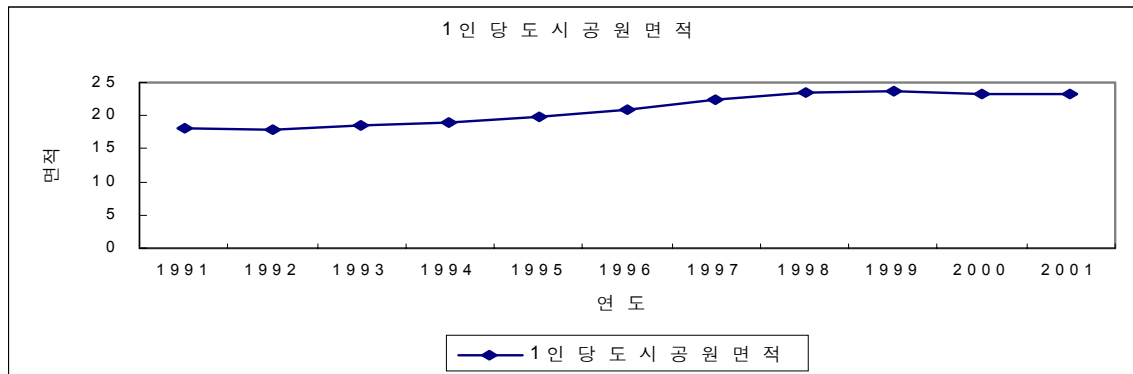
[그림 5-31] 인구10만명당 주요범죄 발생건수



3)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을 보면, 1991년 18.1에서 1998년 23.5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1998년 이후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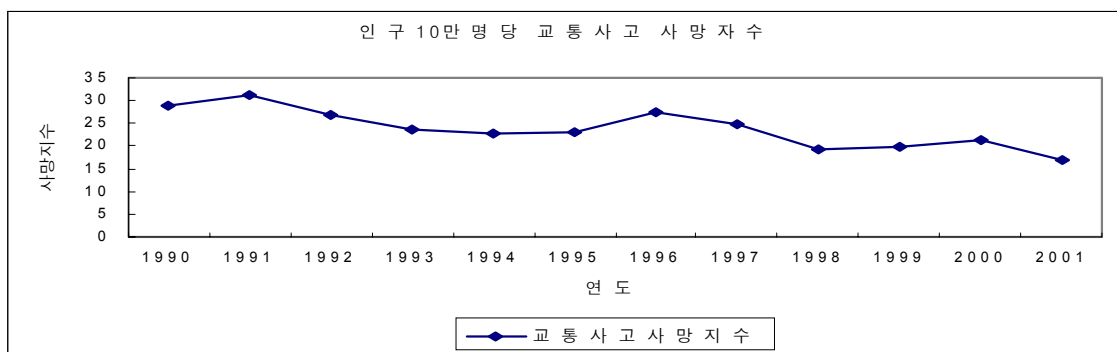
[그림 5-32] 1인당 도시공원면적



4)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1990년 28.8명에서 2001년 16.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사이의 시기에는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33]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5) 건강 인식도

근로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건강을 염려하는 근로자는 15.3%(건강이 매우 안좋다 0.9%;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7.9%(건강한 편이다 34.1%; 아주 건강하다 3.8%)로

높은 편이다. 이밖에 어느 쪽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46.8%를 차지하고 있어 주관적으로는 근로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9> 건강 인식도

	빈도수	비중
건강이 매우 안좋다	9	0.9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46	14.4
보통이다	473	46.8
건강한 편이다	345	34.1
아주 건강하다	38	3.8
합계	1,011	100.0

6)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는 판단을 유보한 근로자가 58.8%로 높은 편이나 불만족하고 있는 비중이 30.5%(매우 불만족이다 4.6%; 불만족한 편이다 25.9%)으로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10.7%(만족한 편이다 10.5%; 매우 만족한다 0.2%)에 지나지 않는다.

<표 5-30> 의료서비스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이다	47	4.6
불만족한 편이다	262	25.9
보통이다	594	58.8
만족한 편이다	106	10.5
매우 만족한다	2	0.2
합계	1,011	100.0

7) 환경 만족도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대기·수질 오염,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공해, 녹지 등의 주위환경훼손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32.2%가 불만족한 편에 속하는 반면(매우 불만족이다 4.4%; 불만족한 편이다 27.8%),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22.5%(만족한 편이다 20.8%; 매우 만족한다 1.7%)로 상대적으로 불만족의 비중이 높다.

<표 5-31> 환경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이다	44	4.4
불만족한 편이다	281	27.8
보통이다	459	45.4
만족한 편이다	210	20.8
매우 만족한다	17	1.7
합계	1,011	100.0

8) 치안 만족도

치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근로자의 비중이 과반수인 5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불만족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35.0%(매우 불만족이다 4.9%; 불만족한 편이다 30.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치안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13.1%(만족한 편이다 12.7%; 매우 만족한다 0.4%)로 낮은 편이다.

<표 5-32> 치안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이다	50	4.9
불만족한 편이다	304	30.1
보통이다	525	51.9
만족한 편이다	128	12.7
매우 만족한다	4	0.4
합계	1,011	100.0

9) 교통안전 만족도

교통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근로자의 비중이 42.5%(매우 불만족이다 6.7%; 불만족한 편이다 35.8%)로 높은 편이다. 반면,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10.3%(만족한 편이다 9.8%; 매우 만족한다 0.5%)로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5-33> 교통안전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이다	68	6.7
불만족한 편이다	362	35.8
보통이다	477	47.2
만족한 편이다	99	9.8
매우 만족한다	5	0.5
합계	1,011	100.0

보건환경과 관련된 지표는 비록 노동 복지 영역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규정할 수 있다. 보건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대기·수질 및 소음 오염도는 2000년 이후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범죄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지만, 도시공원면적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점진적이지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의 환경, 의료서비스, 치안,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도 불만족한 경우가 만족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교통안전의 경우 불만족한 근로자(42.5%)의 비중이 높았다.

Ⅵ. 결론

1. 근로복지지표를 통해본 근로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근로복지지표로 설정된 대지표의 항목을 보면 고용,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임금 및 근로조건, 사생활의 4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노동정책 내지는 노동복지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고용과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의 항목이다. 임금 및 근로조건 항목은 주로 기업의 영역이고, 사생활 항목은 치안, 환경, 의료 등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항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노동정책 및 근로복지와 관련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가. 고용서비스의 내실화와 한계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지원

근로자의 고용 실태 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의 내실화 및 확충이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있지 못했던 여성, 중고령 근로자, 장기실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알선체계를 확립하고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교육훈련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력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부양비의 급속한 증가를 방지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관련해서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 및 적절한 보육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유지장려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보상·인사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고령근로자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적 대

우를 금지하여 적어도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고령 근로자가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제한적인 자활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장기실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에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용전략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시장 경쟁력의 문제로 과소공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사회적 일자리는 환경, 보육, 간병, 기타 복지서비스 등의 부문으로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장기실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일자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능력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세계적인 경쟁의 심화는 불가피하게 유연 노동시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때 근로자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의 제도전환,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주5일 근무제도의 실시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교육훈련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상시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직업훈련을 위해서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 고용보험의 재직자급여나 실업급여의 지원은 근로자가 생계걱정 없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교육훈련·능력개발에서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중고령근로자, 장기실직자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 성원 누구나 당할 개연성이 있는 위험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집단보장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가입자 비율을 보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자 비율이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구조적인 특성과 일정 기간 이상의 고용기록을 필요

로 하는 고용보험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가입률이 저조한 때문이기도 하다. 중소영세 사업장은 사업의 성립과 폐지가 빈번하고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노동감독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의 저조는 바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 영세 사업장이야말로 산재사고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보험의 필요성도 더 크다 하겠다. 노동감독 행정의 강화를 통해서 중소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은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산업재해율은 낮아지지만 재해강도율, 사망만인율은 하락하고 있지 않은 바,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중소규모 사업장, 산재빈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의 확대 및 감독강화를 통해서 산재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복지지표의 향후 고려사항

현행의 근로복지지표 산정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Ⅳ장에서 지적하였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경우, 무엇보다도 다양한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를 단일한 통합지표로 지수화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객관성과 타당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지표의 경우, 단일한 방향, 곧 증가나 감소가 복지수준의 증감을 뜻하여야 하나 이와 다른 속성을 지닌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표가 장기적으로 변화하여야 하는 속성임에도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속성을 지닌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Ⅳ장에서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으로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과 근로자가 복지로서 인식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Ⅴ장에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로 파악되지 않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조사, 보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근로복지지표 체계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 통합 지표로부터 복수 지표로

먼저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개별 지표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지표로 지수화한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하자. 무엇보다 통합지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근로자복지종합지표에서 시도되었듯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하나의 통합 지표로 표현함으로써 시계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마치 일국의 1년간 경제활동을 흔히 국내총생산, 특히 이 변화를 나타내는 경제성장률로부터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총생산이나 경제성장률은 통합지표가 아니라 대표적인 단일 지표라는 사실이다.

이때 근로복지지표가 통합지표로서 산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란 통합지표 산정에 필요한 가중치를 객관적이며 타당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근로자 개인에 대한 주관적 조사를 통하여 얻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 또한 변동하기 쉬운 속성을 지닌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원덕 외(1988)에서 지적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객관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가중치를 얻고 이 가중치에 기초하여 통합지표를 산정하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초래된다는 사실이다.

제Ⅱ장에서 소개하였듯이 사회지표와 관련하여 OECD 등의 국제기관과 각국의 경우,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복수의 관련 지표를 발표하고 있을 뿐 이들을 통합 지표의 형태로 재산정하여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도 통합지표 산정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수집, 어떠한 지표들이 개선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다른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매년 발표되고 있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지표』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만큼 근로복지정책과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산정은 근로복지 방향 설정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이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동일하게 기존의 통계 자료에 의

거하여 산정되므로 저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는 것이다.

나.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연결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를 통합 지표로 산정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일종의 통계표 형태로 수집, 발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노동백서』나 『노동통계연감』 등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제기될 만하다. 특히 이는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획득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완전히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비중을 향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관찰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보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파악하지 못하는 새로운 복지 내용에 대한 것도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와 관련된 설문 항목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한 한 현재의 복지 수준을 포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설문 항목이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됨으로써 근로복지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냄으로써 근로복지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근로복지공단(1999), 『근로복지지표』.

_____ (1996), 『근로복지전개방향설정 연구』.

김교성(2000), 「근로복지지표의 주요 내용 분석과 개선방안」,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 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71-303.

배무기 외(1987), 『근로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유길상(1991),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외(1988), 『근로복지지표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최효철·배무기(1998), 「근로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논문집』, 제7집 제 1호, 241-26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2. 영미 문헌

ILO(1992), *World Labor Report*, Geneva.

OECD(1973), *The OECD Social Indicator Development Programme: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_____ (1982),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UN(1993), *Compendium of Social Development Indicators in the ESCAP Region*, New York.

3. 일본 문헌

일본 노동성(1971, 1972, 1985, 1987), 『노동경제의 분석(労働経済の分析)』.

_____ (1972), 『노동백서(労働白書)』.

일본노동연구기구(2002), 『유스풀 노동통계 - 노동통계가공지표집 -(ユースフル労働統計-労働統計加工指標集-)』.

부록

1. 근로복지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 설문(1987년)

주요관심사항	세부관심사항	근로복지지표의 내용 (개요)
고용사정 ()%	교육 훈련 ()%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정도와 재훈련 전직 훈련 등 고용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질적 측면의 향상 여부를 나타냄.
	취업 기회 ()%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 취업알선 내용 등을 나타냄.
	고용 안정 ()%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근속연한 등이 길어지는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이직)될 위험은 없는가 등을 나타냄.
	합 계 (100)%	
임금·근로 조건 ()%	임금·부가급부 ()%	실질임금의 수준, 임금의 격차, 임금체불, 임금 중 기본급의 비중, 법정 및 비법정 복리비의 변화 등을 나타냄.
	노동시간 ()%	주당 노동시간의 변동,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 변동 등을 나타냄.
	산업안전 ()%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관련되는 사항을 나타냄.
	사회 보장 ()%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복지연금(1988시행)등에 가입 내지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율과 이들 보험의 급여수준을 나타냄.
	합 계 (100)%	
노사관계 ()%	단결권 ()%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부당노동행위발생 건수 등을 나타냄.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	단체협약의 체결, 노사분규, 분규에 따르는 손실일수 등을 나타냄.
	경영참가 ()%	이윤참가로서의 종업원 지주제 참가업체 비율, 노사협의회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평가 등을 나타냄.
	합 계 (100)%	
사생활 ()%	자산·저축 ()%	근로자 가구당 순금융자산잔고(실질), 자가 보유율, 근로자 가계저축률 등을 나타냄.
	주거·통근·자녀교육 ()%	주거생활 공간, 통근시간, 상하수도 보급률, 교통사고의 위험률 등을 나타냄.
	여가 ()%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서 근로자들의 비출근일수, 가계비중 교양, 오락비 비중, 도서관 수, T·V 시청등을 나타냄.
	합 계 (100)%	

자료 : 이원덕 외(1988).

2. 주관적 지표에 관한 조사사항(1987년)

1.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질문 : 귀하는 귀하의 직장에서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 :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2) 만족하고 있다.
3) 불만이다. 4) 매우 불만이다.

2.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질문 : 귀하는 귀하의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 :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2) 만족하고 있다.
3) 불만이다. 4) 매우 불만이다.

3. 산재위험에 대한 평가

질문 : 귀하는 귀하의 직장에서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가능성에 대해 얼마만큼 위험을 느끼고 계십니까?

응답 :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2) 만족하고 있다.
3) 불만이다. 4) 매우 불만이다.

4. 노사협의회의 유효성 평가

질문 : 귀하는 귀하의 직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사협의회가 얼마만큼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2) 만족하고 있다.
3) 불만이다. 4) 매우 불만이다.

5. 기업의 경영공개에 대한 만족도

질문 : 귀하는 귀하의 직장의 경영공개상태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 :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2) 만족하고 있다.
3) 불만이다. 4) 매우 불만이다.

6.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

질문 : 귀하는 귀하의 직장에서의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 :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2) 만족하고 있다.
3) 불만이다. 4) 매우 불만이다.

자료 : 배무기 외(1987).

3. 새로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체계와 시계열 자료

가. 고용사정

1) 교육훈련

$$- \text{정부의 직업훈련예산비중} = \frac{\text{직업훈련투자비(결산)}}{\text{중앙정부세출(결산)}} \times 100$$

(자료 : 재정경제원, 『2001년도 결산개요』, 대한민국정부, 『2001년도 예산』)

$$- \text{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비중} = \frac{\text{교육훈련비}}{\text{총노동비용}} \times 100$$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text{고졸이상 학력 근로자 비율} = \frac{\text{고졸이상임금근로자}}{\text{임금근로자}} \times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부의 직업훈련예산비중	기업의 교육훈련 비중	근로자 평균수학연수
1990	0.30	1.2	0.309
1991	0.23	1.6	0.323
1992	0.24	1.6	0.337
1993	0.23	1.8	0.349
1994	0.22	1.7	0.352
1995	0.22	1.5	0.358
1996	0.22	2.1	0.362
1997	0.20	1.9	0.36
1998	0.20	1.2	0.384
1999	0.29	1.4	0.382
2000	0.29	1.4	0.383
2001	0.23	1.5	0.388
2002	-	-	0.391

2) 취업기회

$$- \text{장기실업자비율} = \frac{\text{구직기간6개월이상실업자}}{\text{실업자}} \times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text{임금근로자 취업비율} = \frac{\text{임금근로자}}{\text{취업자}} \times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기실업자 비율(%)	취업비율
1990	-	0.355
1991	14.5	0.371
1992	15.9	0.372
1993	17.3	0.367
1994	20.6	0.378
1995	17.7	0.383
1996	16.1	0.385
1997	15.8	0.385
1998	14.7	0.348
1999	18.6	0.354
2000	14.2	0.369
2001	13.0	0.373
2002	14	0.384

3) 고용안정

$$- \text{임시 일용 근로자 비율} = \frac{\text{임시일용근로자}}{\text{임금근로자}} \times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text{10년 이상 경력근로자 비율} = \frac{\text{10년이상경력근로자}}{\text{임금근로자}} \times 100$$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임시일용근로자비율	평균경력년수
1990	45.8	-
1991	44.5	-
1992	42.6	-
1993	41.1	26.8
1994	42.1	26.9
1995	41.9	28.6
1996	43.2	28.5
1997	45.7	30.1
1998	46.9	33.1
1999	51.6	32.2
2000	52.1	31.7
2001	50.8	33.8
2002	51.6	30.1

나.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1)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

$$\text{산재보험적용근로자 비율} = \frac{\text{산재보험적용자수}}{\text{총근로자수}} \times 100$$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text{고용보험가입자 비율} = \frac{\text{고용보험적용자수}}{\text{총근로자수}} \times 10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text{국민건강보험적용자 비율} = \frac{\text{국민건강보험적용자수}}{\text{총인구}} \times 100$$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text{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비율} = \frac{\text{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수}}{\text{5인이상사업체근로자수}} \times 1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고용보험적용가입자 비율	산재보험적용근로자 비율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비율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비율
1990	-	41.7	98.7	25.7
1991	-	42.9	98.2	25.5
1992	-	37.2	91.2	26.3
1993	-	36.1	94.6	26.5
1994	-	36.7	91.9	27.1
1995	20.5	38.7	93.7	27.2
1996	20.7	39.3	94.5	91.1
1997	20.3	39.1	92.1	88.3
1998	26.4	38.1	88.3	86.2
1999	29.9	57.6	64.5	62.3
2000	32.0	45.0	97.6	99.0
2001	32.3	49.5	98.0	96.8

2) 산업안전

$$\text{산재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총근로시간수}} \times 100$$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text{근로자건강진단수검률} = \frac{\text{건강진단수검근로자수}}{\text{건강진단대상근로자}} \times 10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text{직업병발병근로자비율} = \frac{\text{직업병유병근로자수}}{\text{건강진단대상근로자}} \times 100$$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 \text{재해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총근로시간수}} \times 100$$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 \text{사망만인율} = \frac{\text{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산재도수율	근로자건강진단 수검률	직업병발병근로자 비율	재해강도율	사망만인율
1990	6.70	87.2	0.22	2.15	3
1991	6.35	86.5	0.21	2.16	2.9
1992	6.02	88.4	0.17	2.65	3.4
1993	5.18	85.5	0.12	2.41	3.2
1994	4.69	83.0	0.08	2.47	3.7
1995	3.90	90.3	0.09	2.10	3.4
1996	3.49	84.8	0.08	2.19	3.3
1997	3.28	87.9	0.07	2.32	3.3
1998	2.79	89.5	0.06	2.29	2.9
1999	2.92	86.6	0.06	2.11	3.1
2000	2.89	89.4	0.08	1.88	2.7
2001	3.13	-	-	2.12	2.6

다. 임금 및 근로조건

1) 임금 및 부가급여

$$- \text{실질임금} = \frac{\text{명목임금}}{\text{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자료: 통계청,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한국통계월보』)

$$- \text{임금분포의 평등성} = \text{지니계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KLI 노동통계』)

$$- \text{최저임금수준} = \text{실질최저임금}$$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KLI 노동통계』)

	실질임금	임금분포의 평등성	최저임금수준
1990	642	0.295	165,000
1991	691	0.287	176,250
1992	748	0.284	180,020
1993	801	0.281	186,630
1994	850	0.285	189,604
1995	905	0.284	195,690
1996	965	0.291	203,242
1997	988	0.283	213,682
1998	896	0.316	210,818
1999	996	0.320	214,749
2000	1,052	0.317	220,334
2001	1,066	0.319	246,711
2002	-	0.312	270,522

2)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 주당근로시간 = $\frac{\text{월근로시간} \times 7}{30.4}$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 초과근로시간비율 = $\frac{\text{초과근로시간}}{\text{총근로시간}} \times 100$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KLI 노동통계』)

- 노사관계 = (분규참가자수 × 지속일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KLI 노동통계』)

	주당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비율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천일)	노사관계
1990	48.2	28.1	4,487	2,559
1991	47.9	26.9	3,271	3,185
1992	47.5	26.1	1,528	2,111
1993	47.5	25.1	1,308	2,169
1994	47.4	25.0	1,484	2,246
1995	47.7	26.0	393	1,130
1996	47.3	24.6	893	2,259
1997	46.7	23.4	445	999
1998	45.9	20.1	1,452	3,811
1999	47.9	24.8	1,366	1,766
2000	47.5	22.9	1,894	5,340
2001	47.0	22.7	1,083	2,821
2002	46.2	20.3	1580	2,839

라. 사생활

1) 가계수지

- 가처분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가계흑자율 = $\frac{\text{흑자}(\text{소득} - \text{가계지출})}{\text{가처분소득}} \times 100$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동향』)

	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근로자가구 가계흑자율
1990	870.2	25.3
1991	1,079.2	27.8
1992	1,250.9	27.9
1993	1,358.5	27.4
1994	1,551.0	28.2
1995	1,732.5	29.0
1996	1,945.2	28.3
1997	2,064.2	29.6
1998	1,894.7	31.5
1999	1,967.7	25.1
2000	2,113.5	23.6
2001	2,319.2	24.5
2002	2,483.4	26.4

2) 주거통근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빈집포함)}}{\text{일반가구수(총가구수 - 단독가구 - 집단가구 - 외국인가구)}} \times 100$$

(자료: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주택보급률
1990	72.4
1991	74.8
1992	77.5
1993	80.1
1994	83.5
1995	86.0
1996	89.2
1997	92.0
1998	92.4
1999	93.3
2000	96.2
2001	98.3

3) 여가

$$\text{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중} = \frac{\text{교양오락비}}{\text{가계소비지출}} \times 10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

$$\text{근로자 연간 평균 휴일수} = 365 - (12 \times \text{월평균근로일수})$$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오락구성비	근로자연간평균휴일수
1990	4.6	68.6
1991	4.9	68.6
1992	5.0	68.6
1993	5.1	68.6
1994	5.2	69.8
1995	5.3	69.8
1996	5.2	72.2
1997	5.2	74.6
1998	4.5	77.0
1999	4.9	69.8
2000	5.3	69.8
2001	4.9	73.4
2002	4.8	77.0

4) 보건환경

- 대기오염(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울산)
- 수질오염(한강: 팔당댐/노량진, 낙동강: 고령/ 물금, 금강: 대청댐/공주, 영산강: 담양/나주)
- 소음오염(일반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낮/밤))
- 해수오염(부산, 인천, 울산, 포항, 마산, 목포, 군산, 여수)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 = $\frac{\text{형법범죄 발생건수}}{\text{인구}} \times 100,000$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교통사고 사망자수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대기, 수질 및 소음오염도	인구10 만명당 주요범죄 발생건수	1인당도시공원면적	교통사고 사망자수
1990	5.58	560	-	28.8
1991	5.41	558	18.1	31.1
1992	5.15	590	17.9	26.7
1993	4.99	650	18.6	23.6
1994	6.00	729	19.0	22.7
1995	6.15	801	19.9	23.0
1996	5.56	890	21.0	27.3
1997	5.42	865	22.5	24.7
1998	4.31	977	23.5	19.3
1999	4.36	992	23.6	19.8
2000	57.8	1,114	23.3	21.3
2001	57.6	1,169	23.2	16.9

4.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조사 설문(2003년도)

1) 일반사항

문1. 귀하의 현 직장 근무년수는 어떻게 됩니까? ()년 ()개월

문2. 현재 이 일자리에서 귀하께서 주로 하시는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 1)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 2) 전문가 |
| ☐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 ☐ 4) 사무 종사자 |
| ☐ 5) 서비스 종사자 | ☐ 6) 판매 종사자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 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10) 단순노무 종사자 |

문3.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 1) 상용직 | ☐ 2) 임시직 |
| ☐ 3) 일용직 | ☐ 4) 고용주 |
| ☐ 5) 자영자 | ☐ 6) 무급가족종사자 |

[해설]

상용직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자
임시직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자
일용직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댓가를 받는 사람
고용주	유급종업원을 한사람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자영자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18시간 이상 도운 자

2) 고용사정

문1. 귀하는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3) 보통 |
| ☐ 4) 그렇다 | ☐ 5) 매우 그렇다 | |

문2. 귀하의 교육수준은 일자리를 얻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 | | | |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3) 보통 |
| ☐ 4) 그렇다 | ☐ 5) 매우 그렇다 | |

문3. 귀하는 직장연수, 교양강좌 등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4.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쉬운 편이었습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5. 귀하는 구직활동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6. 귀하는 현재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7.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8.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문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고용보험	1	2	3	4	5
2) 산재보험	1	2	3	4	5
3) 의료보험	1	2	3	4	5
4) 국민보험	1	2	3	4	5

문2. 귀하는 작업 중 사고 또는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

- ☐1) 전혀 느끼지 못한다 ☐2) 거의 느끼지 못한다 ☐3) 보통이다
☐4) 가끔 느낀다 ☐5) 자주 느낀다

문3. 귀하는 회사측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음 ☐2)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음 ☐3) 보통이다
☐4) 노력하고 있는 편 ☐5) 매우 노력하고 있음

- 문4. 귀하는 귀하의 작업환경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열악하다 ☐2) 열악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깨끗한 편이다 ☐5) 매우 깨끗하다

4) 임금 근로조건

- 문1. 귀하는 귀하의 능력(교육수준, 기술 등)에 비추어 현재의 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능력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
☐2) “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다
☐3) 능력과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다
☐4) 능력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다
☐5) “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 문2. 귀하는 귀하의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복지수준과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러운 편이다 ☐5) 아주 만족한다

- 문3. 귀하는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길다 ☐2) 긴 편이다 ☐3) 보통이다
☐4) 짧은 편이다 ☐5) 매우 짧은 편이다

- 문4. 귀하가 소속된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 문5. 귀하의 판단에 직장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 ☐1) 매우 나쁘다 ☐2) 나쁘다 ☐3) 보통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 문6. 귀하의 직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되지 않는다 ☐2) 되지 않는 편이다 ☐3) 보통
☐4) 잘 되는 편이다 ☐5) 매우 잘 된다

- 문7. 귀하는 최근 1년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불안정적이었다 ☐2) 불안정적이었다 ☐3) 보통
☐4) 안정적이었다 ☐5) 매우 안정적이었다

- 문8. 귀하는 현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십니까? ☐
-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충분한 편이다 ☐5) 매우 충분하다

- 문9.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불만족이다 ☐2) 불만족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

문10.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불만족이다 ☐2) 불만족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

문11. 귀하가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출근:()시간 ()분, 퇴근:()시간 ()분

문12. 귀하는 교육·주거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에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불만족이다 ☐2) 불만족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

문13. 귀하는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 활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3) 보통
☐4) 활용하는 편이다 ☐5) 잘 활용하고 있다

문14. 귀하는 여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보통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15. 귀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건강이 매우 안 좋다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아주 건강하다

문16. 귀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 ☐1) 매우 불만족이다 ☐2) 불만족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

문17. 귀하는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공해, 녹지 등의 주위환경훼손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불만족이다 ☐2) 불만족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

문18. 귀하는 치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불만족이다 ☐2) 불만족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

문19. 귀하는 교통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불만족이다 ☐2) 불만족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

5.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조사 대상자 특성(2003년도)

		인원	비중(%)
전체		1,011	100.0
성별	남성	634	62.7
	여성	377	37.3
연령	20대 미만	435	43.0
	30대	372	36.8
	40대	167	16.5
	50대 이상	37	3.7
학력	고졸이하	402	39.8
	전문대졸이하	260	25.7
	대졸이상	349	34.5
혼인상태	미혼	456	45.1
	결혼	543	53.7
	기타	12	1.2
권역별	서울	425	42.0
	인천/경기	312	30.9
	대전/충청	75	7.4
	광주/전라	59	5.8
	부산/대구/경상	123	12.2
	강원/제주	17	1.7
근무기간	1년 미만	134	13.3
	1~3년 미만	372	36.8
	3~5년 미만	180	17.8
	5~10년 미만	198	19.6
	10년 이상	123	12.2
	무응답	4	0.4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7	0.7
	전문가	62	6.1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02	10.1
	사무종사자	528	52.2
	서비스종사자	44	4.4
	판매종사자	26	2.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2	13.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9	3.9
	단순노무 종사자	71	7.0
직위	상용직	953	94.3
	임시직	32	3.2
	일용직	22	2.2
	고용주	3	0.3
	자영자	1	0.1